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804-01

수탁보고 2021-10



#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박창현·김근진·김경희·정유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804-01

수탁보고 2021-10

##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저 자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경 희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정 유 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1-10

##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교육부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7270  
팩스 044-203-7273  
홈페이지 <https://www.moe.go.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804-01



교육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제 출 문

교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부의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머리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사회관계장관회의, 2021-제8회)를 마련하여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관계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추진, 기관·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유아들은 기관 선택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과 복지가 이원화되어 기관 선택 여부에 따라 다른 통계로 분류되고, 서비스 지원에도 격차가 생기고 있다. 기관 미이용 영유아들의 현황도 교육부와 복지부 등 어느 부처에서도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 산하의 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이고, 복지부 산하의 유아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이다.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라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용어의 혼재, 통계의 비통합 등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에 기초 인프라가 마련이 되지 않아 장애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의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과 같은 교육 대전환 수준의 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이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적어도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를 양 부처가 최대한 마련하여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데이터 구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통계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목차

|                                                       |            |
|-------------------------------------------------------|------------|
| <b>I. 서론</b>                                          | <b>1</b>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구내용 .....                                         | 5          |
| 3. 연구방법 .....                                         | 6          |
| 4. 선행연구 .....                                         | 7          |
| <b>II. 장애영유아 관련 통계 현황 및 실태</b>                        | <b>25</b>  |
| 1. 장애영유아 통계 현황 .....                                  | 27         |
| 2. 장애영유아 기관 통계 현황 .....                               | 46         |
| 3. 유아특수교사 및 인력 통계 현황 및 실태 .....                       | 56         |
| 4. 장애영유아 지원 현황 .....                                  | 75         |
| 5.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                                 | 82         |
| <b>III.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b>               | <b>111</b> |
| 1. 조사개요 .....                                         | 113        |
| 2. 분석결과 .....                                         | 114        |
| <b>IV.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에 관한 정책 제언</b>                    | <b>129</b> |
| 1. 모든 영유아를 위한 통합형 장애영유아<br>종합통계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 | 131        |
| 2. 정책 과제 .....                                        | 137        |
| <b>참고문헌</b> .....                                     | <b>141</b> |
| <b>부록</b> .....                                       | <b>147</b> |
|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                              | 147        |
|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신청서 .....                            | 148        |

---

|                                       |     |
|---------------------------------------|-----|
| 3.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승인 신청서 .....         | 149 |
| 4.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서 양식 ..... | 150 |
| 5.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 명단 및 세부 내용 정리 .....  | 153 |

---



## 표 목차

|                                                                            |    |
|----------------------------------------------------------------------------|----|
| 〈표 Ⅰ-4- 1〉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관련 연구 .....                                          | 13 |
| 〈표 Ⅰ-4- 2〉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관련 연구보고서 .....                                       | 21 |
| 〈표 Ⅱ-1- 1〉 2021년 특수교육 및 보육통계 기관·이용자·교사 현황 .....                            | 27 |
| 〈표 Ⅱ-1- 2〉 연도별 전체 아동 및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아동 및<br>영유아 현황(2011-2020) .....        | 28 |
| 〈표 Ⅱ-1- 3〉 2021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등록 현황 .....                                | 30 |
| 〈표 Ⅱ-1- 4〉 2020년 장애영유아의 유형별 장애 등록 현황<br>(‘21년 4월 등록, ‘20년 12월 기준) .....    | 31 |
| 〈표 Ⅱ-1- 5〉 2020년 시도별 장애등록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br>(‘21년 4월 등록, ‘20년 12월 기준) ..... | 31 |
| 〈표 Ⅱ-1- 6〉 2021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 33 |
| 〈표 Ⅱ-1- 7〉 연도 및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17-‘21) .....                            | 34 |
| 〈표 Ⅱ-1- 8〉 전체 영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 35 |
| 〈표 Ⅱ-1- 9〉 2021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현황 .....                                  | 36 |
| 〈표 Ⅱ-1-10〉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br>선정/배치 현황(2011-2021년) .....         | 36 |
| 〈표 Ⅱ-1-11〉 2020년 기관 및 학교과정별 순회교육 현황 .....                                  | 37 |
| 〈표 Ⅱ-1-12〉 2020년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 .....                                      | 38 |
| 〈표 Ⅱ-1-13〉 2020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 .....                                 | 38 |
| 〈표 Ⅱ-1-14〉 2021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 40 |
| 〈표 Ⅱ-1-15〉 2021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                           | 41 |
| 〈표 Ⅱ-1-16〉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취학유예자 수(2021. 4. 기준) .....                       | 42 |
| 〈표 Ⅱ-1-17〉 2019년 장애영유아의 기관(보육시설/유치원) 이용 현황 .....                           | 44 |
| 〈표 Ⅱ-1-18〉 2019년 보육시설/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 44 |
| 〈표 Ⅱ-1-19〉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                             | 45 |
| 〈표 Ⅱ-2- 1〉 2021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br>장애영유아 학교 수 및 학급 수 현황 .....             | 46 |
| 〈표 Ⅱ-2- 2〉 2021년 시도별 특수학교 수와 학급 수 현황 .....                                 | 47 |
| 〈표 Ⅱ-2- 3〉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                                    | 49 |

---

|                                                                      |    |
|----------------------------------------------------------------------|----|
| 〈표 II-2- 4〉 2021년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                                  | 50 |
| 〈표 II-2- 5〉 2020년 일반어린이집 현황 .....                                    | 50 |
| 〈표 II-2- 6〉 2020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                                  | 50 |
| 〈표 II-2- 7〉 2020년 시도 및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 52 |
| 〈표 II-2- 8〉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                                    | 53 |
| 〈표 II-2- 9〉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방과후반 현황(2021. 4 기준) .....                 | 54 |
| 〈표 II-2-10〉 2021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 54 |
| 〈표 II-2-11〉 2020년 병원학교 운영 현황 .....                                   | 55 |
| 〈표 II-3- 1〉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br>(2011-2021년) .....         | 56 |
| 〈표 II-3- 2〉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현황<br>(2011-2021년) .....          | 57 |
| 〈표 II-3- 3〉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2011-2021년) .....                 | 58 |
| 〈표 II-3- 4〉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수(2021년) .....                 | 59 |
| 〈표 II-3- 5〉 2021년 공사립 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와<br>필요한 특수교사 수 .....        | 60 |
| 〈표 II-3- 6〉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 61 |
| 〈표 II-3- 7〉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 61 |
| 〈표 II-3- 8〉 2021년 특수보육 어린이집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br>(2021. 8. 기준) ..... | 63 |
| 〈표 II-3- 9〉 시도별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 .....                              | 63 |
| 〈표 II-3-10〉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현황 .....                               | 64 |
| 〈표 II-3-11〉 2020년 특수보육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현황 .....                           | 65 |
| 〈표 II-3-12〉 2020년 어린이집 유형별 특수교사 현황 .....                             | 65 |
| 〈표 II-3-13〉 2020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br>(보건복지부) .....          | 67 |
| 〈표 II-3-14〉 2020년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br>(보건복지부) .....      | 67 |
| 〈표 II-3-15〉 2020년 시도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br>(보건복지부) .....      | 68 |
| 〈표 II-3-16〉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 69 |
| 〈표 II-3-17〉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 70 |
| 〈표 II-3-18〉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    |

---

---

|                                                                         |     |
|-------------------------------------------------------------------------|-----|
|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2016-2020년) .....                                          | 73  |
| 〈표 II-4- 1〉 2020년 특수교육 총예산 .....                                        | 75  |
| 〈표 II-4- 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 75  |
| 〈표 II-4- 3〉 2020년 공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br>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                | 76  |
| 〈표 II-4- 4〉 2020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현황 .....                           | 77  |
| 〈표 II-4- 5〉 2020년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 지원 현황 .....                              | 77  |
| 〈표 II-4- 6〉 2020년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                                  | 78  |
| 〈표 II-5-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통계 및<br>실태조사 관련 조항 .....             | 83  |
| 〈표 II-5-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br>[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  | 85  |
| 〈표 II-5- 3〉 「영유아보육법」의 보육통계 .....                                        | 86  |
| 〈표 II-5- 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현황 및<br>「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 88  |
| 〈표 II-5-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br>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 90  |
| 〈표 II-5-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br>장애유형 차이 .....              | 92  |
| 〈표 II-5-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br>장애유형 매칭 .....              | 95  |
| 〈표 II-5- 8〉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와<br>어린이집의 지원 비교 .....               | 96  |
| 〈표 II-5- 9〉 작업치료 영역 .....                                               | 101 |
| 〈표 II-5-10〉 취학의무 유예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안내 .....                              | 105 |
| 〈표 II-5-11〉 취학의무 유예 제출 절차 및 방법 안내 .....                                 | 105 |
| 〈표 III-1- 1〉 전문가 의견 조사지 내용 구성 .....                                     | 114 |
| 〈표 III-2- 1〉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의견 정리표 .....                        | 117 |
| 〈표 III-2- 2〉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 방법에 대한 의견 정리표 .....                          | 121 |
| 〈표 III-2- 3〉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관리부처 및 사각지대<br>영유아 통계관리에 대한 의견 정리표 .....        | 125 |
| 〈표 III-2- 4〉 종합통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정리표 .....                          | 128 |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1] 연도별 전체 아동 대비 장애 등록 아동 현황(2011-2020년) ..                 | 29 |
| [그림 II-1-2] 연도별 전체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현황<br>(2011-2020년) .....        | 29 |
| [그림 II-1-3] 연도 및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 34 |
| [그림 II-1-4]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br>선정/배치 현황(2011-2021년) ..... | 36 |
| [그림 II-1-5] 2020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 .....                         | 39 |
| [그림 II-1-6] 2021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 40 |
| [그림 II-1-7]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중<br>심화평가권고 현황 .....      | 45 |
| [그림 II-2-1] 2020년 시도별 학교과정별 학교 수 현황 .....                           | 48 |
| [그림 II-2-2]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                            | 49 |
| [그림 II-2-3] 2020년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 51 |
| [그림 II-2-4] 2020년 시도 및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 52 |
| [그림 II-2-5] 연도별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 .....                                 | 53 |
| [그림 II-3-1]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br>(2011-2021년) .....        | 57 |
| [그림 II-3-2]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지원 및<br>합격 현황(2011-2021년) .....  | 58 |
| [그림 II-3-3]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2011-2021년) ..                   | 59 |
| [그림 II-3-4]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수(2020년) ..                   | 60 |
| [그림 II-3-5] 2016년-2020년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 .....                           | 62 |
| [그림 II-3-6] 2020년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br>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 .....       | 66 |
| [그림 II-3-7] 2020년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및 교사 수 .....                    | 66 |
| [그림 II-3-8]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 70 |
| [그림 II-3-9]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br>(2016-2020.9) .....   | 71 |
| [그림 II-4-1] 2020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현황 .....                               | 79 |

---

|                                              |     |
|----------------------------------------------|-----|
| [그림 II-5-1]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대여방법 .....           | 99  |
| [그림 II-5-2] 참좋은카드 발급 절차 .....                | 100 |
| [그림 II-5-3] 순회치료지원 절차 .....                  | 102 |
| [그림 II-5-4]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절차 .....            | 106 |
| [그림 III-2-1] 종합통계 1안 .....                   | 120 |
| [그림 III-2-2] 종합통계 2안 .....                   | 120 |
| [그림 IV-1-1]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따로 같은 방향 바라보기 ..... | 133 |
| [그림 IV-1-2] 기관미이용 장애영유아 통계 구축 방안 .....       | 133 |
| [그림 IV-1-3] 특수교육통계로 통합하는 방안 .....            | 136 |

---



## 부록 표 목차

|                                   |     |
|-----------------------------------|-----|
| 〈부표 5-1〉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 명단 .....   | 153 |
| 〈부표 5-2〉 전문가 의견 조사 세부 내용 정리 ..... | 154 |

# I

##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선행연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 조사가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려우며, 이는 통합적 정책지원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가 일원화되면, 자연스럽게 통계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유보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정책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수교육통계/보육통계(매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장애아동 실태조사(3년주기) 등을 실시 중이나, 통계 간 항목 차이 및 통계 사각지대(기관 미이용 아동)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

2021년 5월 12일 장애아동 종합지원대책에서 발표한 계획과 같이 장애아 발견부터 가족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또는 0-3세 미만 조기개입 대상자와 3-5세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상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를 하나의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일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현재 유·보통합의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의 서비스와 질적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애영유아 관련 통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되어 집계되고 있어 장애 유형 등에 대한 통합 정보를 관리하는 부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을 선택한 만 3-5세 장애영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자라면, 이들의 통계는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나, 관할 부처 이원화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박창현, 김근진, 이은혜, 배울미, 2019).

무엇보다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3조에 따라 만 3-5세 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장애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각각 분리되어 일원화 된 통계가 갖추어 있지 않다. 또한 서비스지원과 관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며,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장애통합, 전문 어린이집에는 유아 특수교사가 원활하게 배치되지 않아 운영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유아의 교육권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유아 특수교사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 2020). 이에 현장에서는 장애 학급이 늘어나도, 여전히 유아 특수교사를 구하기 어렵다. 접근성이 높은 주변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특수교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합학급 운영이 어렵다(박창현 외, 2021; 박창현 외 2020). 또한 국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의 교육환경의 질은 높은 편이나, 통합의 질적 수준이 유치원마다 다른 실정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양육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과정이나 입학 이후의 적응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수학급 배치, 통합교육, 돌봄의 질과 비용, 시간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박창현 외, 2021).

OECD 선진국들은 완전 취원율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장애/비장애 구별 없는 무상 의무교육을 선택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OECD 최근 교육과 보육 평등성을 추구하는 유아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유형 또는 기관 이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태어나서 장애 선별과 진단을 받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취학할 때까지 경험하는 가족관계, 의료, 건강, 교육과 보육 서비스, 의무교육, 돌봄까지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는 분절되어 있고, 이음새 없이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들을 통합 관리하여 교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통계

하에 장애영유아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파악이 가능해진다.

통계자료는 국가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예산과 운영에 따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자 근간이 될 수 있다. 장특법에 기반한 통계자료는 교육적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통계자료 또는 장복법에 기반한 통계자료는 장애진단과 복지적 차원에서 수집하므로 수집의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동일한 만 3-5세 유아임에도 기관선택 여부에 따라 교육적, 복지적 접근을 달리하여 통계도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와 불편함, 관리의 비효율화를 높이며, 정책대상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또한 취학 전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 통합은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21.5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후속 조치로 꼭 필요한 작업이고 정책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영유아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이런 이유로 장애아동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통계 작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 장애영유아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영유아 통합통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2. 연구내용

### 가. 장애아동 관련 통계, 법 제도 및 정책 현황

전체 장애 영유아 최근 현황(유형, 수, 기관 이용 등), 기관별 수요-공급 현황, 특수교사 인력 수급 현황 등의 기초 통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법을 고찰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종합통계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구축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나. 장애 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의 필요성, 방법,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장애아동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종합통계 작성, 장애아동별 맞춤형 관리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다. 장애 영유아 종합통계 구축 방안 제안

소관 부처가 다수임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조기진단·개입, 치료, 교육·보육, 양육, 가족지원, 문화·체육·여가 등 단계별/분야별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라. 정책 방향 및 과제 및 전략 제안

장애 영유아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정책 전략을 제안하였다. 장애아동 종합통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보 일원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관련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교육, 보육, 특수교육통계 등),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등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을 수집·분석하여 현황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 나. 개별 및 집단 심층 면담 분석

정책수요자 및 이해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별 및 집단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장애영유아 관련 단체 대표, 장애영유아 및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및 보육 학계 전문가, 부모, 행정가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또는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분석의 기초자료와 근거를 추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개별 및 집단 심층 면담 대상자를 포함하여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유아

교육 및 보육, 복지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자, 행정가 등) 대상으로 40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서면으로도 실시하였다. 특히 종합통계 구축을 위한 종합통계의 필요성, 통계 통합 방안(항목 등), 관리부처 및 사각지대 개선 방안, 제도개선 방안, 기타 의견을 포함하였다. 개별 및 집단 심층 면담을 통해서 얻은 불분명한 주제들을 서면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진은 서면조사의 내용에서 불분명하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추가로 대면, 또는 비대면 자문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학계, 교직원, 부모, 행정가,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아특수교육 쪽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황을 균형 있게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 비율을 조정하였다. 또한, 눈덩이 표집을 통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았다.

##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향 설정, 면담내용 구성, 정책 시사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연구진과 수시로 협력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유아정책연구소가 키포프 회의부터 함께 참여하여 관련 이슈들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4. 선행연구

### 가.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관련 연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진단과 평가, 배치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윤, 이병인, 20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 시 진단과 평가 후의 배치는 이원화 되어 있는 제도와 행정적인 이유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유아가 지역사회서비스에 소외되고 있으며 장애유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부모는 장애를 숨기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합교실을 어렵게 한

다는 논의가 있다(신영, 2014; 이지윤, 이병인, 2020). 구체적으로 신영(2014)은 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평가 후 대상자 선정과 배치를 결정하지만, 어린이집의 입소 과정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로 인한 배치 없이 부모가 주는 정보만으로 입소 순위에 따라 장애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입소하기 때문에 장애 유아의 개별 특성,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진단과 평가가 교육과정에 연계되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문성옥, 권현수, 2011).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유아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취학유예로 인한 진단서 받기, 치료서비스 등에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이지윤, 이병인, 2020). 이는 법률의 개별적 내용을 살펴보아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하며(정남철, 정선아, 2015),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부처 간의 혼선을 재정비하여 장애유아의 교육권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준다(이지윤, 이병인, 2020).

한편, 조기 중재(early intervention)는 만 3세 미만인 장애 영아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고, 장애의 심화 및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 적극적 양육을 통한 가족기능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Dunst & Espe-Sherwindt, 2017). 2015년 이후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조기개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발달 및 행동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연구주제로 가장 빈번히 논의된 만큼(김태영, 2021),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발달이 평균에 비해 지체된 장애유아들에게 조기 중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김경민(2020)은 어머니들은 진단 및 자녀의 양육과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김수현과 이병인(2020)은 조기 발견은 장애위험 영아를 선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발달 및 양육을 지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장애위험 영아 조기개입으로 영아의 친숙한 성인인 양육자와 담임교사가 주체가 되어 전문가 협력을 실행하는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이현수(2014)는 장애유아 교육권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관련법을 중심으로 장애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장애유아 교육은 통합 환경에서 평등하게 권리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장애유아 교육권 확대를 위한

편의 시설 및 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조광순(2004)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체제의 실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하는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과 보육 정책 주관 부처가 달라 장애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총체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 가족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수평적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소현(2006)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에 포함되어야 하는 질적 구성 요소들을 알아보고 3가지 주요 요소와 10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의 내용이나 제도가 총체적인 지원의 관점에서 미흡하며 지원 관련 부처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계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총괄적인 형태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홍은숙(2008)은 장애영아를 둔 부모와 장애영아 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하여 장애영아교육 및 조기개입에 대한 경험, 요구,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은 진단과 교육의 연계 시스템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독립적인 교육과정과 지침 마련,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장애 위험 영아 선별을 위한 체계 구축이다. 또한,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기관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며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윤경(2012)의 연구에서는 만 3세 미만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의 현황, 내용, 운영 방법 및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법적인 장애영아 무상교육 명시로 인해 서비스의 증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지원책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수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된 대상자를 서비스 체계로 연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부모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실행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조윤경(2013)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부모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부모 관점에서의 조기 선별과 장애 진단 과정,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과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 방안, 지원 요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요구를 많이 나타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련의 연계과정 시행 부분에서는 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요구하였고,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가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 판별부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연계적 과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모델 연구 개발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김관주와 정훈영(2016)은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국가의 책무성 및 교육-보육-치료-복지 수평적 서비스 연계 체계가 부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발견 제도가 미비한 것이었다. 또한, 다학문적 진단 판정팀 부재로 발견-진단-사정 적격성 판정이 어려우며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연계-의뢰 및 관리 체계 미비, 질적 서비스 보장이 미흡한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국가의 책무성을 반영하도록 재정비하고 보건소-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연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책 조정위 수준의 부처 간 협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서비스 공유체계 구축 후 사례관리자에 의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다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단 판정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제시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라이선스가 인증된 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공유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사례관리자 도입,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 인증제 실시,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의 차등 지원, 취약 지역 집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지효와 동료들(2018)은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중재의 효과와 행정 지원 방안을 연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51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중재 지원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전 사후검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 선별과 조기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 위험 영유아도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조기선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수경과 동료들(2019)은 발달장애인 부모 2인, 서비스 제공자 2인, 정책 결정자 1인, 전문가/교수 1인, 연구진 2인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을 적용하여 발달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의 필요성, 양육 관련 정보 제공, 적절한 지원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욕구를 기반으로 통합지원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해보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사전검사나 평가를 위한 거점의료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천세영과 박세희(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을 살펴보고 영유아 특수교육의 수준을 평가하고 발전적인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각국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관련 법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진단 체계에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단, 일본은 부처별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단 자료를 제공하여 부가적 판정 없이 유기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은 모두 0~2세, 3~5세로 연령을 구분하여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 3세 미만은 대부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박영제와 홍정숙(2019)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음에도 부족한 지원을 받거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함을 지적하

며, 장애명칭 붙임과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논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들 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가 아닌 교육적 지원요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판별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진단 평가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송희와 홍승주(2021)는 우리나라 장애아동 돌봄제도는 중앙정부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장애아동 대상 돌봄 제도 간의 비연계성 문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 지원량 부족 문제가 있으며, 장애아동과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코로나19 시대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소현(2004)은 0-2세 발달지체 여아들의 특수교육 적격성 고찰을 통해 조기개입 지원체계의 정립을 강조하고,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에 대한 조기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프로그램 효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지원 특수교육 서비스의 영아 특수교육 적격성 인정 제도적인 틀을 정립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에 영아 포함 진단 기준 개발,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제 확립과 더불어 양질의 조기개입 서비스 보장 지원 체계 수립 등의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수경과 동료들(2005)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관련 지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 영유아 부모를 통한 관련기관 대상으로 자녀의 장애 서비스 관련 기관 이용실태와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또한 방과 후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 및 의견을 모으고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설문하였다. 설문내용을 종합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타 장애 관련 부처와의 연계 방안을 내는 것과 치료교육과 통합교육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체제의 강화와 교육기관의 장애 영유아들의 보육 요구 충족 및 보육기관 장애 영유아들의 특수교육 요구 충족을 위한 기관연계 방안 마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의 선별·진단·의뢰의 국가 주도과 장애인 생애 전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지역사회 통합 체계를 이끄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제안되었다.

조주현(2007)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조기중재와 사회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애 영유아 보육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적 행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적인 환경에서 조기중재와 사회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애 영유아 보육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일관된 제도 및 행정,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신재주(2009)는 한국의 장애아 보육지원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아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보육료 지원, 시설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아 조기중재를 위한 보육재정 확보 및 아동 특성에 따른 탄력적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용을 제안하였다.

권영화(2014)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학부모, 교사(치료사), 원장의 의견 및 요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재고(再考)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의 개선점을 탐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소속 장애아전문 165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발달지체 및 장애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원장, 교사, 치료사)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의 특성과 제도가 충분히 고려된 유보통합의 재고(再考)의 필요성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영유아 부모 및 보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끝으로 다수의 장애영유아 부모들과 보육교직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보통합 관련 정보 제공하고 장애영유아 관련 인사들도 참여하는 토론회 마련을 통한 상호 이해 및 협력의 기회 제공을 제안하였다.

〈표 I-4-1〉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관련 연구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1  | 조광순<br>(2004) |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서비스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관련 법규 및 정책 분석,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분석 | 체계적으로 장애아동을 발견하여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협력적 의뢰·추적체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과 지역 사회의 관련 서비스가 연계되어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조정 위원회 구성과 서비스관리자 모형 도입이 필요함. 가족중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2  | 이소현<br>(2004)                 |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의 특수교육 적격성 고찰을 통해 조기 개입 지원 체계의 정립을 강조하고,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과제 논의 | 조기 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프로그램 효과, 현황, 문제점을 고찰                                                                                                                                                                         | 국가지원 특수교육 서비스의 영아 특수교육 적격성 인정 제도적인 틀 정립, 특수교육 지원 체계에 영아 포함 진단 기준 개발,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제 확립, 양질의 조기개입 서비스 보장 지원 체계 수립 등의 정책적 방안 제안함.                                                                               |
| 3  | 안수경,<br>김성애,<br>김종무<br>(2005)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관련 의 보다 효율적인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 장애 영유아 부모를 통한 관련기관 대상으로 자녀의 장애 서비스 관련 기관 이용실태와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 방과 후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 및 의견,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타 장애 관련 부처와의 연계 방안을 내는 것과 아울러 치료교육과 통합교육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체제의 강화, 교육기관의 장애 영유아들의 보육 요구 충족 및 보육기관 장애 영유아들의 특수교육 요구 충족을 위한 기관연계 방안 마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의 선별·진단·의뢰의 국가 주도과 장애인 생애 전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지역사회 통합 체계를 이끄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함.   |
| 4  | 이소현<br>(2006)                 |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가 총체적인 틀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요소 제시                                             | 장애 영유아 지원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질적 구성 요소 제시                                                                                                                                                                          |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의 질적 구성 요소로 조기 발견(예방)의 개념, 적극적인 대상자 발견 제도, 장애 진단 및 적격성 인정을 위한 체계적 제도, 최상의 질적 서비스 보장(배치와 관계없는 동일한 지원 서비스 보장, 연령에 적절한 지원 체계 수립, 연구-기반의 실행이 적용된 서비스 보장), 소비자 중심의 전달 체계(수평적/수직적 연계가 보장된 서비스 전달 체계, 관리체계, 지원 전달 관리 기구 및 제도)를 제안함. |
| 5  | 조윤경<br>(2006)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교육 지원법의 제정 등으로 인한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아 보육서비스 조기중재의 당위성에 근거한 방안 모색             | 장애아 보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기 중재 서비스의 현황과 동향 분석. 낮은 서비스 수혜율을 타개하기 위한 3세 이상 의무교육 지정,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교육 체계의 보완책 마련, 통합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른 체계 변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질적인 프로그램 시행의 핵심 요소인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측면에서 탐색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을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장애 조기 발견 등 아동 배치와 관련된 조항 추가, 보육시설의 의무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의 조속한 제정, 질적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조항 추가, 치료 및 관련 서비스 시행을 통한 중재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제시함.                                                      |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6  | 신재주<br>(2009) | 한국의 장애아 보육지원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여 방안을 모색                                                                          |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아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 보육료 지원, 시설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도출 | 장애아 조기중재를 위한 보육재정 확보 및 아동 특성에 따른 탄력적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용을 제안함.                                                                                                                                                                |
| 7  | 홍은숙<br>(2008) | 장애영아교육 및 지원사업에 기초 자료 제공                                                                                   |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장애영아교육 및 조기개입에 대한 경험, 요구, 문제점 등을 파악                                       | 진단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전문인력 양성, 독립적인 교육과정과 지침 마련,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 위험 영아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장애영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양적·질적 확대, 장애영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장애위험 영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향후 우리나라 장애영아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함. |
| 8  | 조윤경<br>(2012) | 만 3세 미만 발달 지체 영아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의 현황, 내용, 운영 방법 및 필요한 지원 탐색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된 대상자를 서비스 체계로 연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br>부모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실행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 9  | 조윤경<br>(2013) |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마련                                                                    |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진단과정,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 지원 요구 등을 파악                                              |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기를 원함. 일련의 연계 진행 과정 시행에서 부모양육 지원 강화,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요구함.                                                           |
| 10 | 권영화<br>(2014)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학부모, 교사(치료사), 원장의 의견 및 요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재고(再考)를 위한 기초 자료 제시, 현재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의 개선점 탐색 |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소속 장애아전문 165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발달지체 및 장애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원장, 교사, 치료사)을 대상으로 설문    |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의 특성과 제도가 충분히 고려된 유보통합 재고(再考),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영유아 부모 및 보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 다수의 장애영유아 부모들과 보육교직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보통합 관련 정보 제공, 장애영유아 관련 인사들도 참여하는 토론회 마련을 통한 상호 이해 및 협력의 기회 제공 제안함.                |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11 | 김관주, 정훈영 (2016)           |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진행                                                                              |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책무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발견 제도 구축, '교육-보육-치료-복지'의 수평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다학문적 진단팀 구성,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리 체계 구축, 질적 서비스 보장 방안 마련을 논의함.                                                                         |
| 12 | 이지효, 김영팔, 황영범, 고재욱 (2018) | 장애위험영유아를 조기선별하고 조기 중재를 제공하여 효과성을 입증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및 실태 조사 실시, 조기 중재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                                | 장애위험영유아도 사회적서비스지원 대상을 받도록 법제화 필요함. 장애아 조기선별과 조기중재의 과정과 방법을 지속화 할 수 있는 체계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필요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통합보육 코디네이터 필요함. 영유아 발달의 정상화를 위한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함.                                                            |
| 13 | 박영제, 홍정숙 (2019)           | 장애명칭불임과 장애등급제관련 논의의 내용을 분석하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시 | 학술논문, 토론회 자료, 정책 자료 등 69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장애명칭불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와 배경, 시사점을 분석                                         | 장애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지양하고, 장애명칭보다 교육적,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는 용어 사용 필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지원 제공 위해 교육적 요구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분류체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 향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변화로 장애 이외의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기준 마련 필요함. |
| 14 | 이송희, 홍승주 (2021)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장애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  | 코로나19 관련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지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지원 이슈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2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Delphi)조사 3회 실시 | 장애아동 대상 긴급돌봄 강화, 장애아동 돌봄 특성 고려한 돌봄인력 및 생활치료센터 마련, 복합육구를 지닌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위기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 제언함.                                                                                         |
| 15 | 박수경, 김보경, 서경주 (2019)      | 발달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의 욕구 파악                                 | 리빙랩 방식을 적용하여 교수 1인, 연구진 2인이 참여하여 부모의 욕구를 파악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발견함.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사전검사나 평가를 위한 거점의료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함.                                                                                                   |
| 16 | 천세영, 박세희 (2020)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을 살펴보고, 영유아 특수교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비교연구                                                                            | 4개국 모두 관련 법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 조항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진단 체계에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을 파악함.                                                                                                                                |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                 | 육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 도출                                  |                                                                                  | 일본의 경우 부처별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단 자료를 공유하여 부가적 판정 없이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만3세 미만은 대부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필요성이 논의됨.                                                                                                                                                               |
| 17 | 이지윤, 이병인 (2020) | 장애유아 교육권 확립과 내실 있는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관리자의 인식 파악 | 장애통합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관리자 4명을 대상으로 장애유아 교육권 인식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 후 주제 도출 | 철학적 사고와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유아에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노력은 장애유아 교육권의 시작이며,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정책적 지원과 규정의 재정비를 통해 교육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원 내의 물리적·인적 환경은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실에 맞는 실효적 정책이 되도록 점검이 필요함을 인식함.                                                                                                        |
| 18 | 이현수 (2014)      | 장애 관련법을 중심으로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장애 관련법 검토                                                                        | 장애아의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각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원만이 장애아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 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함. |
| 19 | 김경민 (2020)      | 발달지체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파악                     | 장애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진행                                              | 발달이 평균에 비해 지체된 장애유아들에게 조기 중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어머니들은 진단 및 자녀의 양육과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파악함.                                                                                                                                                                                               |

- 자료: 1. 조광순(2004).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서비스 체제의 개선 방안. 유아특수교육연구, 4(2), 71-111.  
 2. 이소현(2004).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의 특수교육 적격성 인정 및 지원 체계 개발을 위한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38(4), 95-122.  
 3. 안수경, 김성애, 김종무(2005). 부모를 통해 본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실태 및 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7(1), 91-111.  
 4. 이소현(2006). 장애영유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 요소 -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5. 조운경(2006). 장애아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7, 45-64.  
 6. 조주현(2007). 장애 영유아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1), 51-66.

7. 홍은숙(2008). 장애영아교육 및 조기개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2), 259-284.
8. 조윤경(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 요구: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6(1), 39-66.
9. 조윤경(2013).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 보건사회연구, 33(1), 300-326.
10. 권영화(2014).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재고(再考) 및 개선점 탐색.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014.6, 431-451.
11. 김관주, 정훈영(2016).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2(3), 29-52.
12. 이지효, 김영팔, 황영범, 고재욱(2018). 장애위험영유아 조기중재의 효과와 행정지원 방안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73-209.
13. 박영제, 홍정숙(2019). 장애명칭불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 특수교육, 18(1), 83-110.
14. 이송희, 홍승주(2021). COVID-19에 따른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과제와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보건과 복지, 23(3), 39-63.
15. 박수경, 김보경, 서경주(2019). 발달장애 영유아 가족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Living Lab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 탐색.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0), 63-91.
16. 천세영, 박세희(2020).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정책·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 교육연구논총, 41(2), 217-237.
17. 이지윤, 이병인(20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관리자의 장애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논총, 36(2), 105-138.
18. 이현수(2014). 장애아 교육권에 대한 연구. 장애아동 인권 연구, 5(2), 1-15.
19. 김경민(2020). 발달지체 영아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가족지원에 대한 질적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155-189.

## 나.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관련 연구보고서

박은미 외(2018)는 서울시의 장애통합보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장애 통합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장애영유아가 손쉽게 정보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재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전달 체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통합보육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장애영유아의 질적인 보육을 위한 확고한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정림(2013)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의 행정전달체계를 통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단위의 공조체계 및 연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평가, 순회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센터의 인력 운용과 센터 운영 지침은 체계적이지 않아 개별 기관별로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침 마련 및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장애 영유아 무상 및 의무보육·교육 체계 안정화

를 위하여 통합보육·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이정립 외, 2012).

이승기 외(2011)의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복지 지원 전달 체계,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 보육지원에 대해 조사한 후 장애 아동 복지 지원 전달 체계 모형(안) 2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현행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전달 체계의 분산, 제공 대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먼저 서비스 대상자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 정도 등의 서비스 필요도를 중심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등 해당 지원 서비스 전달이 분산되어 있어 이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 간접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장애아동 가족에게 직접 지원되는 바우처나 현금 지급 형태로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권미경 외(2015)의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 맞춤형 육아 지원을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관에서는 등록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가족 측면에서는 가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부모-전문가가 협력하여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며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 아동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 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삼섭, 이명희, 노진아, 김기룡(2015)은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고 조기 발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합적 조기 발견 및 진단·의뢰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조정자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의무교육 간주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기관 확충을 제안하였다.

최복천 외(2015)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활동 지원 사업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문헌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의 지원 규모 및 이용 시간이 적다고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연령에 따른 통합적 운영방안 3가지를 모색하였다. 제3안의 경우 만 6세 미만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애영유아 중심 양육지원 특화 사업으로의 전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장애 발견 후 부모의 심리·정서적 기능이 약해지므로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등 양육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2017)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크게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관련 개선, 인적·물적 환경 개선,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관련 사항으로는 장애영아 및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 초등학교 아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진단 및 배치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달 체계 정비 및 조직화 방안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장애 유아 지원 관련 서비스를 관할하는 중앙정부 기구나 위원회가 설립되어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 기관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연주, 이영안, 김용희(2018)는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체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원시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안) 2가지를 개발하였다. 1안은 조기 발견 과정에서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후 확진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진단을 할 때 다양한 의료진의 협진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치료사와 의사의 협진을 통해 개별 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공유한다. 개입 과정에서는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재활치료 서비스 계획과 사례관리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2안은 확진 병원 없이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촉탁의가 진단을 해주면 이를 근거로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입은 1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구축하였다.

박창현, 김근진, 이은혜, 배울미(2019)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 양육 실태를 살펴보고 요구를 조사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양분화되어 있어 부모가 통합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된 온라인/오프라인 공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유아 조기 진단 및 발견을 위해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2020)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에 통합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조기진단과 치료, 교육의 원스톱 연계 및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내에서 장애 발견과 진단 체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자와 기관 미이용 영유아 통계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비용 체계 등에 대한 통합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2021)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종합통계 마련의 중요성과 기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육통계는 학교에 재원하는 유아특수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보육통계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보육료를 받는 영유아가 포함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 병원학교 및 낮병동 이용 영유아, 보육원(영아원) 이용 영유아 등을 포함한 전체 장애영유아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종합통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정책우선순위로 장애아동의 종합적 현황 파악을 위해 종합통계 작성 방안 모색 연구 실시,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통계 마련 검토, 의무교육대상자인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들도 통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특수교육통계에 기관 미이용(기관미소속) 장애유아도 포함, 특수교육대상유아인지 장애유아인지 통계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표 I-4-2〉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관련 연구보고서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1  | 이승기 외<br>(2011) | 장애아동 복지지원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보육지원 방안을 도출 |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복지서비스, 보육지원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문헌고찰, 사례분석, 델파이 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함. | 장애아동 지원체계 문제점: 서비스 (도 중심으로 설정이 필요함), 전달체계의 분산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통합된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허브기능이 필요함), 제공 대상 의 문제(직접 지원되는 형태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br>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운영 방안에 대한 모형(안) 2가지를 제시함. |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2  | 이정림,<br>김은영,<br>엄지원,<br>강경숙<br>(2012) | 통합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선진화된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의 지원 방안을 모색                                     | 장애 영유아를 보육 교육하고 있는 교사 및 기관장, 학부모 그룹을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가 및 공무원 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사례조사 실시함. |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의 지향점, 장애 영유아 무상 및 의무 보육 교육 체계 안정화, 장애 영유아 진단 및 배치 시스템 체계화,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 질 제고, 전달체계 기능 활성화, 통합보육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함.                               |
| 3  | 이정림<br>(2013)                         |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의 개념 및 관련 법과 제도, 국내외 사례, 현장의 실태 및 요구를 살펴보고, 향후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 | 장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기관 사례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함.                      |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전달체계로서의 특수교육센터의 실태와 요구는 업무 현황, 인력, 시스템 등으로 분류됨. 구체적으로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단위의 공조체계 및 연계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및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함. |
| 4  | 권미경,<br>최효미,<br>최지은,<br>김건희<br>(2015)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족 지원과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인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                                 | 문헌연구, 면담연구, 조사연구, 자문회의를 진행함.                                                                      |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 아동의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함.<br>장애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함.<br>교사-부모-전문가가 협력하여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가정 역력강화를 도모해야 함.<br>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
| 5  | 김삼섭,<br>이명희,<br>노진아,<br>김기룡<br>(2015) |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                                  |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을 진행함.                                                                      | 조기발견체계 구축 /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 유아특수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해소 / 적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구축 / 개별화 교육 운영 내실화                                                                                             |
| 6  | 최복천 외<br>(2015)                       |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상시적인 돌봄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돌봄지원과 관련한 통합적인 운영 모델과 실행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함.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지원규모 및 이용시간이 적음.<br>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br>대상자 연령에 따라 통합적 운영방안 3가지를 모색함.                                                                                                   |

| 구분 | 연구자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
| 7  | 이정림,<br>이윤진,<br>박현옥<br>(2017)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 문헌연구,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집단 면접, 사례조사를 실시함.                                              |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실태조사가 필요함.<br>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가 개선되어야 함.<br>인적, 물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br>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br>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
| 8  | 한연주,<br>이영안,<br>김용희<br>(2018)         |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의 모형을 개발                                          | 국내외 사례분석, 현 지역 서비스 분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안) 2가지를 구축함: 컨트롤 타워, 발견, 진단, 개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관별 역할을 지정하였음.                                                                                                                                              |
| 9  | 박창현,<br>김근진,<br>이은혜,<br>배율미<br>(2019) | 장애 영유아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장애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 문헌분석, 설문조사, 개별 및 집단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함.                                  | 의무교육 기반, 장애-비장애 완전 통합형 유보통합 체제 구축 /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지역별 통합 계획 마련 / 조기 진단 및 발견에 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장애영유아 교사 인력 충원 및 재교육 제도 마련 /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및 소득에 관계없는 재활치료 지원 / 장애영유아 통합 통계 및 서비스, 시간, 비용 체계에 대한 통합연구 필요 |
| 10 | 박창현,<br>김근진,<br>김경희,<br>김민주<br>(2020)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를 분석하고,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도출                     |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심층면담 분석을 실시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방향을 현행제도 개편 및 특별직무교육과정 신설로 제안하고, 현행 교과목 재구조화, 특별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통합연수체계 구축, 개편안 지원 정책을 제안함.                                                                                                            |
| 11 | 박창현,<br>김근진,<br>김경희,<br>정유나<br>(2021) | 장애아동 대상 범부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분야별 지원 방안 모색           | 각종 통계자료 및 문헌분석, 장애영유아 관련 20여명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의견조사 2회 분석 실시함. |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책 방향 및 과제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체육놀이 등을 즐길 권리 신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
| 12 | 박은미,<br>지성화,<br>박인숙<br>(2018)         |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 논의                                             |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의 현장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문헌고찰 실시함.                                          | 가정 및 타 기관 연계(협력)에서 장애통합보육과 관련하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89.7%)'와 연계(협력)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관 연계(협력) 시 가장 많이 도움 받는 내용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연계(협력) 방법(77.6%)'으로 나타났다.                                                                        |

- 자료: 1. 이승기, 김기룡, 백은령, 이계윤, 조윤경, 전해연, 최복천, 최윤영(2011).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2. 이정림, 김은영, 엄지원, 강경숙(2012).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3. 이정림(2013). 장애영유아 통합보육·교육의 실태 진단 및 정책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4. 권미경, 최효미, 최지은, 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5. 김삼섭, 이명희, 노진아, 김기룡(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6. 최복천, 김유리, 김진우, 김치훈, 심석순, 양희택, 오다은(2015).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활동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8. 한연주, 이영안, 김용희(2018).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9. 박창현, 김근진, 이은혜, 배울미(2019). 장애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10.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1.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2. 박은미, 지성화, 박인숙(2018).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장애통합보육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19.

# II

## 장애영유아 관련 통계 현황 및 실태

- 01 장애영유아 통계 현황
- 02 장애영유아 기관 통계 현황
- 03 유아특수교사 및 인력 통계 현황 및 실태
- 04 장애영유아 지원 현황
- 05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 II. 장애영유아 관련 통계 현황 및 실태

### 1. 장애영유아 통계 현황<sup>1)</sup>

2021년 기준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른 기관, 이용자, 교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 수를 살펴보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1,29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1,001개, 특수학교가 135개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1,211개로 가장 많았고, 일반어린이집이 893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17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4,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1,826명, 특수학교가 927명,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6,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4,959명, 일반어린이집이 1,064명이었다. 교사 수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1,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가 364명,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74명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2,690명,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804명이었다.

〈표 II-1-1〉 2021년 특수교육 및 보육통계 기관·이용자·교사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 교육부('21. 4. 1. 기준) |            |                       |                   |                | 보건복지부('20. 12. 31. 기준) |                       |                |        |
|---------------|--------------------|------------|-----------------------|-------------------|----------------|------------------------|-----------------------|----------------|--------|
|               | 특수 학교<br>(유치원)     | 유치원        |                       | 특수 교육<br>지원<br>센터 | 소계             | 장애아<br>전문<br>어린이<br>집  | 장애아<br>통합<br>어린이<br>집 | 일반<br>어린이<br>집 | 소계     |
|               |                    | 특수<br>학급   | 일반학급<br>(전일제<br>통합학급) |                   |                |                        |                       |                |        |
| 기관 수<br>(영아)  | 135<br>(39)        | 1,001      | 1,298                 | [199]             | 2,434<br>(39)  | 177                    | 1,211                 | 893            | 2,281  |
| 이용자 수<br>(영아) | 927<br>(108)       | 4,444<br>- | 1,826<br>-            | -<br>(261)        | 7,197<br>(369) | 6,206                  | 4,959                 | 1,064          | 12,229 |
| 교사 수          | 364                | 1,275      | -                     | 274               | 1,913          | 2,690                  | 1,804                 | -              | 4,494  |

1) 일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20년 자료로 재인용함.

- 주: 1) 교육부('21 특수교육통계)의 경우 장애영아 포함 특수 1, 2정, 일반교사 수를 의미하며, 보건복지부('20 보육통계) 교사 수의 경우 장애아반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 치료사 수를 의미함.  
 2) 특수학교의 유치원 전체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개, 이용자 수는 장애영아 38명, 유치원 243명 총 281명, 교사 수(특수, 일반, 보건, 영양교사)는 114명임. 특수학교 전체의 장애영아 수는 108명임.  
 3) 교육부 기관 수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체 센터 수로 소개에는 미포함.  
 4)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급 수는 59개이며, 이용자 수는 센터 장애영아학급 또는 교육지원 참여 장애영아와 가정, 시설, 병원 등 순회교육 지원 장애영아를 합산한 수임(센터지원 영아는 178명, 순회교육지원 영아수는 83명).  
 5) 유치원 특수학급 교원 수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교육교사를 모두 포함.  
 6)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수는 특수1정, 특수2정, 일반교사를 포함.  
 7) 일반어린이집 교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1) 교육부(2021b). 특수교육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5005> p. 7, 9, 16, 17, 68, 75, 140, 156에서 인출함.  
 2) 교육부(2021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28, 45, 47에서 인출함.  
 3) 보건복지부(2021c).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38에서 인출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 가. 장애아 등록 현황

통계청 아동 인구 현황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1a)에 따른 최근 10년 동안의 전체 아동 및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아동 및 영유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 및 영유아의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한 것에 반해 장애 등록 아동 및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박창현, 2021: 12 재인용). 장애 등록 아동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장애등록 영유아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12 재인용).

〈표 II-1-2〉 연도별 전체 아동 및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아동 및 영유아 현황(2011-2020)

단위: 명, %

| 연도   | 전체 아동 수   | 장애 등록 아동 수 | 비율   | 전체 영유아 수  | 장애 등록 영유아 수 | 비율   |
|------|-----------|------------|------|-----------|-------------|------|
| 2011 | 9,921,012 | 78,186     | 0.79 | 2,777,209 | 7,933       | 0.29 |
| 2012 | 9,691,876 | 76,191     | 0.79 | 2,816,103 | 7,886       | 0.28 |
| 2013 | 9,431,699 | 74,617     | 0.79 | 2,769,255 | 7,442       | 0.27 |
| 2014 | 9,186,841 | 73,195     | 0.80 | 2,741,835 | 7,657       | 0.28 |
| 2015 | 8,961,805 | 72,583     | 0.81 | 2,739,901 | 8,122       | 0.30 |
| 2016 | 8,736,051 | 72,139     | 0.83 | 2,680,088 | 8,598       | 0.32 |
| 2017 | 8,480,447 | 72,260     | 0.85 | 2,568,516 | 8,983       | 0.35 |
| 2018 | 8,176,335 | 72,618     | 0.89 | 2,415,349 | 9,175       | 0.38 |

| 연도   | 전체 아동 수   | 장애 등록 아동 수 | 비율   | 전체 영유아 수  | 장애 등록 영유아 수 | 비율   |
|------|-----------|------------|------|-----------|-------------|------|
| 2019 | 7,928,907 | 74,362     | 0.94 | 2,285,605 | 9,679       | 0.42 |
| 2020 | 7,701,707 | 75,482     | 0.98 | 2,121,390 | 9,729       | 0.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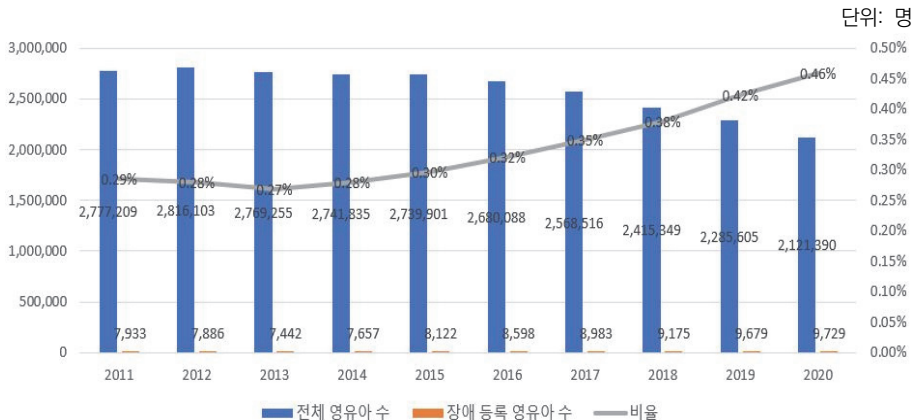
주: 아동은 만 0~17세, 영유아는 만 0~5세 기준이며, 장애아동 및 영유아는 장애아 등록 수임.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12. 재인용.  
 원자료: 1) 전체 아동 및 영유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연령별 인구현황  
 2) 장애 아동 및 영유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http://www.mohw.go.kr/>)

[그림 II-1-1] 연도별 전체 아동 대비 장애 등록 아동 현황(2011~2020년)



주: 1) <표 II-1-2>를 도식화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13. 재인용.

[그림 II-1-2] 연도별 전체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현황(2011~2020년)



주: <표 II-1-2>를 도식화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13. 재인용.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학교 27,027명 중 26,381명(97.6%), 특수학급 54,266명 중 34,102명(62.8%), 일반학급 16,600명 중 7,322명(44.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261명 중 127명(48.7%)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학교 27,027명 중 26,381명(97.6%), 특수학급 54,266명 중 34,102명(62.8%), 일반학급 16,600명 중 7,322명(44.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261명 중 127명(48.7%)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2021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등록 현황

단위: 명, (%)

| 장애유형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 특수교육<br>지원센터 | 전체           |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              |
| 지체장애   | 814          | 994          | 1,010       | 15           | 2,833        |
| 뇌병변장애  | 3,246        | 2,541        | 1,319       | 89           | 7,195        |
| 시각장애   | 1,047        | 210          | 376         | 2            | 1,635        |
| 청각장애   | 607          | 647          | 1,584       | 9            | 2,847        |
| 언어장애   | 202          | 1,548        | 421         | -            | 2,171        |
| 지적장애   | 13,948       | 20,460       | 1,878       | 5            | 36,320       |
| 자폐성장애  | 6,459        | 6,958        | 637         | 3            | 14,674       |
| 정신장애   | 25           | 14           | 1           | -            | 40           |
| 신장장애   | 3            | 10           | 22          | -            | 35           |
| 심장장애   | 3            | 15           | 20          | -            | 38           |
| 호흡기장애  | 1            | 5            | 9           | 2            | 17           |
| 간장애    | 1            | 8            | 17          | 1            | 27           |
| 안면장애   | 1            | 3            | 3           | -            | 7            |
| 장루요루장애 | 1            | 3            | 13          | -            | 17           |
| 뇌전증장애  | 23           | 40           | 12          | 1            | 76           |
| 계      | 26,381(97.6) | 34,102(62.8) | 7,322(44.1) | 127(48.7)    | 67,932(69.2) |

주: 특수교육대상자 전 연령에 대한 자료임.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112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1a)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0-5세 영유아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의 수는 총 9,729명이었다(박창현, 2021: 15 재인용). 0-5세 영유아의 장애 유형으로는 뇌병변이 30.4%(2,96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언어장애 18.6%(1,811명), 지적장애 18.6%(1,807

명), 자폐성장애 15.6% (1,519명), 청각장애 9.3%(908명), 지체장애 3.3%(323명), 시각장애 2.3%(223명) 순이었다(박창현, 2021: 15 재인용).

〈표 II-1-4〉 2020년 장애영유아의 유형별 장애 등록 현황('21년 4월 등록, '20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br>병<br>변 | 자<br>폐<br>성 | 신장  | 심장  | 호<br>흡<br>기 | 간   | 안면  | 장루,<br>요루 | 뇌<br>전<br>증 | 합계    |
|----|-----|-----|-----|-------|-------|-------------|-------------|-----|-----|-------------|-----|-----|-----------|-------------|-------|
| 영아 | 67  | 49  | 341 | 0     | 68    | 748         | 21          | 9   | 3   | 4           | 19  | 2   | 1         | 1           | 1,333 |
| 유아 | 256 | 174 | 567 | 1,811 | 1,739 | 2,213       | 1,498       | 12  | 29  | 4           | 60  | 1   | 13        | 19          | 8,396 |
| 총계 | 323 | 223 | 908 | 1,811 | 1,807 | 2,961       | 1,519       | 21  | 32  | 8           | 79  | 3   | 14        | 20          | 9,729 |
| 비율 | 3.3 | 2.3 | 9.3 | 18.6  | 18.6  | 30.4        | 15.6        | 0.2 | 0.3 | 0.1         | 0.8 | 0.0 | 0.1       | 0.2         | 100   |

주: 1) 정신장애는 0명이므로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2) 영아(만 0-2세), 유아(만 3-5세)를 의미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15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장애인 등록 현황([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335](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335)))

2020년 12월 기준 시도별로 장애등록 영유아 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2,7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481명, 경남 754명, 부산 728명, 인천 550명, 충남 475명, 대구 463명, 경북 458명, 대전 294명, 전북 290명, 충북 278명, 전남 및 울산 250명, 광주 230명, 강원 187명, 제주 171명, 세종 104명 순이었다(박창현, 2021: 15 재인용).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애영아는 경기도 360명, 서울 235명이었고, 장애 유아는 경기도 2,406명, 서울 1,246명으로 시도별 장애영아의 평균이 78명, 장애아동의 평균이 494명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에 장애영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15 재인용).

〈표 II-1-5〉 2020년 시도별 장애등록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21년 4월 등록, '20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 연령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br>병<br>변 | 자<br>폐<br>성 | 신장 | 심장 | 호<br>흡<br>기 | 간  | 안면 | 장루,<br>요루 | 뇌<br>전<br>증 | 합계    |
|----|----|----|----|----|-----|-----|-------------|-------------|----|----|-------------|----|----|-----------|-------------|-------|
| 서울 | 영아 | 8  | 9  | 54 | -   | 14  | 138         | 3           | 2  | -  | -           | 6  | 1  | -         | -           | 235   |
|    | 유아 | 30 | 38 | 98 | 234 | 210 | 354         | 263         | 2  | 3  | -           | 10 | -  | -         | 4           | 1,246 |
| 부산 | 영아 | 6  | 2  | 16 | -   | 7   | 64          | 3           | -  | -  | -           | -  | -  | -         | -           | 98    |
|    | 유아 | 12 | 7  | 29 | 136 | 126 | 196         | 117         | -  | 3  | -           | 2  | -  | -         | 2           | 630   |
| 대구 | 영아 | 3  | 3  | 18 | -   | 7   | 39          | -           | -  | -  | -           | -  | -  | -         | 1           | 71    |
|    | 유아 | 11 | 4  | 22 | 86  | 113 | 108         | 44          | -  | -  | -           | 3  | -  | -         | 1           | 392   |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 구분     | 연령 | 자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 병변  | 자 폐 성 | 신장 | 심장 | 호 흡 기 | 간  | 안면 | 장루, 요루 | 뇌 전 증 | 합계    |
|--------|----|-----|-----|-----|-------|-------|-------|-------|----|----|-------|----|----|--------|-------|-------|
| 인천     | 영아 | 2   | 1   | 16  | -     | 2     | 41    | 3     | -  | -  | -     | 1  | -  | -      | -     | 66    |
|        | 유아 | 20  | 13  | 25  | 157   | 84    | 96    | 77    | 1  | 1  | 1     | 5  | -  | 2      | 2     | 484   |
| 광주     | 영아 | 4   | -   | 13  | -     | -     | 24    | -     | 1  | -  | -     | -  | -  | -      | -     | 42    |
|        | 유아 | 9   | 4   | 11  | 19    | 25    | 78    | 36    | 1  | -  | 1     | 3  | -  | 1      | -     | 188   |
| 대전     | 영아 | 3   | 1   | 10  | -     | 1     | 23    | -     | -  | -  | 1     | 1  | -  | -      | -     | 40    |
|        | 유아 | 8   | 7   | 20  | 29    | 58    | 82    | 46    | -  | 3  | -     | 1  | -  | -      | -     | 254   |
| 울산     | 영아 | -   | -   | 4   | -     | -     | 15    | -     | -  | -  | -     | 1  | -  | -      | -     | 20    |
|        | 유아 | 10  | 2   | 12  | 43    | 35    | 70    | 52    | 2  | 3  | -     | 1  | -  | -      | -     | 230   |
| 세종     | 영아 | 2   | 4   | 1   | -     | 1     | 10    | 1     | -  | -  | -     | 1  | -  | -      | -     | 20    |
|        | 유아 | 4   | 1   | 7   | 17    | 23    | 18    | 13    | -  | -  | -     | 1  | -  | -      | -     | 84    |
| 경기     | 영아 | 20  | 18  | 93  | -     | 20    | 188   | 6     | 3  | 2  | 3     | 6  | -  | 1      | -     | 360   |
|        | 유아 | 71  | 50  | 159 | 591   | 490   | 598   | 405   | 5  | 9  | 1     | 15 | 1  | 4      | 7     | 2,406 |
| 강원     | 영아 | 1   | 1   | 8   | -     | 2     | 15    | 1     | 2  | -  | -     | -  | -  | -      | -     | 30    |
|        | 유아 | 2   | 3   | 17  | 15    | 51    | 35    | 32    | -  | -  | -     | 1  | -  | 1      | -     | 157   |
| 충북     | 영아 | 2   | -   | 17  | -     | -     | 26    | -     | -  | -  | -     | 1  | -  | -      | -     | 46    |
|        | 유아 | 9   | 6   | 22  | 43    | 59    | 59    | 30    | -  | -  | -     | 1  | -  | 2      | 1     | 232   |
| 충남     | 영아 | 2   | 2   | 20  | -     | 5     | 35    | 1     | -  | -  | -     | 1  | -  | -      | -     | 66    |
|        | 유아 | 14  | 6   | 29  | 87    | 101   | 94    | 71    | -  | 1  | -     | 5  | -  | -      | 1     | 409   |
| 전북     | 영아 | 3   | 2   | 14  | -     | 5     | 19    | -     | -  | -  | -     | -  | -  | -      | -     | 43    |
|        | 유아 | 9   | 6   | 22  | 48    | 63    | 63    | 29    | 1  | 1  | -     | 5  | -  | -      | -     | 247   |
| 전남     | 영아 | 4   | 2   | 7   | -     | -     | 15    | -     | -  | -  | -     | -  | -  | -      | -     | 28    |
|        | 유아 | 8   | 4   | 27  | 38    | 47    | 61    | 31    | -  | 2  | -     | 4  | -  | -      | -     | 222   |
| 경북     | 영아 | -   | 3   | 17  | -     | 1     | 34    | -     | -  | -  | -     | -  | 1  | -      | -     | 56    |
|        | 유아 | 21  | 12  | 27  | 105   | 94    | 92    | 47    | -  | -  | 1     | 2  | -  | -      | 1     | 402   |
| 경남     | 영아 | 4   | 1   | 26  | -     | -     | 56    | 2     | -  | -  | -     | 1  | -  | -      | -     | 90    |
|        | 유아 | 14  | 7   | 32  | 137   | 125   | 183   | 160   | -  | 2  | -     | 1  | -  | 3      | -     | 664   |
| 제주     | 영아 | 3   | -   | 7   | -     | 3     | 6     | 1     | 1  | 1  | -     | -  | -  | -      | -     | 22    |
|        | 유아 | 4   | 4   | 8   | 26    | 35    | 26    | 45    | -  | 1  | -     | -  | -  | -      | -     | 149   |
| 영유아 전체 |    | 358 | 260 | 965 | 1,454 | 1,974 | 3,110 | 1,377 | 21 | 31 | 7     | 80 | 3  | 14     | 25    | 9,679 |

주: 1) 정신장애는 0명이므로 표에서 제외

2) 영아(만0-2세), 유아(만 3-5세)를 의미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p. 15-16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장애인 등록 현황([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335](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335)))

## 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021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21a)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98,154명 중 장애영아 및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7,566명이며, 이는 7.7%에 해당한다. 장애영아의 경우, 총 369명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70.7%(261명)가 특수학교에서 29.3%(108명)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집계되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아만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7,197명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4,444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서 1,826명, 특수학교에서 927명으로 나타나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장애영아와 유치원 학생의 수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다. 아울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일반학급보다는 특수학급에 속한 학생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2021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 특수교육<br>지원센터 | 계      |
|--------------|------|--------|--------|-------------------|--------------|--------|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br>(전일제통합학급) |              |        |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 |      | 27,027 | 54,266 | 16,600            | 261          | 98,154 |
| 학교과정         | 계    | 9,739  | 6,928  | 9,452             | 261          | 26,380 |
|              | 장애영아 | 108    | -      | -                 | 261          | 369    |
|              | 유치원  | 927    | 4,444  | 1,826             | -            | 7,197  |
|              | 초등학교 | 8,704  | 2,484  | 7,626             | -            | 44,814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15, 21에서 재구성함.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1a)에 따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장애영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치원을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점차 다소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지난 5년간 33,505명에서 44,814명으로 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연도 및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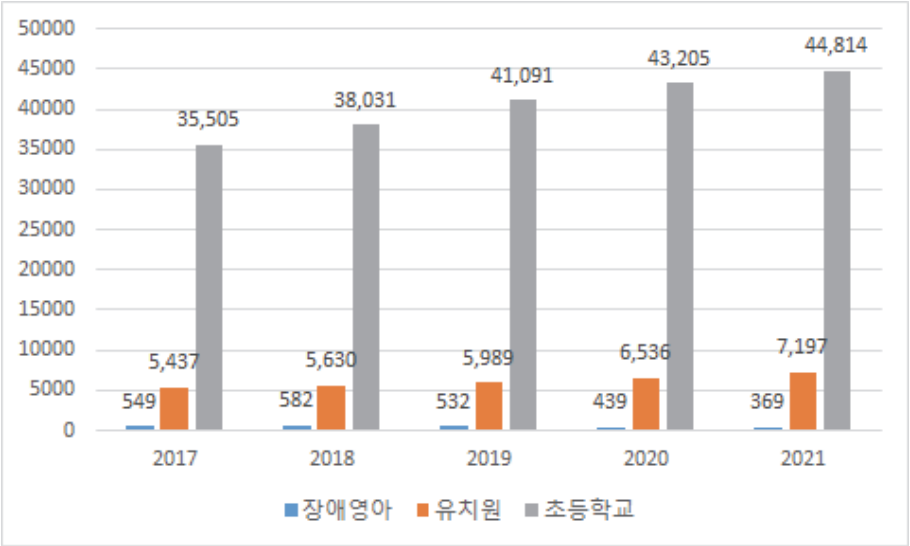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 특수교육대상자 수 |       |        |
|------|-----------|-------|--------|
|      | 장애영아      | 유치원   | 초등학교   |
| 2017 | 549       | 5,437 | 35,505 |
| 2018 | 582       | 5,630 | 38,031 |
| 2019 | 532       | 5,989 | 41,091 |
| 2020 | 439       | 6,536 | 43,205 |
| 2021 | 369       | 7,197 | 44,814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15에서 재구성함.

〔그림 II-1-3〕 연도 및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주: 〈표 II-1-7〉을 도식화함.

2021년 4월 기준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장애영아를 포함한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경기도 1,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3명, 부산 582명, 인천 563명, 경남 456명, 충남 438명, 대구 399명, 충북 3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제주가 2.5%로 가장 높았고, 충북 2.3%, 세종 2.0%, 충남 1.8%, 전북 1.7%, 인천 1.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로 경기도가 10,9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87명, 경남 3,203명, 인천 3,132명, 부산 2,979명, 충남 2,316명, 경북 2,294명, 대구 2,1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충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인천, 충남, 전남, 제주가 2.0%로 다음을 이었다.

〈표 II-1-8〉 전체 영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 구분 | 유치원     |            |           |             |
|----|---------|------------|-----------|-------------|
|    | 전체 학생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 전체 학생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
| 서울 | 69,949  | 823(1.2)   | 399,469   | 5,887(1.5)  |
| 부산 | 38,650  | 582(1.5)   | 153,917   | 2,979(1.9)  |
| 대구 | 33,870  | 399(1.2)   | 121,308   | 2,187(1.8)  |
| 인천 | 36,201  | 563(1.6)   | 154,839   | 3,132(2.0)  |
| 광주 | 22,198  | 180(0.8)   | 84,987    | 1,385(1.6)  |
| 대전 | 22,132  | 285(1.3)   | 77,727    | 1,305(1.7)  |
| 울산 | 15,745  | 220(1.4)   | 66,653    | 1,228(1.8)  |
| 세종 | 6,858   | 137(2.0)   | 30,911    | 353(1.1)    |
| 경기 | 161,356 | 1,910(1.2) | 774,266   | 10,986(1.4) |
| 강원 | 13,684  | 186(1.4)   | 72,377    | 1,300(1.8)  |
| 충북 | 15,577  | 366(2.3)   | 84,259    | 1,814(2.2)  |
| 충남 | 24,508  | 438(1.8)   | 118,484   | 2,316(2.0)  |
| 전북 | 20,021  | 342(1.7)   | 92,912    | 1,741(1.9)  |
| 전남 | 17,316  | 208(1.2)   | 91,401    | 1,866(2.0)  |
| 경북 | 33,375  | 315(0.9)   | 127,911   | 2,294(1.8)  |
| 경남 | 45,066  | 456(1.0)   | 189,661   | 3,203(1.7)  |
| 제주 | 6,277   | 156(2.5)   | 41,328    | 838(2.0)    |
| 계  | 582,783 | 7,566(1.3) | 2,682,410 | 44,814(1.7) |

주: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를 포함한 수임.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33, 36에서 재구성함.

한편, 2021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신청은 568명, 배치는 531명(93.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생의 경우 신청 16,477명, 배치 15,152명(92.0%), 유아의 경우, 6,791명 신청 6,168명 배치(90.8%)로 나타났다.

〈표 II-1-9〉 2021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현황

단위: 명, %

| 구분 | 특수학교  |       | 일반학교   |       |       |       | 특수교육<br>지원센터 |     | 계      |        | 배치<br>비율 |
|----|-------|-------|--------|-------|-------|-------|--------------|-----|--------|--------|----------|
|    |       |       | 특수학급   |       | 일반학급  |       |              |     |        |        |          |
|    | 신청    | 배치    | 신청     | 배치    | 신청    | 배치    | 신청           | 배치  | 신청     | 배치     |          |
| 영아 | 148   | 145   | -      | -     | -     | -     | 420          | 386 | 568    | 531    | 93.5     |
| 유아 | 807   | 784   | 3,854  | 3,552 | 2,130 | 1,832 | -            | -   | 6,791  | 6,168  | 90.8     |
| 초등 | 2,535 | 2,328 | 10,090 | 9,374 | 3,852 | 3,450 | -            | -   | 16,477 | 15,152 | 92.0     |

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109에서 재구성함.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수의 경우 2011년 3,325명에서 2021년 7,35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배치자 수도 2011년 3,142명에서 2021년 6,699명으로 2배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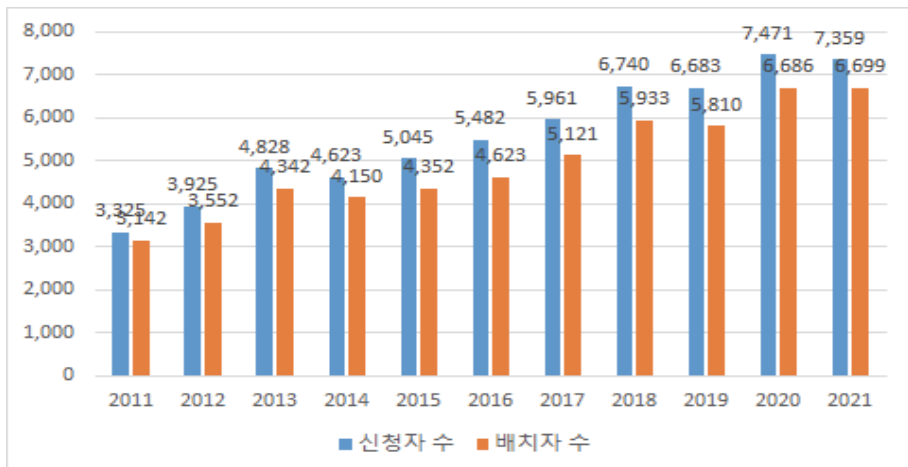
〈표 II-1-10〉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 선정/배치 현황(2011-2021년)

단위: 명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신청자 수 | 3,325 | 3,925 | 4,828 | 4,623 | 5,045 | 5,482 | 5,961 | 6,740 | 6,683 | 7,471 | 7,359 |
| 배치자 수 | 3,142 | 3,552 | 4,342 | 4,150 | 4,352 | 4,623 | 5,121 | 5,933 | 5,810 | 6,686 | 6,699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21).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특수교육통계 2011-2021년).

[그림 II-1-4]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 선정/배치 현황(2011-2021년)



주: 〈표 II-2-17〉을 도식화 함.

2021년 기준으로 기관 및 학교과정별로 순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학교에서 순회, 파견하는 총 959명 중 학교과정별로는 장애영아 포함한 유치원 169명, 초등학교 364명이 있었고, 기관별로는 가정이 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204명, 병원 38명이 있었으며, 일반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에서 순회, 파견, 겸임하는 학생 총 893명 중 학교과정별로는 장애영아 포함 유치원 61명, 초등학교 370명이 있었으며, 기관별로는 가정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294명, 병원 15명, 일반학교 6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경우 순회 파견하는 학생 총 2,673명 중 학교과정별로는 장애영아 포함 유치원 806명, 초등학교 1,035명이 있었고, 기관별로는 일반학교가 2,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330명, 시설 75명, 병원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11〉 2020년 기관 및 학교과정별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 구분            | 학생 수  |     |    |       |            |       |        | 계     |
|---------------|-------|-----|----|-------|------------|-------|--------|-------|
|               | 기관    |     |    |       | 학교과정       |       |        |       |
|               | 가정    | 시설  | 병원 | 일반 학교 | 유치원 (영아포함) | 초등 학교 | 중고등 학교 |       |
| 특수학교 순회·파견    | 717   | 204 | 38 | -     | 169        | 364   | 426    | 959   |
| 특수학급 순회·파견·겸임 | 516   | 294 | 15 | 68    | 61         | 370   | 462    | 893   |
| 특수교육지원센터      | 330   | 75  | 19 | 2,249 | 806        | 1,035 | 832    | 2,673 |
| 계             | 1,563 | 573 | 72 | 2,317 | 1,036      | 1,769 | 1,720  | 4,525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28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 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현황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른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229명의 장애영유아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었다. 기관별로는 일반 어린이집에는 1,064명,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6,206명,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는 4,959명의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21c; 박창현, 2021: 20 재인용).

〈표 II-1-12〉 2020년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

단위: 명

| 일반어린이집 | 특수보육어린이집   |            |        | 총계     |
|--------|------------|------------|--------|--------|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소계     |        |
| 1,064  | 6,206      | 4,959      | 11,165 | 12,229 |

주: 1) 아동자격을 (영유아, 누리) 장애아인 아동임.

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인건비 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수입.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0.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c). 2020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29, 150, 153)

17개 시도별로 기관에 따른 장애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박창현, 2021: 20 재인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가 더 많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더 많이 재원하고 있었다.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는 많지는 않았으나,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등의 순으로 비교적 수도권에 많았다(박창현, 2021: 20 재인용).

〈표 II-1-13〉 2020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

단위: 명

| 구분 | 일반 어린이집 | 특수보육어린이집   |            |       | 총계    |
|----|---------|------------|------------|-------|-------|
|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소계    |       |
| 서울 | 97      | 195        | 1,722      | 1,917 | 2,014 |
| 부산 | 51      | 526        | 165        | 691   | 742   |
| 대구 | 36      | 791        | 81         | 872   | 908   |
| 인천 | 69      | 112        | 443        | 555   | 624   |
| 광주 | 24      | 490        | 13         | 503   | 527   |
| 대전 | 30      | 94         | 60         | 154   | 184   |
| 울산 | 19      | 337        | 106        | 443   | 462   |
| 세종 | 9       | 24         | 24         | 48    | 57    |
| 경기 | 219     | 618        | 1,712      | 2,330 | 2,549 |
| 강원 | 26      | 131        | 74         | 205   | 231   |
| 충북 | 19      | 204        | 33         | 237   | 256   |
| 충남 | 74      | 315        | 55         | 370   | 444   |
| 전북 | 28      | 344        | 57         | 401   | 429   |
| 전남 | 26      | 515        | 40         | 555   | 581   |
| 경북 | 60      | 710        | 94         | 804   | 864   |

| 구분 | 일반 어린이집 | 특수보육어린이집   |            |        | 총계     |
|----|---------|------------|------------|--------|--------|
|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소계     |        |
| 경남 | 76      | 669        | 134        | 803    | 879    |
| 제주 | 30      | 131        | 146        | 277    | 307    |
| 계  | 893     | 6,206      | 4,959      | 11,165 | 12,0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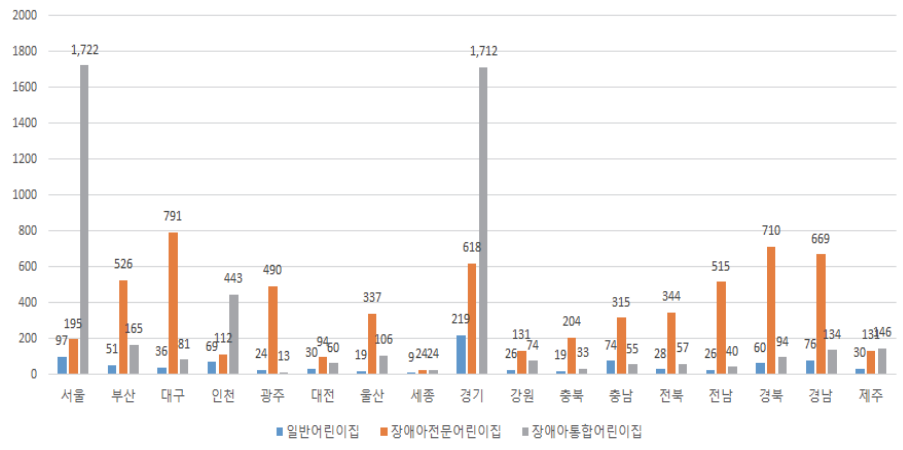
주: 1)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임.

2)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인건비 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수임.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p. 20-21.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p. 135-136, 147-152, 153-155)

[그림 II-1-5] 2020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

단위: 명



주: <표 II-1-11>을 도식화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1. 재인용

## 라. 취학유예자 중 장애영유아의 현황

2021년도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총 404명으로 이 중 만 6세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8세 108명, 만 7세 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78명, 부산 63명, 경기 28명, 전북 23명, 경남 13명, 경북 12명, 대전, 충남 11명, 강원 8명, 인천, 광주 4명, 세종 2명, 전남 3명, 울산, 충북, 제주 1명 순이었다.

〈표 II-1-14〉 2021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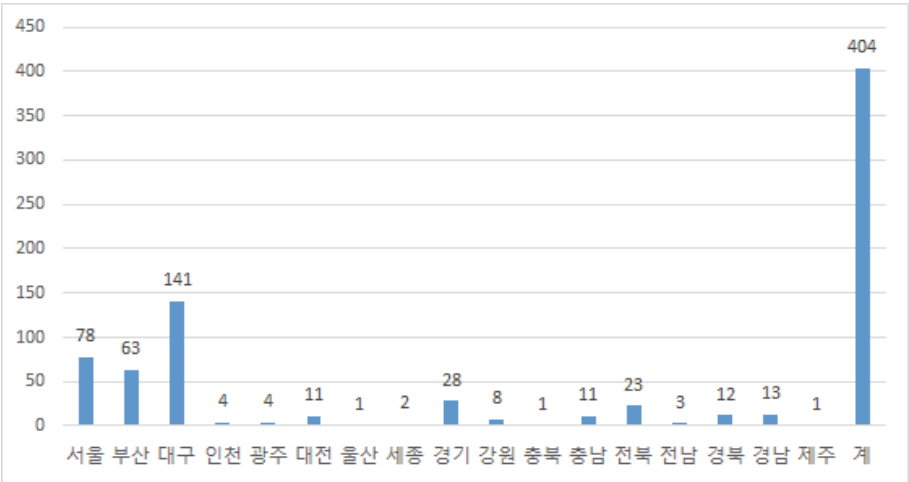
단위: 명, %

| 시도 | 만 6세 | 만 7세 | 만 8세 이상 | 소계  |
|----|------|------|---------|-----|
| 서울 | 42   | 16   | 20      | 78  |
| 부산 | 29   | 12   | 22      | 63  |
| 대구 | 77   | 27   | 37      | 141 |
| 인천 | -    | -    | 4       | 4   |
| 광주 | 2    | -    | 2       | 4   |
| 대전 | 5    | 5    | 1       | 11  |
| 울산 | 1    | -    | -       | 1   |
| 세종 | 2    | -    | -       | 2   |
| 경기 | 21   | 5    | 2       | 28  |
| 강원 | 5    | 1    | 2       | 8   |
| 충북 | 1    | -    | -       | 1   |
| 충남 | 9    | 1    | 1       | 11  |
| 전북 | 9    | 4    | 10      | 23  |
| 전남 | 1    | -    | 2       | 3   |
| 경북 | 5    | 5    | 2       | 12  |
| 경남 | 5    | 5    | 3       | 13  |
| 제주 | 1    | -    | -       | 1   |
| 계  | 215  | 81   | 108     | 404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110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그림 II-1-6〕 2021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110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1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 시키기 위해서’가 3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4.0%,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15〉 2021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 시도 | 인근에<br>특수교육<br>기관이<br>없어서 | 치로나<br>수술 등을<br>위해서 | 장애가<br>호전된 후<br>입학시키<br>기 위해서 | 학교<br>적응이<br>어려워서 | 어린이집<br>보육서비<br>스를<br>이용하기<br>위해서 | 기타       | 계        |
|----|---------------------------|---------------------|-------------------------------|-------------------|-----------------------------------|----------|----------|
| 서울 | 2                         | 6                   | 32                            | 11                | 15                                | 12       | 78       |
| 부산 | 2                         | 8                   | 37                            | 3                 | 9                                 | 4        | 63       |
| 대구 | -                         | 17                  | 20                            | 63                | 40                                | 1        | 141      |
| 인천 | -                         | 3                   | -                             | -                 | -                                 | 1        | 6        |
| 광주 | -                         | -                   | 2                             | 1                 | 1                                 | -        | 9        |
| 대전 | -                         | 4                   | 5                             | -                 | 1                                 | 1        | 6        |
| 울산 | -                         | 1                   | -                             | -                 | -                                 | -        | 1        |
| 세종 | -                         | 1                   | -                             | 1                 | -                                 | -        | 3        |
| 경기 | -                         | 3                   | 8                             | 2                 | 5                                 | 10       | 26       |
| 강원 | -                         | 1                   | 5                             | -                 | -                                 | 2        | 12       |
| 충북 | -                         | -                   | 1                             | -                 | -                                 | -        | 1        |
| 충남 | -                         | 1                   | 4                             | 2                 | 2                                 | 2        | 11       |
| 전북 | 2                         | -                   | 10                            | 6                 | -                                 | 5        | 23       |
| 전남 | -                         | 1                   | 1                             | 1                 | -                                 | -        | 3        |
| 경북 | -                         | 1                   | 5                             | 6                 | -                                 | -        | 12       |
| 경남 | -                         | 1                   | 8                             | 1                 | -                                 | 3        | 13       |
| 제주 | -                         | -                   | 1                             | -                 | -                                 | -        | 1        |
| 계  | 6(1.5)                    | 48(11.9)            | 139(34.4)                     | 97(24.0)          | 73(18.1)                          | 41(10.1) | 404(100)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111.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가 2021년도 4월 기준으로 조사한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취학유예반 현황을 살펴보면, 취학유예자 수는 부산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 117명, 경기 113명, 전남 85명, 경남 84명, 광주 81명, 경북 58명, 서울 49명, 전북 44명, 충북 22명, 충남 19명, 대전 16명, 제주 13명, 강원 12명, 인천 9명, 울산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세가 440명(52.1%)으로 가장 많았고, 만 8세 이상은 222명(26.3%), 만 7세는 183명(21.7%)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24).

〈표 II-1-16〉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취학유예자 수(2021. 4. 기준)

단위: 명, %

| 지역 | 기본반<br>영유아 수 | 취학유예자 수   |           |           |     |
|----|--------------|-----------|-----------|-----------|-----|
|    |              | 만 6세      | 만 7세      | 만 8세 이상   | 소계  |
| 서울 | 232          | 20(40.8)  | 13(26.5)  | 16(32.7)  | 49  |
| 경기 | 609          | 58(51.3)  | 23(20.4)  | 32(28.3)  | 113 |
| 인천 | 101          | 7(77.8)   | 1(11.1)   | 1(11.1)   | 9   |
| 강원 | 64           | 8(66.7)   | 4(33.3)   | 0(0.0)    | 12  |
| 대전 | 55           | 11(68.8)  | 2(12.5)   | 3(18.8)   | 16  |
| 충북 | 228          | 16(72.7)  | 6(27.3)   | 0(0.0)    | 22  |
| 충남 | 333          | 17(89.5)  | 1(5.3)    | 1(5.3)    | 19  |
| 대구 | 452          | 51(43.6)  | 32(27.4)  | 34(29.1)  | 117 |
| 경북 | 530          | 48(82.8)  | 6(10.3)   | 4(6.9)    | 58  |
| 부산 | 423          | 59(48.8)  | 24(19.8)  | 38(31.4)  | 121 |
| 울산 | 145          | 2(100.0)  | -         | -         | 2   |
| 경남 | 390          | 44(52.4)  | 21(25.0)  | 19(22.6)  | 84  |
| 광주 | 323          | 39(48.1)  | 18(22.2)  | 24(29.6)  | 81  |
| 전북 | 244          | 28(63.6)  | 5(11.4)   | 11(25.0)  | 44  |
| 전남 | 474          | 25(29.4)  | 26(30.6)  | 34(40.0)  | 85  |
| 제주 | 96           | 7(53.8)   | 1(7.7)    | 5(38.5)   | 13  |
| 전체 | 4,699        | 440(52.1) | 183(21.7) | 222(26.3) | 845 |

주: 세종은 대전에 포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p. 24-25 재인용.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2021) 내부자료.

참고: 장애영유아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을 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으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표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한 장애아동 취학 유예현황조사를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21b),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937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60명, 일반어린이집 9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아 826명, 여아 469명, 연령별로 살펴보면, 6세 756명, 7세 229명, 8세 119명, 9세 72명, 10세 58명, 11세 31명, 12세 30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21b).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1,204명, 미소지자는 91명이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546명, 미선정된 아동은 749명이었다. 6세가 756명으로 가장 많고(58.4%),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 2021b).

특수교육대상자 미선정(749명) 사유는 ‘제도를 알고 있으나 진단평가 미실시’가 488명(65.2%), ‘제도를 몰라서 진단평가 미실시’가 90명(12.0%), ‘진단평가 결과 미선정’이 57명(7.6%), ‘기타’가 114명(15.2%) 순이었다(보건복지부, 2021b). 한편 취학유예(1,295명) 사유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402명(31.0%),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401명(31.0%),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362명(28.0%),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가 54명(4.2%), ‘인근에 특수교육기관이 없어서’가 21명(1.6%), ‘기타’가 55명(4.2%)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b).

## 마.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의 현황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김정희, 김경란, 강정배, 2015).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소아 낮병동은 하루에 6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개인 집단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개인, 집단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퇴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오전에 아동이 낮병원에 등원하여 치료를 받고 중간에 휴식한 후 오후에 또 한 번의 치료를 받고 귀가 하는 형태이다(전지혜, 원영미, 2019). 2014년 기준 전국 소아재활치료기관은 447개소(49.9%)가 있고,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180개소이며, 낮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소아 입원 재활치료를 받은 아동은 5,400명이었다(박창현, 2021: 26, 재인용).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삶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총 7,976명 중 73.7%는 기관 재원 중이었지만 26.2%는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 5,094명 중 20.5%는 기관 이용을 하지 않았고, 여아는 2,882명 중 36.5%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보다는 여아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중증도 장애영유아가 4,434명 중 29.9%가 경증도 장애영유아가 3,542명 중 21.7%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증도 장애영유아의 비율이 높았다(박창현, 2021: 26).

〈표 II-1-17〉 2019년 장애영유아의 기관(보육시설/유치원) 이용 현황

단위: 명, %

| 구분    |        | 보육시설/유치원    |             |       |
|-------|--------|-------------|-------------|-------|
|       |        | 다니고 있음      | 다니지 않음      | 추정수   |
| 전체    | 소계     | 7,767(73.7) | 209(26.3)   | 7,976 |
| 성별    | 남아     | 4,050(79.5) | 1,044(20.5) | 5,094 |
|       | 여아     | 1,830(63.5) | 1,052(36.5) | 2,882 |
| 장애유형  | 지체     | 636(83.7)   | 124(16.3)   | 763   |
|       | 뇌병변    | 1,343(58.3) | 961(41.7)   | 2,304 |
|       | 시각     | 219(60.2)   | 145(39.8)   | 364   |
|       | 청각/언어  | 2,314(76.4) | 715(23.6)   | 3,029 |
|       | 지적/자폐성 | 1,174(93.8) | 78(6.2)     | 1,252 |
|       | 내부/안면  | 211(72.9)   | 79(27.1)    | 290   |
| 장애정도별 | 중증도    | 3,108(70.1) | 1,326(29.9) | 4,434 |
|       | 경증도    | 2,773(78.3) | 769(21.7)   | 3,542 |

주: 정신장애는 0명이므로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6. 재인용

(원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삶패널조사: 재학상태)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2,095명 중 공통적으로 너무 어려서의 이유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이유가 15.9%, 집 주변에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가 12.2%, 정보 부족으로 인해가 9.4% 순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27).

〈표 II-1-18〉 2019년 보육시설/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 구분 | 추정 수  | 정보 부족으로 인해    | 비용부담 때문에     | 시설을 믿지 못해서   | 대안 (홈스쿨)이 있어서 | 집 주변에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 너무 어려서        | 기타            |
|----|-------|---------------|--------------|--------------|---------------|-------------------|---------------|---------------|
| 전체 | 2,095 | 197<br>(9.4)  | 142<br>(6.8) | 124<br>(5.9) | 46<br>(2.2)   | 254<br>(12.2)     | 997<br>(47.6) | 333<br>(15.9) |
| 남아 | 1,043 | 136<br>(13.0) | 59<br>(5.7)  | 72<br>(6.9)  | 19<br>(1.8)   | 75<br>(7.2)       | 525<br>(50.3) | 157<br>(15.1) |
| 여아 | 1,053 | 62<br>(5.9)   | 83<br>(7.9)  | 53<br>(5.0)  | 27<br>(2.6)   | 180<br>(17.1)     | 473<br>(44.9) | 175<br>(16.6)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7. 재인용

(원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삶패널조사: 보육시설/유치원 다니지 않는 이유)

## 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현황

영유아 건강검진은 4~6개월 시기를 제외하고 K-DST를 통해 발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창현 외, 2021: 27). 그 결과 양호, 추적 검사 요망, 지속 관리 필요로

분류되는데 양호는 또래 수준 성장발달 상태를, 추적 검사 요망은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재검사 필요를, 심화평가권고는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박창현 외, 2021: 27).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있다(박창현 외, 2021: 27). 2019년에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평가를 받은 2,103,881명의 영유아 중 1.9%인 40,099명의 영유아가 심화평가 권고되었다(박창현 외, 2021: 27).

〈표 II-1-19〉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단위: 명

| 구분     | 4~6<br>개월 | 9~12<br>개월 | 18~24<br>개월 | 30~36<br>개월 | 42~48<br>개월 | 54~60<br>개월 | 66~71<br>개월 | 계         |
|--------|-----------|------------|-------------|-------------|-------------|-------------|-------------|-----------|
| 전체     | 273,935   | 275,306    | 311,198     | 335,087     | 340,058     | 303,748     | 264,549     | 2,103,881 |
| 양호     | -         | 236,062    | 255,993     | 279,215     | 297,926     | 266,549     | 231,562     | 1,567,307 |
| 추적검사요망 | -         | 33,250     | 44,834      | 43,650      | 32,673      | 30,271      | 27,009      | 211,687   |
| 심화평가권고 | -         | 4,771      | 8,609       | 10,062      | 7,208       | 5,150       | 4,299       | 40,099    |
| 지속관리필요 | -         | 1,158      | 1,679       | 2,101       | 2,192       | 1,729       | 1,606       | 10,465    |
| 기타     | -         | 17         | 23          | 8           | 11          | 12          | 15          |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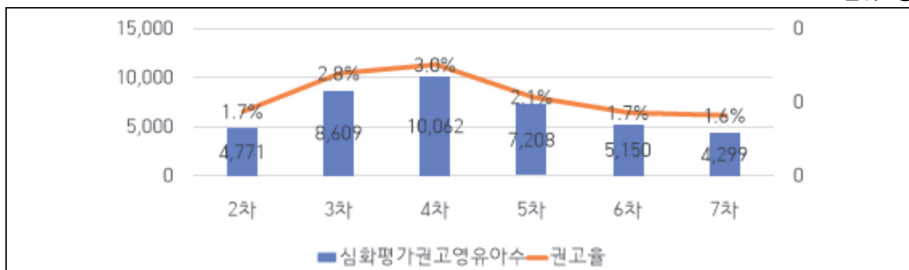
주: 1)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차(구강검진 3회 포함)에 걸쳐 진행됨.

2) 1차 검진(생후 4~6개월), 2차 검진(생후 9~12개월), 3차 검진(생후 18~29개월),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5차 검진(생후 42~53개월), 6차 검진(생후 54~65개월),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8. 재인용  
(원자료: 통계청(<https://kostat.go.kr/>).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

〈그림 II-1-7〉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중 심화평가권고 현황

단위: 명



주: 1)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중 '심화평가권고'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 심화평가권고비율: (심화평가권고영유아 수/개월별 전체 명수)×100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8. 재인용  
(원자료: 통계청(<https://kostat.go.kr/>).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

## 2. 장애영유아 기관 통계 현황

###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기관 및 학급 현황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아와 유치원 학교 수와 학급수의 분포를 설립 및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교육환경별 학급 수는 327개의 특수학교 중 장애영아의 경우 39개, 유치원의 경우 288개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228개,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의 경우 1,641개가 설치되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59개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설립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특수학교 장애영아 학급의 경우 국립 3개(7.7%), 공립 12개(30.8%), 사립 24개(61.5%)로 사립 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급의 수가 전체의 과반 수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며,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의 경우 국립 11개(3.8%), 공립 126개(43.8%), 사립 151개(52.4%)로 국공립 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학급의 수가 장애영아 학급의 수보다 많았지만, 장애영아 학급과 마찬가지로 사립 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학급의 수가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의 수 중 과반 수를 차지하였다.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의 경우, 국립 3개(0.2%), 공립 1,223개(99.6%), 사립 2개(0.2%)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수가 99%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의 경우 설립유형이 국립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sup>2)</sup>, 공립 712개(43.4%), 사립 929개(56.6%)로 나타났다.

〈표 II-2-1〉 2021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유아 학교 수 및 학급 수 현황

단위: 교, 학급, %

| 구분                   | 특수학교 |             |            |             | 일반학교       |            |                    |       | 특수교육<br>지원센터 |
|----------------------|------|-------------|------------|-------------|------------|------------|--------------------|-------|--------------|
|                      |      |             |            |             | 특수학급       |            | 일반학급<br>(전일제 통합학급) |       |              |
| 설립<br>및<br>학교<br>과정별 | 학급 수 |             | 장애영아       | 유치원         | 유치원        |            |                    |       | 장애영아         |
|                      |      |             | 학급 수       | 학급 수        | 학교 수       | 학급 수       | 학교 수               | 학급 수  | 학급 수         |
|                      | 전체   | 327         | 39         | 288         | 1,001      | 1,228      | 1,298              | 1,641 | 59           |
|                      | 국립   | 14<br>(4.3) | 3<br>(7.7) | 11<br>(3.8) | 3<br>(0.3) | 3<br>(0.2) | -                  | -     | -            |

2) 공주대 부속 유치원이 국립이면서 전일제 통합학급이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

| 구분 | 특수학교 |               |              |               | 일반학교          |                 |                    |               | 특수교육<br>지원센터 |
|----|------|---------------|--------------|---------------|---------------|-----------------|--------------------|---------------|--------------|
|    |      |               |              |               | 특수학급          |                 | 일반학급<br>(전일제 통합학급) |               |              |
|    | 공립   | 138<br>(42.2) | 12<br>(30.8) | 126<br>(43.8) | 996<br>(99.5) | 1,223<br>(99.6) | 616<br>(47.5)      | 712<br>(43.4) | -            |
|    | 사립   | 175<br>(53.5) | 24<br>(61.5) | 151<br>(52.4) | 2<br>(0.2)    | 2<br>(0.2)      | 682<br>(52.5)      | 929<br>(56.6) | -            |

주: 1) 특수학교의 학교 수는 장애영아, 유치원, 초·중·고 및 전공과까지 포함된 수임.

2) 유치원 특수학교 학급 수 중 유치원 학급에 장애영아가 속한 학급은 '장애영아입급유치원학급'으로 분류·집계됨.  
 자료: 교육부(2021b). 특수교육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5005> p. 30, 72 114, 160에서 재구성함.

17개 시도별 특수학교의 학교 수와 학급 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수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의 특수학교 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특수학교의 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영아 학급 수의 경우 서울이 8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학급), 광주 및 경기(3학급), 대전 및 충북(2학급), 인천, 세종, 충남, 전북(1학급) 순이었으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학급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학급 수의 경우 경기도가 396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26학급), 인천(87학급), 충남(84학급), 경남(75학급), 충북(63학급), 대전(54학급), 전북(51학급), 전남(47학급), 부산(42학급), 대구(38학급), 강원(31학급), 울산(37학급), 세종(32학급), 경북(31학급), 광주(21학급), 제주(12학급) 순이었다. 초등학교 학급 수는 경기(1,578학급), 서울(774학급), 경남(492학급), 충남(388학급)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영아학급을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2021년 시도별 특수학교 수와 학급 수 현황

단위: 개교,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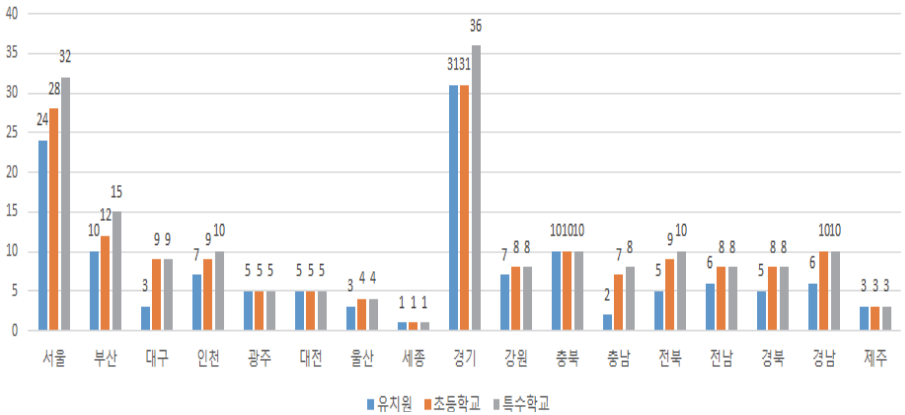
| 시도 | 영아 학급 | 유치원  |      | 초등학교 |      |
|----|-------|------|------|------|------|
|    |       | 학교 수 | 학급 수 | 학교 수 | 학급 수 |
| 서울 | 8     | 24   | 126  | 28   | 774  |
| 부산 | 7     | 10   | 42   | 12   | 342  |
| 대구 | -     | 4    | 38   | 10   | 256  |
| 인천 | 1     | 7    | 87   | 9    | 384  |

| 시도 | 영아 학급 | 유치원  |       | 초등학교 |       |
|----|-------|------|-------|------|-------|
|    |       | 학교 수 | 학급 수  | 학교 수 | 학급 수  |
| 광주 | 3     | 4    | 21    | 5    | 166   |
| 대전 | 2     | 6    | 54    | 6    | 178   |
| 울산 | -     | 3    | 37    | 4    | 156   |
| 세종 | 1     | 1    | 32    | 1    | 58    |
| 경기 | 3     | 32   | 396   | 33   | 1,578 |
| 강원 | -     | 6    | 31    | 8    | 219   |
| 충북 | 2     | 10   | 64    | 10   | 261   |
| 충남 | 1     | 3    | 84    | 8    | 388   |
| 전북 | 1     | 5    | 51    | 9    | 259   |
| 전남 | -     | 6    | 47    | 8    | 353   |
| 경북 | -     | 5    | 31    | 8    | 386   |
| 경남 | -     | 6    | 75    | 10   | 492   |
| 제주 | -     | 3    | 12    | 3    | 80    |
| 계  | 29    | 135  | 1,228 | 172  | 6,330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26, 43에서 인출함.

[그림 II-2-1] 2020년 시도별 학교과정별 학교 수 현황

단위: 개교



주: <표 II-2-2>에서 시도별 학교과정 별 학교 수를 도식화함.

연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의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56개교였던 특수학교 수는 2021년 31개 증가하여 187개교가 되었고, 특수학급 수는 8,415학급에서 12,042학급으로 3,627학급 증가하였다.

〈표 II-2-3〉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학급,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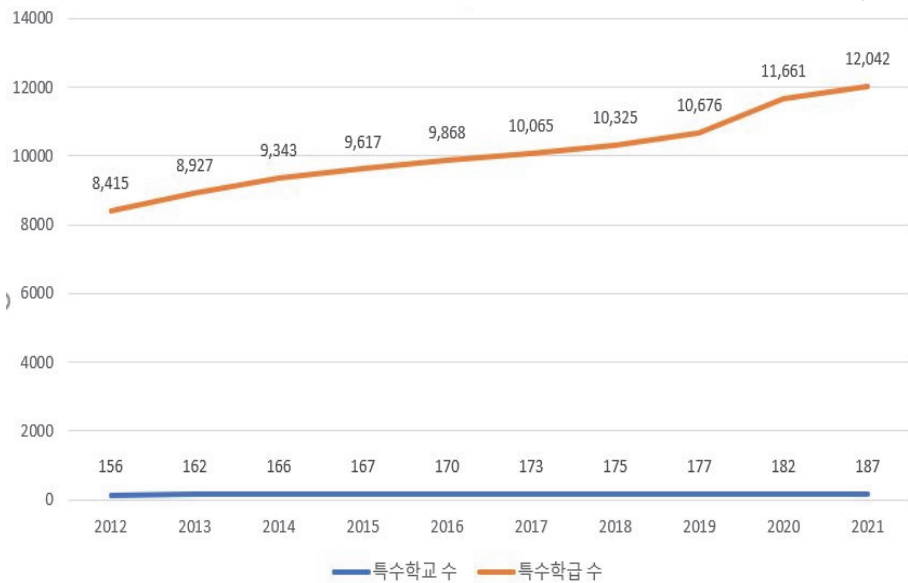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특수학교 수 | 156   | 162   | 166   | 167   | 170   | 173    | 175    | 177    | 182    | 187    |
| 특수학급 수 | 8,415 | 8,927 | 9,343 | 9,617 | 9,868 | 10,065 | 10,325 | 10,676 | 11,661 | 12,042 |

주: 특수학급 수는 특수학교의 학급 수가 아닌 전체 특수학급의 수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2021b). 특수교육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5005> p. 10에서 재구성함.

[그림 II-2-2]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학급



주: 〈표 II-2-3〉을 도식화함.

교육부(2021a)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은 135개교 288학급으로, 그 중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개교 62학급이었다.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은 1,001개교, 1,228학급으로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총 1,136개교, 1,516학급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2021년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교, 학급

| 구분   | 특수학교 유치원       |                      | 유치원<br>특수학급 | 계     |
|------|----------------|----------------------|-------------|-------|
|      | 전체 특수학교<br>유치원 | 유치원 과정만<br>운영하는 특수학교 |             |       |
| 학교 수 | 135            | 10                   | 1,001       | 1,136 |
| 학급 수 | 288            | 62                   | 1,228       | 1,516 |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45에서 인출함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총 893개소에 1,064명이 재원 중이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총 177개소에 6,206명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총 1,211개소에 4,959명이 재원 중이다(박창현, 2021: 33). 이를 설립주체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의 수가 507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가 1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980개소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21c).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박창현, 2021: 33).

〈표 II-2-5〉 2020년 일반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일반어린이집 수 |            |             |     |     |    |    |     | 장애<br>아동<br>현원 |
|----------|------------|-------------|-----|-----|----|----|-----|----------------|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계   |                |
| 116      | 63         | 26          | 507 | 144 | 4  | 33 | 893 | 1,064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3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29)

〈표 II-2-6〉 2020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         | 특수보육어린이집 수 |       |            |             |     |    |    |    |
|-----------|---------|------------|-------|------------|-------------|-----|----|----|----|
|           |         | 총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장애아<br>전문 | 어린이집 수  | 177        | 46    | 102        | 4           | 24  | 1  | -  | -  |
|           | 아동정원    | 8,477      | 1,847 | 5,469      | 222         | 921 | 18 | -  | -  |
|           | 아동현원    | 6,206      | 1,442 | 3,893      | 163         | 692 | 16 | -  | -  |
|           | 보육교직원 수 | 2,690      | 616   | 1,698      | 67          | 302 | 7  | -  | -  |

| 구분    |         | 특수보육어린이집 수 |        |        |         |        |     |    |       |
|-------|---------|------------|--------|--------|---------|--------|-----|----|-------|
|       |         | 총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장애아통합 | 어린이집 수  | 1,211      | 980    | 39     | 34      | 135    | 11  | 2  | 10    |
|       | 아동정원    | 105,805    | 83,488 | 3,903  | 3,050   | 13,291 | 215 | 57 | 1,801 |
|       | 아동현원    | 4,959      | 3,823  | 184    | 220     | 696    | 18  | 4  | 14    |
|       | 보육교직원 수 | 1,804      | 1,425  | 68     | 74      | 227    | 4   | 2  | 4     |

주: 1) 장애 아동현원은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현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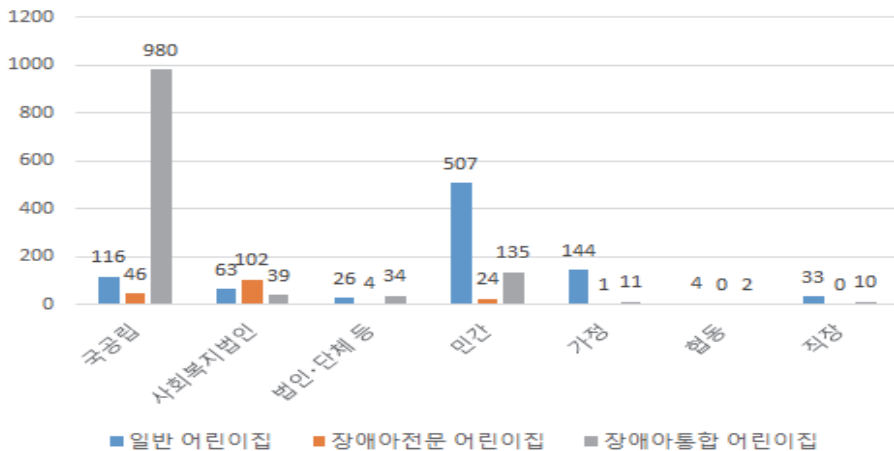
2) 보육교직원(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수 : 장애아반을 맡고 있는 일반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 치료사의 수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4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38)

[그림 II-2-3] 2020년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주: <표 II-2-5> 및 <표 II-2-6>의 내용 중 어린이집 수 부분을 도식화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4 재인용

17개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경기도와 경남 모두 21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 뒤이어 대구에 17개소, 부산에 16개소가 있다. 반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경기도에 420개소, 서울특별시에 388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평균 약 26.9개임을 고려한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분포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박창현, 2021: 35 재인용).

〈표 II-2-7〉 2020년 시도 및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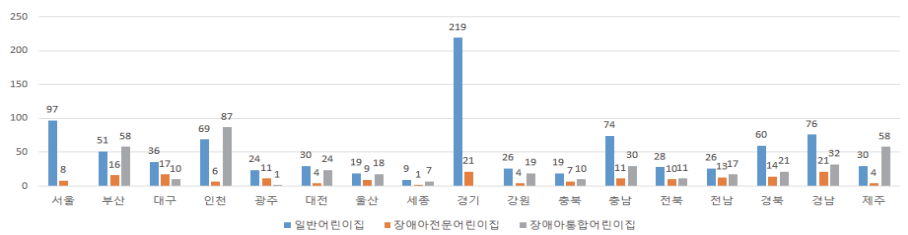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 일반어린이집 | 특수보육어린이집 수 |            |       | 총계    |
|----|--------|------------|------------|-------|-------|
|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소계    |       |
| 서울 | 97     | 8          | 388        | 396   | 493   |
| 부산 | 51     | 16         | 58         | 74    | 125   |
| 대구 | 36     | 17         | 10         | 27    | 63    |
| 인천 | 69     | 6          | 87         | 93    | 162   |
| 광주 | 24     | 11         | 1          | 12    | 36    |
| 대전 | 30     | 4          | 24         | 28    | 58    |
| 울산 | 19     | 9          | 18         | 27    | 46    |
| 세종 | 9      | 1          | 7          | 8     | 17    |
| 경기 | 219    | 21         | 420        | 441   | 660   |
| 강원 | 26     | 4          | 19         | 23    | 49    |
| 충북 | 19     | 7          | 10         | 17    | 36    |
| 충남 | 74     | 11         | 30         | 41    | 115   |
| 전북 | 28     | 10         | 11         | 21    | 49    |
| 전남 | 26     | 13         | 17         | 30    | 56    |
| 경북 | 60     | 14         | 21         | 35    | 95    |
| 경남 | 76     | 21         | 32         | 53    | 129   |
| 제주 | 30     | 4          | 58         | 62    | 92    |
| 계  | 893    | 177        | 1,211      | 1,388 | 2,281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5.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p. 135-136).

〔그림 II-2-4〕 2020년 시도 및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자료: 1) 〈표 II-2-7〉을 도식화함.  
2)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5.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p. 135-136).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모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 169개소에서 2020년 177개소로 10년 동안 8개소 증가하였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 815개소에서 2020년 1,211개소로 396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36 재인용).

〈표 II-2-8〉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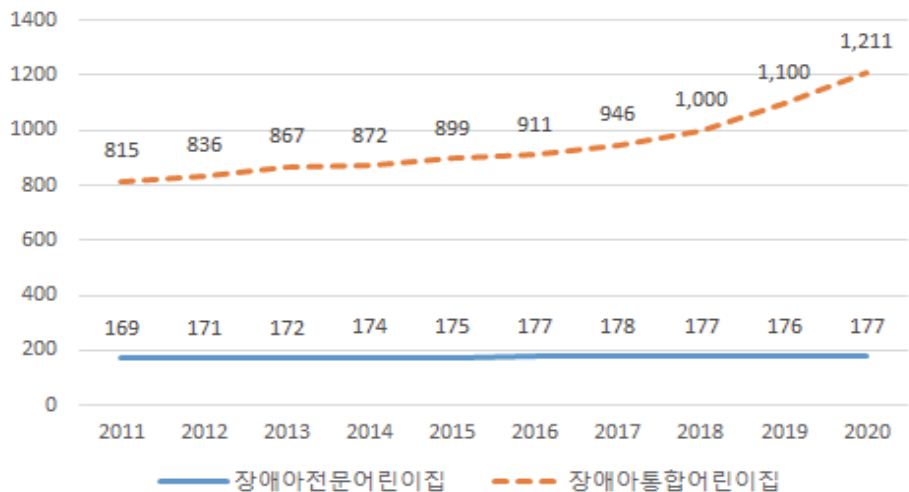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장애아전문 | 169  | 171   | 172   | 174   | 175   | 177   | 178   | 177   | 176   | 177   |
| 장애아통합 | 815  | 836   | 867   | 872   | 899   | 911   | 946   | 1,000 | 1,100 | 1,211 |
| 계     | 984  | 1,007 | 1,039 | 1,046 | 1,074 | 1,088 | 1,124 | 1,177 | 1,276 | 1,388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6 재인용  
(원자료: e-나라지표(2020).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 에서 2021. 3. 25. 인출)

[그림 II-2-5] 연도별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

단위: 개소



자료: 1) 〈표 II-2-8〉을 도식화함.

2)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6 재인용  
(원자료: e-나라지표(2020).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 에서 2021. 3. 25. 인출)

〈표 II-2-9〉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방과후반 현황(2021. 4 기준)

단위: 학급, %

| 지역 | 전체    | 기본반   |       | 방과후반  |      |
|----|-------|-------|-------|-------|------|
|    | 학급 수  | 학급 수  | 비율    | 학급 수  | 비율   |
| 서울 | 277   | 232   | 83.8  | 45    | 16.2 |
| 경기 | 692   | 609   | 88.0  | 83    | 12.0 |
| 인천 | 101   | 101   | 100.0 | -     | -    |
| 강원 | 103   | 64    | 62.1  | 39    | 37.9 |
| 대전 | 87    | 55    | 63.2  | 32    | 36.8 |
| 충북 | 250   | 228   | 91.2  | 22    | 8.8  |
| 충남 | 376   | 333   | 88.6  | 43    | 11.4 |
| 대구 | 619   | 452   | 73.0  | 167   | 27.0 |
| 경북 | 768   | 530   | 69.0  | 238   | 31.0 |
| 부산 | 490   | 423   | 86.3  | 67    | 13.7 |
| 울산 | 240   | 145   | 60.4  | 95    | 39.6 |
| 경남 | 529   | 390   | 73.7  | 139   | 26.3 |
| 광주 | 488   | 323   | 66.2  | 165   | 33.8 |
| 전북 | 426   | 244   | 57.3  | 182   | 42.7 |
| 전남 | 590   | 474   | 80.3  | 116   | 19.7 |
| 제주 | 122   | 96    | 78.7  | 26    | 21.3 |
| 전체 | 6,158 | 4,699 | 76.3  | 1,459 | 23.7 |

주: 세종은 제외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7 재인용  
(원자료: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2021). 내부자료.)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교육부 202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국에 199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은 1,391명의 교사, 일반직 38명, 치료사와 보조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 554명으로 모두 1,683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10〉 2021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 지역 | 센터 수 | 교사  | 일반직 | 기타 | 전체  |
|----|------|-----|-----|----|-----|
| 서울 | 13   | 113 | 1   | 40 | 154 |
| 부산 | 6    | 65  | 8   | 6  | 79  |
| 대구 | 5    | 81  | 3   | 12 | 96  |
| 인천 | 6    | 94  | -   | 7  | 101 |
| 광주 | 3    | 44  | 2   | 12 | 58  |
| 대전 | 5    | 42  | 6   | 7  | 55  |
| 울산 | 3    | 38  | 2   | 45 | 85  |

| 지역 | 센터 수 | 교사    | 일반직 | 기타  | 전체    |
|----|------|-------|-----|-----|-------|
| 세종 | 1    | 10    | 1   | 10  | 21    |
| 경기 | 27   | 290   | 1   | 105 | 396   |
| 강원 | 18   | 50    | 1   | 45  | 96    |
| 충북 | 11   | 88    | 6   | 24  | 118   |
| 충남 | 15   | 75    | 3   | 63  | 141   |
| 전북 | 15   | 87    | 3   | 35  | 125   |
| 전남 | 23   | 81    | -   | 27  | 108   |
| 경북 | 24   | 71    | -   | 26  | 97    |
| 경남 | 21   | 132   | -   | 84  | 217   |
| 제주 | 3    | 30    | -   | 6   | 36    |
| 계  | 199  | 1,391 | 38  | 554 | 1,683 |

주: 교사 및 일반직은 정규직과 계약직 수의 합이며, 기타의 경우 치료사, 사회복지무원, 기타 보조인력을 의미하며 전체 계약직임.

자료: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p. 69에서 재구성함.

## 다. 병원학교 운영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의거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박창현 외, 2021 재인용; 교육부, 2020).

2020년 4월 기준 건강장애 학생은 1,785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전년 대비 월 평균 이용 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외, 2021 재인용; 교육부, 2020b),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0년 33개교로 월 평균 이용 건강장애 학생 수는 227명이고, 44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었다(박창현 외, 2021 재인용; 교육부, 2020).

〈표 II-2-11〉 2020년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 지역 | 병원학교 수 | 월평균 이용 학생 수 | 담당 인력 수 |      |    |    |
|----|--------|-------------|---------|------|----|----|
|    |        |             | 특수교사    | 일반교사 | 기타 | 계  |
| 서울 | 9      | 80          | 1       | 5    | 8  | 14 |
| 부산 | 3      | 15          | 3       | -    | -  | 3  |
| 대구 | 4      | 27          | 4       | -    | -  | 4  |

| 지역 | 병원학교 수 | 월평균 이용<br>학생 수 | 담당 인력 수 |      |    |    |
|----|--------|----------------|---------|------|----|----|
|    |        |                | 특수교사    | 일반교사 | 기타 | 계  |
| 인천 | 1      | -              | 1       | -    | -  | 1  |
| 광주 | 1      | 8              | 1       | -    | -  | 1  |
| 대전 | 1      | 7              | 1       | -    | -  | 1  |
| 울산 | 1      | 10             | 2       | -    | -  | 2  |
| 경기 | 2      | 15             | 4       | -    | -  | 4  |
| 강원 | 1      | 1              | 1       | -    | -  | 1  |
| 충북 | 1      | 4              | 1       | -    | -  | 1  |
| 충남 | 3      | 13             | 4       | -    | -  | 4  |
| 전북 | 1      | 4              | -       | 1    | -  | 1  |
| 전남 | 2      | 24             | 3       | -    | -  | 3  |
| 경남 | 2      | 18             | 3       | -    | -  | 3  |
| 제주 | 1      | 1              | 1       | -    | -  | 1  |
| 계  | 33     | 227            | 30      | 6    | 8  | 44 |

주: 1) 세종 및 경북은 병원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기타의 경우 심리상담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포함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9 재인용

(원자료: 교육부(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81883&lev=0&m=0302> p. 80)

### 3. 유아특수교사 및 인력 통계 현황 및 실태

#### 가.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현황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20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자격 발급을 받았고, 2021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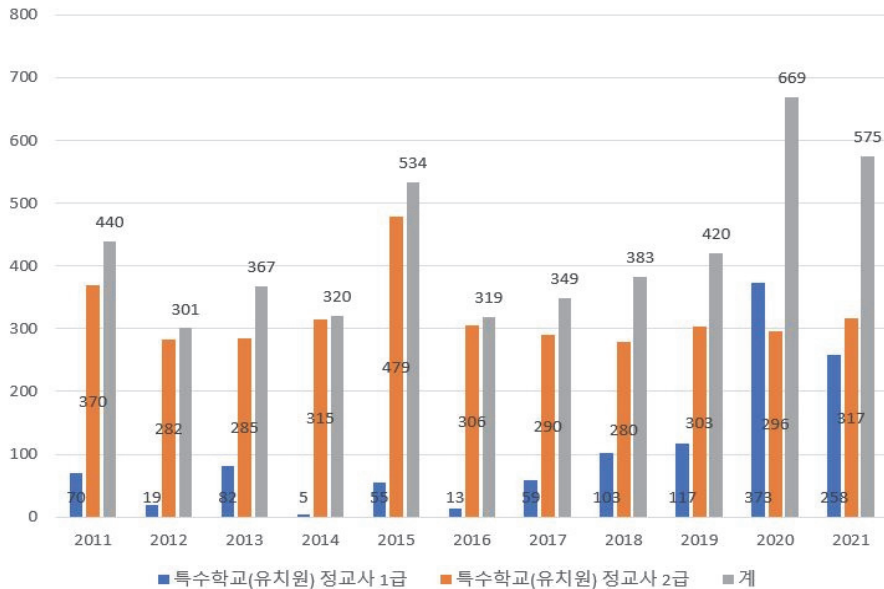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특수학교(유치원)<br>정교사 1급 | 70   | 19   | 82   | 5    | 55   | 13   | 59   | 103  | 117  | 373  | 258  |
| 특수학교(유치원)<br>정교사 2급 | 370  | 282  | 285  | 315  | 479  | 306  | 290  | 280  | 303  | 296  | 317  |
| 계                   | 440  | 301  | 367  | 320  | 534  | 319  | 349  | 383  | 420  | 669  | 575  |

주: 2021년의 경우 '21.12.1.기준임.

자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021a).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2011-2021년). NEIS 추출 내부 자료.

[그림 II-3-1]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2011~2021년)



주: <표 II-2-14>를 도식화 함.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합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지원자 수도 그만큼 증가하여 합격하지 않은 인원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현황(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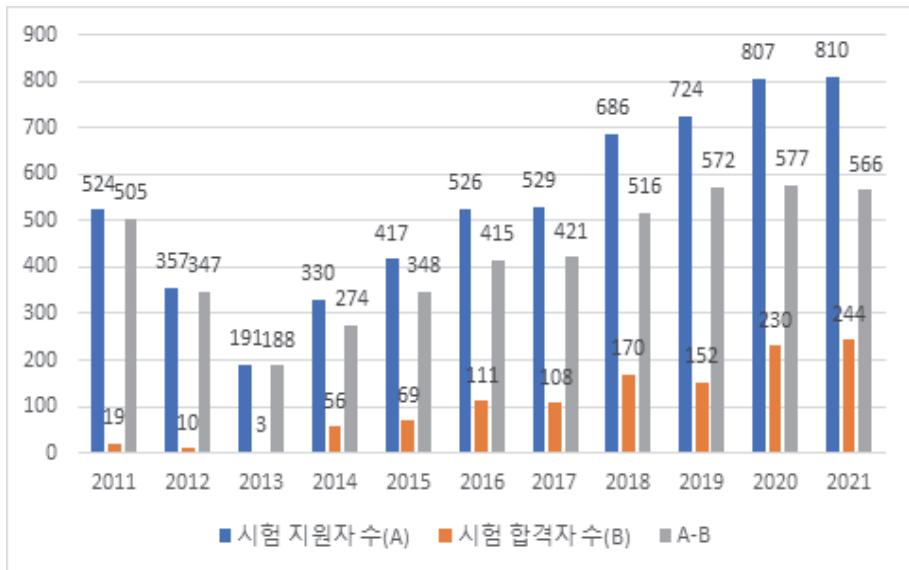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지원자 수(A) | 524  | 357  | 191  | 330  | 417  | 526  | 529  | 686  | 724  | 807  | 810  |
| 합격자 수(B) | 19   | 10   | 3    | 56   | 69   | 111  | 108  | 170  | 152  | 230  | 244  |
| A-B      | 505  | 347  | 188  | 274  | 348  | 415  | 421  | 516  | 572  | 577  | 566  |

주: 2021년의 경우 '21.12.1.기준임.

자료: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2021b).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현황(2011~2021년). NEIS 추출 내부 자료.

[그림 II-3-2]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지원 및 합격 현황(2011-2021년)



주: <표 II-2-14>를 도식화 함.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를 살펴보면, 유아 특수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 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교사 전체(유특교사 제외) 수는 '20년 910명에서 '21년 1,121명으로 23.1% 증가하였다.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전체 수도 '20년 200명에서 '21년 260명으로 35.0% 증가하였다.

<표 II-3-3>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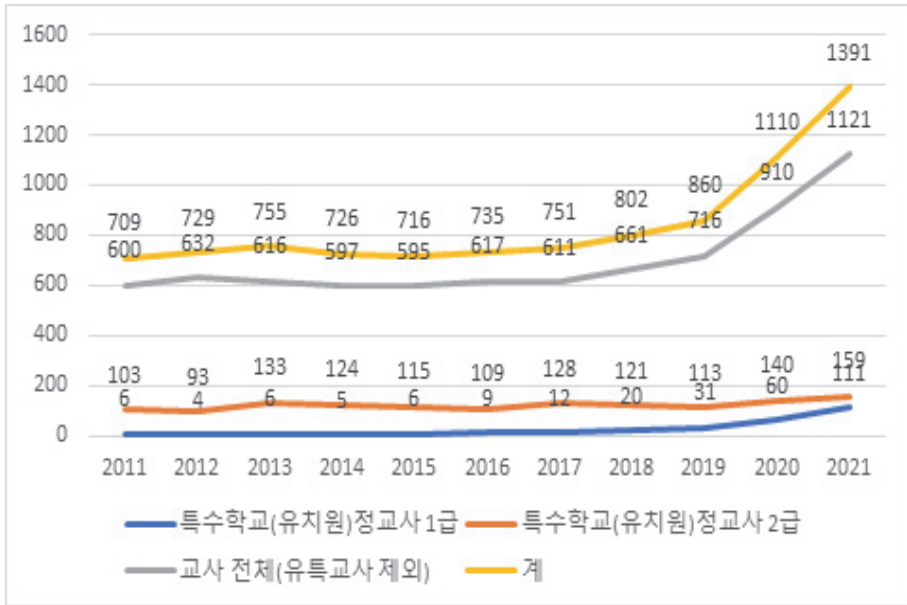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 6    | 4    | 6    | 5    | 6    | 9    | 12   | 20   | 31   | 60    | 111   |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 103  | 93   | 133  | 124  | 115  | 109  | 128  | 121  | 113  | 140   | 159   |
| 교사 전체            | 600  | 632  | 616  | 597  | 595  | 617  | 611  | 661  | 716  | 910   | 1,121 |
| 계                | 709  | 729  | 755  | 726  | 716  | 735  | 751  | 802  | 860  | 1,110 | 1,391 |

주: 교사 전체는 유아특수교사를 제외한 초등특수, 중등특수, 재활복지(2017이후 없어짐), 치료교육, 직업, 의료, 일반 등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21).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특수교육통계 2011-2021년).

[그림 II-3-3]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2011-2021년)



주: <표 II-2-15>를 도식화 함.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 부산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수가 재직 중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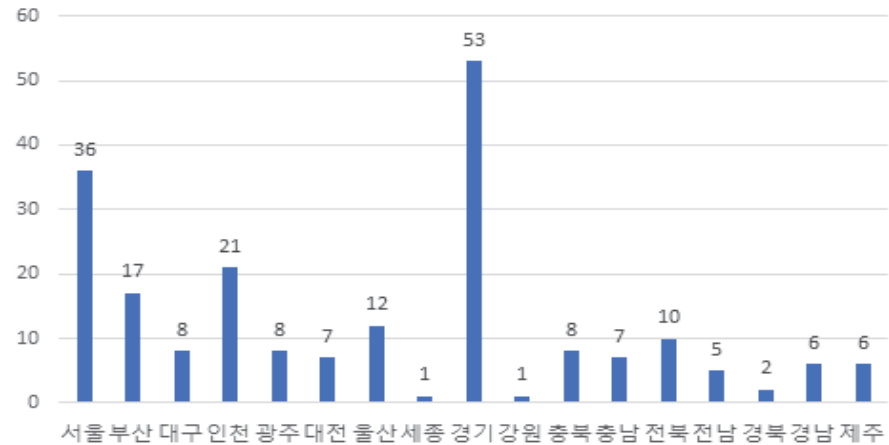
<표 II-3-4>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수(2021년)

단위: 명

| 지역 | 교사 수 | 지역 | 교사 수 |
|----|------|----|------|
| 서울 | 36   | 강원 | 2    |
| 부산 | 20   | 충북 | 18   |
| 대구 | 6    | 충남 | 10   |
| 인천 | 31   | 전북 | 18   |
| 광주 | 11   | 전남 | 4    |
| 대전 | 9    | 경북 | 2    |
| 울산 | 13   | 경남 | 14   |
| 세종 | 3    | 제주 | 9    |
| 경기 | 68   | 계  | 274  |

자료: 교육부(2021b). 특수교육통계.

[그림 II-3-4]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수(2020년)



주: <표 II-2-16>을 도식화함.

현재 일반학급에 입급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수를 근거로 부족한 유아특수교사의 수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7,566명의 유아 중 경기지역 7명은 사립유치원 2기관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고 그 외의 대상 유아는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1,826명의 유아를 교사 1인당 4명의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457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계산하면 467명으로 10여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467명은 산술적인 계산을 통한 최소 부족 인원이다. 시도별 격차도 고려한다면, 각 기관에 배치된 정확한 유아 수에 따라 부족한 교사 수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는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순회교사제도가 아닌 특수학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측한 결과이다. 순회교육지원은 특수학급지원에 비해 교육시간 등의 측면에서 교육의 질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표 II-3-5> 2021년 공사립 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와 필요한 특수교사 수

| 시도 | 특수학급 대상자 수<br>(특수교육대상자 수) | 공립유치원(일반학급) |          | 사립유치원(일반학급) |          |
|----|---------------------------|-------------|----------|-------------|----------|
|    |                           | 대상자 수       | 부족한 교사 수 | 대상자 수       | 부족한 교사 수 |
| 서울 | 823                       | 22          | 6        | 63          | 16       |
| 부산 | 582                       | 79          | 20       | 204         | 51       |

| 시도                | 특수학급 대상자 수<br>(특수교육대상자 수) | 공립유치원(일반학급) |          | 사립유치원(일반학급) |          |
|-------------------|---------------------------|-------------|----------|-------------|----------|
|                   |                           | 대상자 수       | 부족한 교사 수 | 대상자 수       | 부족한 교사 수 |
| 대구                | 399                       | 66          | 17       | 156         | 39       |
| 인천                | 563                       | 65          | 17       | 148         | 37       |
| 광주                | 180                       | 12          | 3        | 46          | 12       |
| 대전                | 285                       | 27          | 7        | 20          | 5        |
| 울산                | 220                       | 30          | 8        | 27          | 7        |
| 세종                | 137                       | 7           | 2        | -           | -        |
| 경기                | 1,910                     | 114         | 29       | 97          | 25       |
| 강원                | 186                       | 30          | 8        | 8           | 2        |
| 충북                | 366                       | 48          | 12       | 13          | 4        |
| 충남                | 438                       | 38          | 10       | 26          | 7        |
| 전북                | 342                       | 47          | 12       | 55          | 14       |
| 전남                | 208                       | 27          | 7        | 8           | 2        |
| 경북                | 315                       | 65          | 17       | 94          | 24       |
| 경남                | 456                       | 78          | 20       | 64          | 16       |
| 제주                | 156                       | 19          | 5        | 23          | 6        |
| 계                 | 7,566                     | 774         | 200      | 1,052       | 267      |
| 일반학급 배치 유아 수      |                           |             |          |             | 1,826    |
| 일반학급 필요 유아특수 교사 수 |                           |             |          |             | 467      |

주: 1)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에 2명 특수학급 입급 교사급여는 기관 자체 지급

2)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장애영아 포함

자료: 교육부(2021a). 202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8896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302&opType=N>

〈표 II-3-6〉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
| 발급 현황 | 958  | 1,709 | 1,928 | 2,786 | 4,827 | 11,034 | 23,242 |

주: 1) 기준일자: 2015.7.1.~2020.12.31.

2)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업무 시작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표 II-3-7〉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지역 | 발급 현황 | 지역 | 발급 현황 |
|----|-------|----|-------|
| 서울 | 4,255 | 강원 | 470   |
| 부산 | 1,155 | 충북 | 482   |
| 대구 | 1,128 | 충남 | 761   |
| 인천 | 1,607 | 전북 | 476   |

| 지역 | 발급 현황 | 지역 | 발급 현황  |
|----|-------|----|--------|
| 광주 | 424   | 전남 | 581    |
| 대전 | 500   | 경북 | 1,062  |
| 울산 | 728   | 경남 | 1,417  |
| 세종 | 185   | 제주 | 384    |
| 경기 | 7,627 | 계  | 23,2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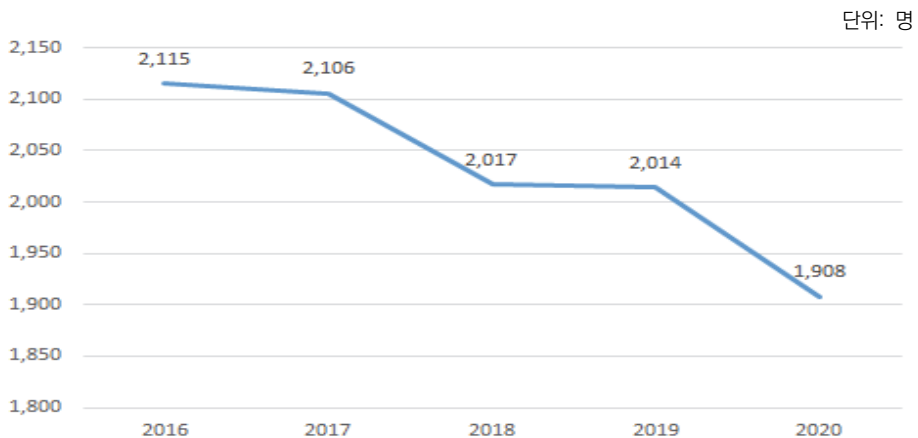
주: 1) 기준일자: 2015.7.1.~2020.12.31.

2) 지역은 자격확인서 수령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0b).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보건복지부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육통계에 따른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40 재인용). 2011년 2,115명에서 2020년 1,908명으로 5년 동안 약 200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40 재인용). 특수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아전 문 및 통합 어린이집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반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수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박창현, 2021: 40 재인용).

[그림 II-3-5] 2016년~2020년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1. 재인용

(원자료: 1) 2016년: 보건복지부(2017). 2016년 보육통계.

2) 2017년: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3) 2018년: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보육통계.

4) 2019년: 보건복지부(2020b). 2019 보육통계.

5) 2020년: 보건복지부(2021b). 2020년 보육통계.)

〈표 II-3-8〉 2021년 특수보육 어린이집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2021. 8. 기준)

단위: 명

| 구분         | 기관 수  | 필요인원  | 배치인원 |     |     | 부족인원             |                  |
|------------|-------|-------|------|-----|-----|------------------|------------------|
|            |       |       | 계    | 유특  | 특례  | 기관 수             | 교사 수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178   | 681   | 461  | 186 | 275 | △119<br>(△66.9%) | △266<br>(△39.1%) |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1,291 | 553   | 339  | 103 | 236 | △289<br>(△22.4%) | △322<br>(△58.2%) |
| 계          | 1,469 | 1,234 | 800  | 289 | 511 | △408<br>(△27.8%) | △588<br>(△47.6%) |

주: 부족인원 계산시 필요인원보다 더 많이 보유한 시설 인력은 제외하고 부족한 기관의 교사수만 합하여 계산함(예: A기관 1명 초과, B기관 1명 부족 ⇒ 부족인원 1명).

자료: 보건복지부(2021d). 2021년 특수보육 어린이집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2021. 8. 기준). 교육부 공유 자료.

〈표 II-3-9〉 시도별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      |      |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      |      |      |
|----|------------|------|------|------|------|------------|------|------|------|------|
|    | 기관수        | 필요인원 | 배치인원 | 부족인원 |      | 기관 수       | 필요인원 | 배치인원 | 부족인원 |      |
|    |            |      |      | 기관 수 | 교사 수 |            |      |      | 기관 수 | 교사 수 |
| 계  | 178        | 681  | 461  | △119 | △266 | 1,291      | 553  | 339  | △289 | △322 |
| 서울 | 8          | 23   | 25   | △3   | △6   | 402        | 192  | 131  | △97  | △102 |
| 부산 | 16         | 67   | 31   | △12  | △38  | 62         | 18   | 15   | △11  | △11  |
| 대구 | 17         | 89   | 50   | △14  | △41  | 9          | 8    | 7    | △3   | △4   |
| 인천 | 6          | 17   | 9    | △5   | △10  | 93         | 50   | 22   | △32  | △34  |
| 광주 | 11         | 48   | 55   | △3   | △5   | 2          | 2    | 3    | 0    | 0    |
| 대전 | 4          | 10   | 6    | △2   | △4   | 25         | 6    | 4    | △2   | △2   |
| 울산 | 10         | 32   | 20   | △4   | △14  | 18         | 14   | 9    | △5   | △8   |
| 세종 | 1          | 3    | 2    | △1   | △1   | 8          | 3    | 3    | △1   | △2   |
| 경기 | 21         | 83   | 54   | △17  | △32  | 462        | 190  | 117  | △98  | △107 |
| 강원 | 4          | 9    | 3    | △4   | △6   | 24         | 11   | 4    | △8   | △8   |
| 충북 | 7          | 25   | 13   | △5   | △12  | 10         | 4    | 1    | △2   | △3   |
| 충남 | 11         | 37   | 23   | △8   | △16  | 32         | 6    | 3    | △4   | △4   |
| 전북 | 10         | 24   | 23   | △4   | △5   | 9          | 4    | 3    | △1   | △3   |
| 전남 | 13         | 60   | 46   | △9   | △15  | 20         | 3    | 2    | △3   | △3   |
| 경북 | 14         | 67   | 35   | △13  | △32  | 23         | 12   | 3    | △5   | △9   |
| 경남 | 21         | 72   | 61   | △11  | △19  | 31         | 15   | 8    | △7   | △11  |
| 제주 | 4          | 15   | 5    | △4   | △10  | 61         | 15   | 4    | △10  | △11  |

자료: 보건복지부(2021e). 시도별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2021년 5월 말 기준 치료사 배치가능인원 659명 중 563명(85.4%)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치료사가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인건비 지원 조건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충족 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별 배치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 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0〉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현황

| 구분 | 기관 수 | 배치가능인원 | 배치인원 |
|----|------|--------|------|
| 서울 | 8    | 21     | 13   |
| 부산 | 16   | 50     | 52   |
| 대구 | 17   | 77     | 73   |
| 인천 | 6    | 13     | 12   |
| 광주 | 11   | 56     | 47   |
| 대전 | 4    | 10     | 9    |
| 울산 | 10   | 37     | 32   |
| 세종 | 1    | 2      | 2    |
| 경기 | 21   | 71     | 61   |
| 강원 | 4    | 12     | 6    |
| 충북 | 7    | 23     | 15   |
| 충남 | 11   | 28     | 20   |
| 전북 | 10   | 34     | 28   |
| 전남 | 13   | 61     | 58   |
| 경북 | 14   | 81     | 69   |
| 경남 | 21   | 65     | 54   |
| 제주 | 4    | 18     | 12   |
| 계  | 178  | 659    | 563  |

자료: 보건복지부(2021f).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2020년 기준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교사는 총 4,494명이며, 그 중 특수교사의 수는 전국적으로 1,908명이었다(박창현, 2021: 41 재인용).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2,041명이며 그 중 특수교사가 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1,766명 중

699명,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529명 중 특수교사는 190명으로 나타나 그 뒤를 잇고 있다(박창현, 2021: 41 재인용).

〈표 II-3-11〉 2020년 특수보육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현황

단위: 명

| 구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계     |
|-------|-------|--------|---------|-----|----|----|----|-------|
| 장애아전문 | 616   | 1,698  | 67      | 302 | 7  | 0  | -  | 2,690 |
| 장애아통합 | 1,425 | 68     | 74      | 227 | 4  | 2  | 4  | 1,804 |
| 계     | 2,041 | 1,766  | 141     | 529 | 11 | 2  | 4  | 4,494 |

주: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수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1.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38)

〈표 II-3-12〉 2020년 어린이집 유형별 특수교사 현황

단위: 명

| 구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계     |
|------|-----|--------|---------|-----|----|----|----|-------|
| 특수교사 | 951 | 699    | 63      | 190 | 1  | 1  | 3  | 1,9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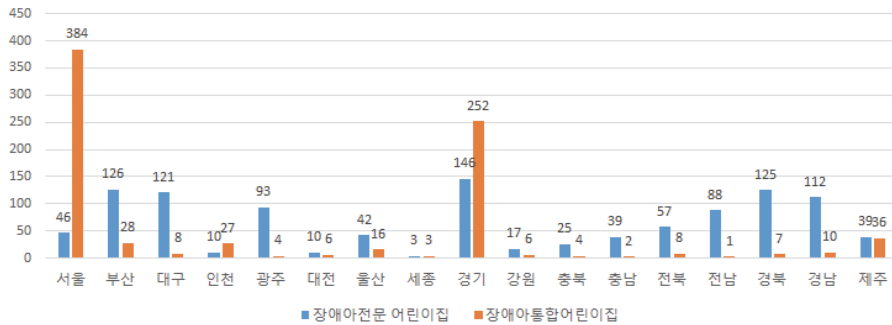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2.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77)

2020년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총 1,099명의 특수교사가 있었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총 802명의 특수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부산(126명), 경북(125명), 대구(121명), 경남(112명), 광주(93명), 전남(88명), 전북(57명), 서울(46명), 울산(42명), 충남 및 제주(39명), 충북(25명), 강원(17명), 인천 및 대전(10명), 세종(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서울이 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242명), 제주(36명), 부산(28명), 경남(10명)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명 미만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박창현, 2021: 42 재인용).

[그림 II-3-6] 2020년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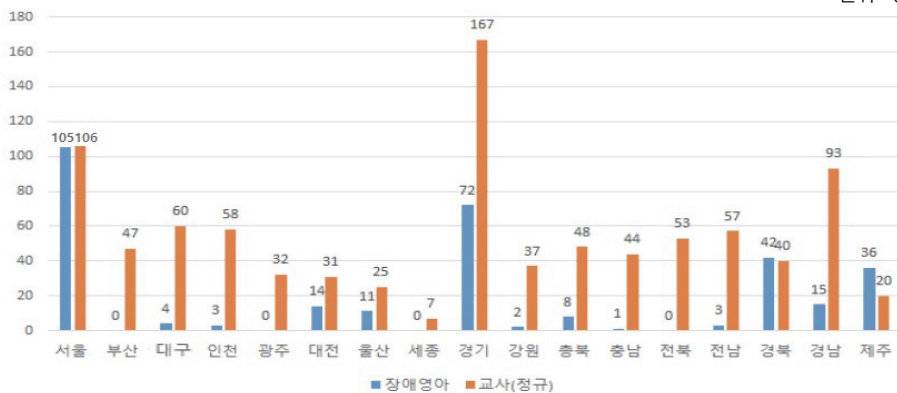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2.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50-152, p. 155-157)

17개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와 교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가 105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나 교사의 수는 106명에 그쳤다.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수는 두 번째로 많은 72명으로 집계되었고, 교사의 수는 167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수는 0명으로 집계되었다(박창현, 2021: 42-43 재인용).

[그림 II-3-7] 2020년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및 교사 수

단위: 명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3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50-152, p. 155-157)

2020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176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1,190개소였다. 그 중 부족한 유아 특수교사 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262명,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375명으로 총 637명이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기관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특수교사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보다 부족한 실정이었다(박창현, 2021: 43 재인용).

〈표 II-3-13〉 2020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보건복지부)

단위: 개소, 명

| 구분    | 기관수   | 교사 자격 현황  |               |               |           |         | 계     | 부족한 특수교사 수 | 치료사 수 |
|-------|-------|-----------|---------------|---------------|-----------|---------|-------|------------|-------|
|       |       | ① 유아 특수교사 | ② 특수교사 인정 수료자 | ③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 ④ 일반 보육교사 | ⑤ 기타 교사 |       |            |       |
| 장애아전문 | 176   | 200       | 297           | 492           | 0         | 384     | 1,373 | 262        | 545   |
| 장애아통합 | 1,190 | 102       | 277           | 725           | 0         | 490     | 1,594 | 375        | 87    |
| 계     | 1,366 | 302       | 574           | 1,217         | 0         | 874     | 2,967 | 637        | 632   |

주: 1) 2020. 8월 말 운영 기준

2) ① 유아 특수교사: '유아정교사 1급', '유아정교사 2급' 인 특수교사

3) ②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4)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5) ④ 일반보육교사(장애아직무교육수료):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아보육 직무교육(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6) ⑤ 기타교사: ① ~ ② + ③ ~ ④에 해당하지 않은 교사(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3에서 재인용

(원자료: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p. 27)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및 배치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통해 볼 수 있다.

〈표 II-3-14〉 2020년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보건복지부)

단위: 명

| 구분 | 장애아동 현황 |       |        |     | 교사 자격 현황  |               |               |           |         |     | 부족한 특수교사 수 |
|----|---------|-------|--------|-----|-----------|---------------|---------------|-----------|---------|-----|------------|
|    | 만0~2세   | 만3~5세 | 만6세 이상 | 계   | ① 유아 특수교사 | ② 특수교사 인정 수료자 | ③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 ④ 일반 보육교사 | ⑤ 기타 교사 | 계   |            |
| 서울 | 16      | 91    | 85     | 192 | 9         | 15            | 8             | 0         | 15      | 47  | 11         |
| 부산 | 30      | 286   | 209    | 525 | 8         | 33            | 32            | 0         | 71      | 144 | 35         |

| 구분 | 장애아동 현황   |           |           |       | 교사 자격 현황            |                            |                            |                     |               |       | 부족한<br>특수<br>교사 수 |
|----|-----------|-----------|-----------|-------|---------------------|----------------------------|----------------------------|---------------------|---------------|-------|-------------------|
|    | 만0~2<br>세 | 만3~5<br>세 | 만6세<br>이상 | 계     | ①<br>유아<br>특수<br>교사 | ②<br>특수<br>교사<br>인정<br>수료자 | ③<br>장애<br>영유아<br>보육<br>교사 | ④<br>일반<br>보육<br>교사 | ⑤<br>기타<br>교사 | 계     |                   |
| 대구 | 55        | 355       | 353       | 763   | 13                  | 38                         | 88                         | 0                   | 42            | 181   | 40                |
| 인천 | 9         | 89        | 9         | 107   | 6                   | 4                          | 22                         | 0                   | 1             | 33    | 5                 |
| 광주 | 35        | 185       | 258       | 478   | 28                  | 24                         | 27                         | 0                   | 21            | 100   | 14                |
| 대전 | 3         | 51        | 40        | 94    | 5                   | 3                          | 12                         | 0                   | 4             | 24    | 3                 |
| 울산 | 4         | 51        | 86        | 141   | 3                   | 4                          | 17                         | 0                   | 6             | 30    | 7                 |
| 세종 | 5         | 18        | 1         | 24    | 3                   | 1                          | 3                          | 0                   | 0             | 7     | 1                 |
| 경기 | 57        | 386       | 171       | 614   | 29                  | 38                         | 39                         | 0                   | 63            | 169   | 26                |
| 강원 | 8         | 50        | 65        | 123   | 2                   | 3                          | 8                          | 0                   | 8             | 21    | 4                 |
| 충북 | 29        | 132       | 40        | 201   | 11                  | 6                          | 23                         | 0                   | 9             | 49    | 10                |
| 충남 | 27        | 214       | 72        | 313   | 18                  | 7                          | 41                         | 0                   | 11            | 77    | 17                |
| 전북 | 17        | 106       | 218       | 341   | 18                  | 9                          | 23                         | 0                   | 9             | 59    | 10                |
| 전남 | 65        | 255       | 191       | 511   | 5                   | 41                         | 34                         | 0                   | 36            | 116   | 17                |
| 경북 | 62        | 352       | 299       | 713   | 13                  | 29                         | 62                         | 0                   | 36            | 140   | 26                |
| 경남 | 44        | 352       | 273       | 669   | 29                  | 36                         | 53                         | 0                   | 35            | 153   | 31                |
| 제주 | 20        | 55        | 52        | 127   | 0                   | 6                          | 0                          | 0                   | 17            | 23    | 5                 |
| 전체 | 486       | 3,028     | 2,422     | 5,936 | 200                 | 297                        | 492                        | 0                   | 384           | 1,373 | 262               |

주: 1) 2020. 8월 말 운영 기준

2) ① 유아 특수교사: '유아정교사 1급', '유아정교사 2급' 인 특수교사

3) ②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4)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5) ④ 일반보육교사(장애아직무교육수료):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아보육 직무교육(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6) ⑤ 기타교사: ① ~ ② + ③ ~ ④에 해당하지 않은 교사(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4에서 재인용

(원자료: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p. 28)

〈표 II-3-15〉 2020년 시도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보건복지부)

단위: 명

| 구분 | 장애아동 현황   |           |           |       | 교사 자격 현황            |                            |                            |                     |               |     | 부족한<br>특수<br>교사 수 |
|----|-----------|-----------|-----------|-------|---------------------|----------------------------|----------------------------|---------------------|---------------|-----|-------------------|
|    | 만0~2<br>세 | 만3~5<br>세 | 만6세<br>이상 | 계     | ①<br>유아<br>특수<br>교사 | ②<br>특수<br>교사<br>인정<br>수료자 | ③<br>장애<br>영유아<br>보육<br>교사 | ④<br>일반<br>보육<br>교사 | ⑤<br>기타<br>교사 | 계   |                   |
| 서울 | 63        | 1,531     | 111       | 1,705 | 45                  | 124                        | 177                        | 0                   | 227           | 573 | 134               |
| 부산 | 10        | 156       | 4         | 170   | 2                   | 13                         | 22                         | 0                   | 16            | 53  | 20                |
| 대구 | 8         | 59        | 11        | 78    | 0                   | 8                          | 13                         | 0                   | 2             | 23  | 8                 |
| 인천 | 24        | 395       | 15        | 434   | 4                   | 15                         | 106                        | 0                   | 17            | 142 | 33                |
| 광주 | 0         | 13        | 0         | 13    | 1                   | 2                          | 0                          | 0                   | 1             | 4   | 1                 |

| 구분 | 장애아동 현황   |           |           |       | 교사 자격 현황            |                            |                            |                     |               |       | 부족한<br>특수<br>교사 수 |
|----|-----------|-----------|-----------|-------|---------------------|----------------------------|----------------------------|---------------------|---------------|-------|-------------------|
|    | 만0~2<br>세 | 만3~5<br>세 | 만6세<br>이상 | 계     | ①<br>유아<br>특수<br>교사 | ②<br>특수<br>교사<br>인정<br>수료자 | ③<br>장애<br>영유아<br>보육<br>교사 | ④<br>일반<br>보육<br>교사 | ⑤<br>기타<br>교사 | 계     |                   |
| 대전 | 6         | 41        | 10        | 57    | 0                   | 1                          | 11                         | 0                   | 4             | 16    | 2                 |
| 울산 | 4         | 94        | 5         | 103   | 1                   | 8                          | 15                         | 0                   | 9             | 33    | 13                |
| 세종 | 6         | 14        | 0         | 20    | 0                   | 1                          | 1                          | 0                   | 4             | 6     | 2                 |
| 경기 | 81        | 1,547     | 73        | 1701  | 36                  | 82                         | 284                        | 0                   | 156           | 558   | 119               |
| 강원 | 6         | 65        | 3         | 74    | 1                   | 6                          | 13                         | 0                   | 2             | 22    | 2                 |
| 충북 | 2         | 23        | 1         | 26    | 1                   | 1                          | 5                          | 0                   | 2             | 9     | 2                 |
| 충남 | 5         | 47        | 2         | 54    | 0                   | 1                          | 13                         | 0                   | 3             | 17    | 3                 |
| 전북 | 7         | 36        | 19        | 62    | 6                   | 2                          | 5                          | 0                   | 1             | 14    | 3                 |
| 전남 | 3         | 36        | 1         | 40    | 1                   | 2                          | 6                          | 0                   | 4             | 13    | 3                 |
| 경북 | 9         | 80        | 3         | 92    | 1                   | 2                          | 17                         | 0                   | 8             | 28    | 7                 |
| 경남 | 7         | 113       | 7         | 127   | 3                   | 5                          | 27                         | 0                   | 7             | 42    | 14                |
| 제주 | 7         | 126       | 1         | 134   | 0                   | 4                          | 10                         | 0                   | 27            | 41    | 9                 |
| 전체 | 248       | 4,376     | 266       | 4,890 | 102                 | 277                        | 725                        | 0                   | 490           | 1,594 | 375               |

주: 1) 2020. 8월 말 운영 기준

2) ① 유아 특수교사: '유아정교사 1급', '유아정교사 2급' 인 특수교사

3) ②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4)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5) ④ 일반보육교사(장애아직무교육수료):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아보육 직무교육(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6) ⑤ 기타교사 : ① ~ ② + ③ ~ ④에 해당하지 않은 교사(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5에서 재인용

(원자료: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p. 29)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업무를 시작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9,157건에 이른다. 2018년은 전년도인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1.4배,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 약 1.7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46 재인용).

〈표 II-3-16〉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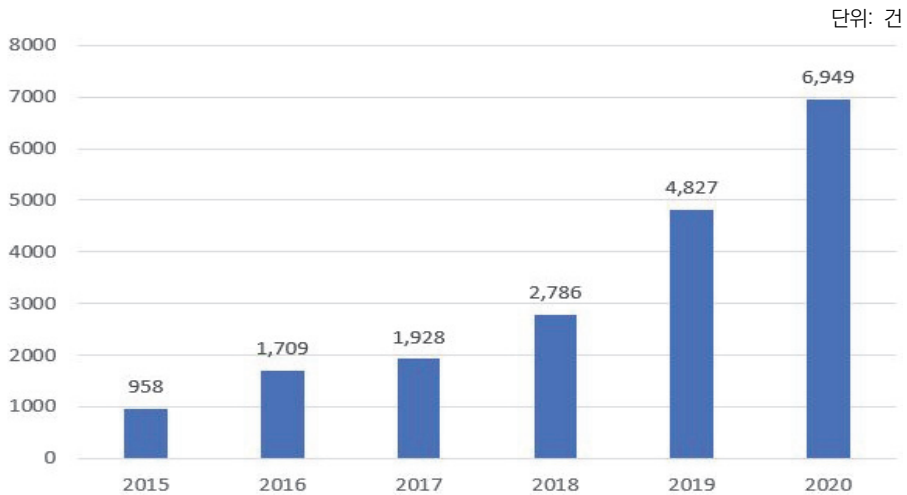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총 계    |
|-------|------|-------|-------|-------|-------|-------|--------|
| 발급 현황 | 958  | 1,709 | 1,928 | 2,786 | 4,827 | 6,949 | 19,157 |

주: 1) 기준일자: 2015.7.1.~2020.8.31.

2)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업무 시작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6에서 재인용

[그림 II-3-8]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주: <표 II-2-23>을 도식화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6에서 재인용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5,7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이 3,376건이었다. 발급 현황이 1,000건 대인 지역은 인천, 경남, 대구, 부산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제주(248건), 광주(378건), 강원(398건)은 발급 현황 수가 적었다(박창현, 2021: 47 재인용).

<표 II-3-17>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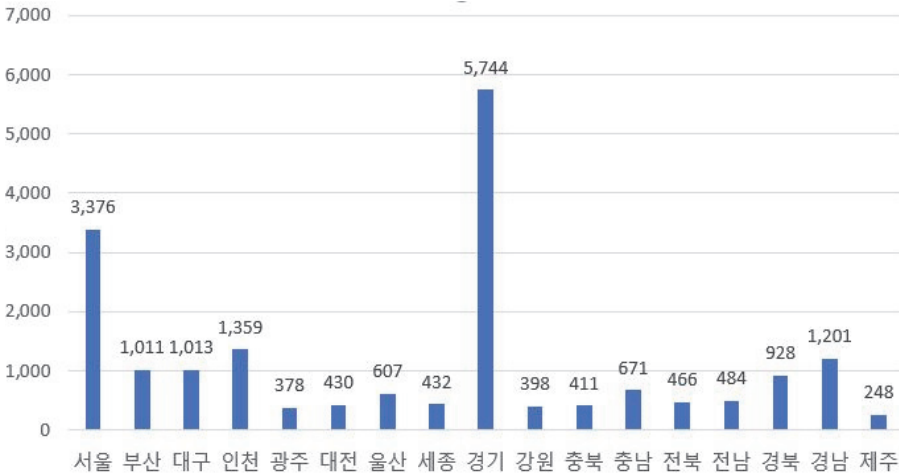
단위: 건

| 지역 | 발급 현황 | 지역 | 발급 현황  |
|----|-------|----|--------|
| 서울 | 3,376 | 강원 | 398    |
| 부산 | 1,011 | 충북 | 411    |
| 대구 | 1,013 | 충남 | 671    |
| 인천 | 1,359 | 전북 | 466    |
| 광주 | 378   | 전남 | 484    |
| 대전 | 430   | 경북 | 928    |
| 울산 | 607   | 경남 | 1,201  |
| 세종 | 432   | 제주 | 248    |
| 경기 | 5,744 | 계  | 19,157 |

주: 1) 기준일자: 2015.7.1.~2020.8.31.  
 2) 지역은 자격확인서 수령지 기준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7에서 재인용  
 (원자료: 박창현 외(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p. 30)

[그림 II-3-9]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2016-2020.9)

단위: 건



주: &lt;표 II-2-24&gt;를 도식화함.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47에서 재인용

(원자료: 박창현 외(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p.31)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 및 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421명)부터 2020년(1,120명)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016년(252명)부터 2020년(4,076명)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51 재인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수의 경우, 2020년 기준 대구(147명), 경북(128명), 경남(12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48 재인용).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 재직 수의 경우, 2020년 기준 경기도가 1,738명으로 전년도(366명) 대비 약 1,300명 넘게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많은 수를 유지하였고, 서울도 전년도(291명) 대비 약 1,000명이 증가하여 1,293명, 인천도 전년도(112명) 대비 250명이 증가하여 366명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위치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48 재인용). 한편 광주의 경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는 최근 5년 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48 재인용).

종합해 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상도 지역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수도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가 최근 5년 연속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창현, 2021: 48 재인용).

〈표 II-3-18〉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2016-2020년)

단위: 명

| 구분 | 2016      |           |    |     | 2017      |           |     |       | 2018      |           |     |       |
|----|-----------|-----------|----|-----|-----------|-----------|-----|-------|-----------|-----------|-----|-------|
|    | 장애아<br>전문 | 장애아<br>통합 | 기타 | 계   | 장애아<br>전문 | 장애아<br>통합 | 기타  | 계     | 장애아<br>전문 | 장애아<br>통합 | 기타  | 계     |
| 서울 | 9         | 64        | 9  | 82  | 13        | 143       | 46  | 202   | 18        | 204       | 98  | 320   |
| 부산 | 36        | 13        | 2  | 51  | 50        | 22        | 9   | 81    | 58        | 29        | 18  | 105   |
| 대구 | 63        | 5         | 1  | 69  | 89        | 18        | 8   | 115   | 113       | 22        | 19  | 154   |
| 인천 | 4         | 19        | 6  | 29  | 11        | 34        | 16  | 61    | 15        | 72        | 34  | 121   |
| 광주 | 46        | 0         | 0  | 46  | 63        | 0         | 3   | 66    | 73        | 0         | 7   | 80    |
| 대전 | 9         | 7         | 5  | 21  | 12        | 12        | 6   | 30    | 19        | 17        | 10  | 46    |
| 울산 | 29        | 2         | 2  | 33  | 49        | 5         | 8   | 62    | 71        | 13        | 13  | 97    |
| 세종 | 0         | 0         | 1  | 1   | 2         | 0         | 4   | 6     | 5         | 0         | 10  | 15    |
| 경기 | 21        | 118       | 21 | 160 | 44        | 202       | 63  | 309   | 53        | 270       | 145 | 468   |
| 강원 | 17        | 5         | 2  | 24  | 20        | 7         | 6   | 33    | 24        | 12        | 14  | 50    |
| 충북 | 21        | 2         | 3  | 26  | 30        | 2         | 1   | 33    | 43        | 4         | 11  | 58    |
| 충남 | 20        | 2         | 2  | 24  | 44        | 7         | 2   | 53    | 53        | 14        | 6   | 73    |
| 전북 | 14        | 8         | 1  | 23  | 34        | 10        | 3   | 47    | 43        | 8         | 10  | 61    |
| 전남 | 52        | 3         | 4  | 59  | 62        | 4         | 7   | 73    | 74        | 7         | 12  | 93    |
| 경북 | 29        | 3         | 7  | 39  | 43        | 15        | 11  | 69    | 75        | 23        | 36  | 134   |
| 경남 | 51        | 1         | 8  | 60  | 72        | 11        | 16  | 99    | 76        | 16        | 26  | 118   |
| 제주 | 0         | 0         | 0  | 0   | 0         | 2         | 4   | 6     | 1         | 9         | 5   | 15    |
| 계  | 421       | 252       | 74 | 747 | 638       | 494       | 213 | 1,345 | 814       | 720       | 474 | 2,008 |

| 구분 | 2019  |       |     |       | 2020  |       |       |       |
|----|-------|-------|-----|-------|-------|-------|-------|-------|
|    | 장애이전문 | 장애이통합 | 기타  | 계     | 장애이전문 | 장애이통합 | 기타    | 계     |
| 서울 | 17    | 291   | 180 | 488   | 23    | 1,293 | 373   | 1,689 |
| 부산 | 56    | 33    | 44  | 133   | 58    | 107   | 102   | 267   |
| 대구 | 138   | 37    | 33  | 208   | 147   | 54    | 79    | 280   |
| 인천 | 24    | 112   | 72  | 208   | 33    | 366   | 147   | 546   |
| 광주 | 82    | 0     | 12  | 94    | 79    | 0     | 37    | 116   |
| 대전 | 21    | 18    | 27  | 66    | 24    | 28    | 43    | 95    |
| 울산 | 71    | 51    | 22  | 144   | 92    | 118   | 38    | 248   |
| 세종 | 2     | 2     | 15  | 19    | 5     | 15    | 38    | 58    |
| 경기 | 80    | 366   | 230 | 676   | 90    | 1,738 | 597   | 2,425 |
| 강원 | 20    | 21    | 25  | 66    | 25    | 48    | 55    | 128   |
| 충북 | 41    | 8     | 20  | 69    | 52    | 15    | 55    | 122   |
| 충남 | 69    | 18    | 36  | 123   | 69    | 34    | 75    | 178   |
| 전북 | 52    | 17    | 19  | 88    | 60    | 20    | 39    | 119   |
| 전남 | 79    | 5     | 16  | 100   | 100   | 22    | 29    | 151   |
| 경북 | 87    | 27    | 53  | 167   | 128   | 37    | 96    | 261   |
| 경남 | 104   | 38    | 52  | 194   | 124   | 76    | 136   | 336   |
| 제주 | 2     | 9     | 6   | 17    | 11    | 105   | 16    | 132   |
| 계  | 945   | 1,053 | 862 | 2,860 | 1,120 | 4,076 | 1,955 | 7,151 |

주: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가지고 재원 중인 직원 '보육교사' 인 보육교직원 수  
2) 기타: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교사 수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p. 49-50에서 재인용  
(원자료: 박창현 외(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력 양성체계 개편 방안. pp. 32-22)

## 4. 장애영유아 지원 현황

### 1) 특수교육 지원 현황

2020년도 특수교육 관련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3조 726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 560억, 국립 특수학급 예산 54억으로 총 3조 1,340억원이었다(박창현 외, 2021: 56 재인용).

〈표 II-4-1〉 2020년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천원

| 구분 | 인건비       | 교급당<br>운영비 | 시설비     | 자산<br>취득비 | 연수비   | 기타     | 소계        |
|----|-----------|------------|---------|-----------|-------|--------|-----------|
| 시도 | 1,712,130 | 900,729    | 340,300 | 56,369    | 8,963 | 54,079 | 3,072,570 |
| 국립 | 특수학교      | 33,969     | 12,762  | 8,567     | 570   | 114    | 56,050    |
|    | 특수학급      | 2,160      | 1,699   | 1,560     | 1,950 | 4      | 5,424     |
| 계  | 1,748,259 | 915,190    | 350,427 | 58,889    | 9,081 | 54,147 | 3,134,044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56. 재인용  
(원자료: 교육부(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15)

2020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2,845천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에 비해 740천원 증가하였다(박창현, 2021: 56 재인용).

〈표 II-4-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원, 명

| 연도   | 특수교육비     | 수혜 학생 수 | 1인당 특수교육비 |
|------|-----------|---------|-----------|
| 2016 | 2,376,062 | 87,950  | 27,016    |
| 2017 | 2,653,498 | 89,353  | 29,697    |
| 2018 | 2,759,503 | 90,780  | 30,398    |
| 2019 | 2,984,448 | 92,958  | 32,105    |
| 2020 | 3,134,044 | 95,420  | 32,845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56.  
(원자료: 교육부(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15)

2020년 기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은 1인 월 교육비 최고 지원액 평균은 공립유치원 135.6천 원, 사립유치원 371.1천

원으로, 공립유치원 4,605명, 사립유치원 1,002명으로 총 5,607명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57 재인용).

〈표 II-4-3〉 2020년 공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 | 공립유치원 |             | 사립유치원 |             |
|----|-------|-------------|-------|-------------|
|    | 대상자 수 | 1인 최고지원액(월) | 대상자 수 | 1인 최고지원액(월) |
| 서울 | 428   | 196         | 57    | 474         |
| 부산 | 218   | 110         | 202   | 361         |
| 대구 | 187   | 110         | 134   | 361         |
| 인천 | 343   | 110         | 117   | 361         |
| 광주 | 90    | 110         | 35    | 400         |
| 대전 | 22    | 110         | 30    | 361         |
| 울산 | 142   | 110         | 24    | 380         |
| 세종 | 90    | 250         | -     | -           |
| 경기 | 1303  | 110         | 104   | 361         |
| 강원 | 131   | 110         | 9     | 361         |
| 충북 | 246   | 110         | 14    | 437         |
| 충남 | 34    | 110         | 22    | 488         |
| 전북 | 173   | 90          | 61    | 361         |
| 전남 | 171   | 210         | 5     | 361         |
| 경북 | 166   | 110         | 91    | 381         |
| 경남 | 295   | 140         | 69    | 451         |
| 제주 | 56    | 210         | 28    | 410         |
| 계  | 4,605 | 135.6       | 1,002 | 371.1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57 재인용  
(원자료: 교육부(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창현, 2021: 58 재인용). 2020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지원 운영경비는 유치원 38,470원, 초등학교 28,581천원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57,265천원, 초등학교는 54,499천원으로 나타났다(박창현, 2021: 58 재인용).

〈표 II-4-4〉 2020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 시도 | 유치원    |        | 초등학교   |        |
|----|--------|--------|--------|--------|
|    | 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 서울 | 39,370 | 46,862 | 20,323 | 60,323 |
| 부산 | 41,668 | 70,811 | 25,027 | 55,300 |
| 대구 | 33,906 | 58,906 | 26,516 | 51,516 |
| 인천 | 29,494 | 35,843 | 16,370 | 57,989 |
| 광주 | 42,850 | 65,398 | 25,397 | 85,548 |
| 대전 | 32,381 | 52,381 | 24,391 | 44,391 |
| 울산 | 32,210 | 51,710 | 26,494 | 44,275 |
| 세종 | 36,662 | 46,662 | 40,335 | 50,335 |
| 경기 | 35,717 | 57,572 | 47,529 | 69,385 |
| 강원 | 18,064 | 43,064 | 22,120 | 47,120 |
| 충북 | 20,523 | 60,523 | 21,847 | 66,347 |
| 충남 | 46,430 | 51,430 | 43,913 | 48,913 |
| 전북 | 42,929 | 73,929 | 34,063 | 65,063 |
| 전남 | 42,925 | 57,925 | 35,363 | 50,363 |
| 경북 | 36,120 | 51,021 | 21,021 | 36,450 |
| 경남 | 61,488 | 81,488 | 30,012 | 50,012 |
| 제주 | 61,251 | 67,981 | 25,149 | 44,860 |
| 평균 | 38,470 | 57,265 | 28,581 | 54,599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58 재인용  
(원자료: 교육부(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13)

## 2) 어린이집 지원 현황

〈표 II-4-5〉 2020년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 지원 현황

| 구분          | 지원액                                                                                                                                                                                                                                                                                                                                                                                                                                                                                                                                                                                                      |
|-------------|----------------------------------------------------------------------------------------------------------------------------------------------------------------------------------------------------------------------------------------------------------------------------------------------------------------------------------------------------------------------------------------------------------------------------------------------------------------------------------------------------------------------------------------------------------------------------------------------------------|
| 장애아 보육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02,000원</li> <li>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li> </ul>                                                                                                                                                                                                                                                                                                                                                                                                     |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51,000원)(국비+지방비)</li> <li>※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li> </ul> </li> <li>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li> </ul> </li> <li>방학기간 기본·연장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li> </ul> |

| 구분             | 지원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li> <li>※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li> </ul>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li> <li>지원단가: 4,200원</li> <li>지원한도액: 252,000원</li> <li>지원율: 기준액×100%</li> </ul>                                                                                                                                                                                  |
|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li> <li>-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li> <li>-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반교사 포함): 10만원</li> <li>-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li> <li>• 치료사 수당: 30만원</li> </ul>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li> <li>- 지원단가: 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li> <li>-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li> </ul>                                                                                                                                            |
| 기관 보육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제외(인건비 지원)</li> <li>- 장애아 1인당 장애아반 587천원/ 장애아 방과후반 500천원 지원</li> </ul>                                                                                                   |
| 차량운영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li> </ul> </li> <li>•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을 지원</li> </ul> </li> </ul> |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p. 58-59.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사업안내)

〈표 II-4-6〉 2020년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 구분                                    | 지정 주체     | 인건비지원<br>(교사 1인)                   | 보육료 지원<br>(장애아 1인) |
|---------------------------------------|-----------|------------------------------------|--------------------|
|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           |                                    |                    |
|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80%                                | 502천원              |
|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                                  | 502천원              |
|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           |                                    |                    |
| - 인건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 | 80%<br>(국공립·법인)<br>169.3만원<br>(민간) | 502천원              |
|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           |                                    |                    |

| 구분         |                  | 지정 주체 | 인건비지원<br>(교사 1인) | 보육료 지원<br>(장애아 1인) |
|------------|------------------|-------|------------------|--------------------|
| 정부지원<br>시설 | - 1대 3기준(0세반)    |       | 80%              | 470천원              |
|            | - 1대 5기준(1세반)    |       | 80%              | 414천원              |
|            | - 1대 7기준(2세반)    |       | 80%              | 343천원              |
|            | - 1대 15기준(3세반)   |       | 30%              | 260천원              |
|            | - 1대 20기준(4세반이상) |       | 30%              | 260천원              |
| 민간보육<br>시설 | - 1대 3기준(0세반)    |       |                  | 470천원              |
|            | - 1대 5기준(1세반)    |       |                  | 414천원              |
|            | - 1대 7기준(2세반)    |       |                  | 343천원              |
|            | - 1대 15기준(3세반)   |       |                  | 보육료상한액             |
|            | - 1대 20기준(4세반이상) |       |                  | 보육료상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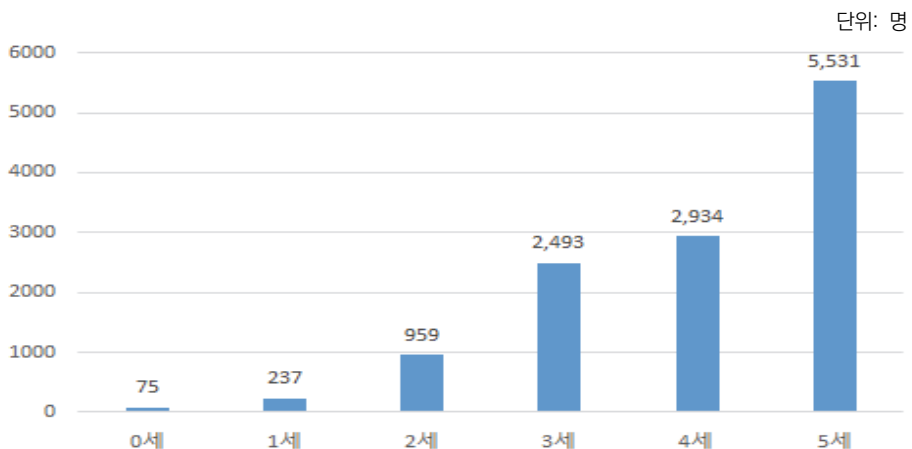
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p. 59-60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 보육사업안내)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총 12,229명이었다(박창현 외, 2021: 60 재인용). 5세 이상이 5,531명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장애영유아의 약 45.2%로 절반에 가까웠다(박창현 외, 2021: 60 재인용). 만 2세 미만은 2.6%로 나타나 만 2세 미만의 장애영아들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박창현 외, 2021: 60 재인용).

[그림 II-4-1] 2020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현황



자료: 박창현 외(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 60 재인용

(원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p. 243)

## 나. 미임용 유아특수교사 진로 현황<sup>3)</sup>

### 1) 어린이집 취업

현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는 800명으로 필요 인원보다 6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21 d). 국공립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재직자는 1,639명으로 어린이집 재직 교사 수보다는 많은 수이나 그 중에는 기간제 교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 수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치원의 특수학급은 대부분 국공립유치원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가 많지 않고 1,800여명이 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속한 일반학급에는 특수교사가 없거나 일주일에 1-2회 정도 순회 특수교사의 지원만 있어 대부분 일반학급의 유치원 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 중 많은 수가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문화에 잘 적응하며 근무하는 교사도 있으나 특수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치원으로 근무지를 옮길 기회를 찾으려 미임용 시기를 갖는 교사도 있다(허선미, 황순영, 2021).

‘원장선생님께서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담당한 장애 유아들이 외부기관의 치료를 받으러 일찍 하원이라도 하면 김선생님, 애들 다 갔는데 다른 반 다니면서 청소라도 돕지...’라고 말씀하세요. 장애 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도 세워야 하고 교재교구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육업무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처음에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기로 한 후 교사등록을 해야하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아오라고 해서 졸업한 대학에 확인도 하고 설명드리느라 교사 등록도 못 할 뻔 했더니깐요. (김교사 2020. 5월 면담. 2019.2. 졸업,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경력 1년 2개월)

‘저희 시는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 없어서 특수교사 수당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지자체 배당된 수당을 특수교사 수만큼 나눠서 주는 거라 (중략) 그런데 그게 다른 교사들이 컴플레인 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눈치가 보이는거예요. 수당을 많이 받으니 좋긴했는데 점점 다른 동료 교사들이 불공평하다고 할까봐 더 열심히 하고 어린이집 행사도 더 나서서 하고 하다 보니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지치는거예요 또 장애 영유아보육교사와도 비교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다른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는 불안감도 좀 있고요. 사실 쉬고 싶어요. 내년엔 쉬려고 해요(최교사 2016. 10월 면담.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경력 3년)

3) 해당 부분은 미임용 유아특수교사의 진로와 취업 현황에 대해 선행연구와 면담 내용

## 2)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준비

미임용된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들은 공립학교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 졸업 후 일이 년, 길게는 5년 이상씩 시험 준비하느라 교육이나 보육 현장 취업을 미루고 있다. 또한 공립유치원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간제 교사로 고용되어 일하더라도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일시적 보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된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다. 기간제 유아특수교사 대부분은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지만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교사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벗어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떠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에 도전하기도 한다(손준중, 2021).

‘처음에는 임용생각 안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들과 근무 조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동기들이 임용시험에 더 많이 합격하기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여기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먼저 합격한 동기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자꾸 임용 치라고 하고...전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티오도 많아지고 하니까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김교사. 2021. 11월 면담 2017. 2. 졸업)

‘유훈교사는 기간제가 많아요. 기간제이지만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희 유치원이 통합교육시범 학교로 지정되어 일년동안 유훈교사 3명에서 진짜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하고 일반교사들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서 결과 발표회까지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결과보고회에 오시고 주변 유치원 교사들도 오시고 (중략) 주임선생님이 바로 전날 자기가 발표하겠다는거예요. 유훈교사들이 다 준비했는데....선생님들은 기간제이니 어차피 점수받아도 필요없잖아요. 그러는거예요. 뺏겼죠. 그리고 두 유훈 선생님이 그만두고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 중이에요.’ (2018. 9. 면담 2016. 2. 졸업. 장교사)

## 3) 출산, 양육 및 건강 상의 이유

대부분이 여성인 유아특수교사는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양육을 위해 휴직이나 은퇴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 중에는 독립이동이나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사가 직접 영유아를 들어서 옮기거나 잡아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몸을 다치거나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 교육이나 보육현장에서 떠나거나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아이가 하나일때는 친정어머니께서 그런대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둘이 되고 보니 어머니도 힘에 부치시고 다른 집 아이들 돌보느라 제 아이는 아침마다 울게 하는 것도 못할 일이고...한때는 어린이집에 데리고 출퇴근도 해봤는데 더 힘들었어요. 일도 집중하기 힘들고 .. 괜찮다고는 하는데 동료들 눈치도 보여서 도저히 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시간제로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요’ (2021. 11. 면담 2015. 2월 졸업. 권교사)

그 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 중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유아 교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임용시험을 치른 후 유아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교사보다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사로서의 성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교사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의 미임용 수를 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5.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 가. 장애아동 관련 통계

본 절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특수교육통계 및 보육통계 등 장애아동 관련 통계의 근거 법령을 고찰한다.

#### 1) 특수교육통계(매년) 및 특수교육 실태조사(3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통계는 매년 작성되고,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진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는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매년 특수교육통계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작성되고 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2021 특수교육통계 조사 지침」의 조사 절차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특수교육통계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초·중 일반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그 결과를 제출

하고,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일반학교 자료를 처리하여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은 각 집계 결과와 자체 자료를 합산 또는 병합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1a: 7).

유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적용되지 않아 유치원 통계 자료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유치원 엑셀파일을 배부하고 자료 집계 후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1a: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사람의 장애유형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구분한다.

〈표 II-5-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통계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 ①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br>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br>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등에 대한<br>특수교육법 시행령<br>제8조(실태조사)         | <p>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li> <li>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li> <li>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li> <li>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li> <li>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li> <li>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li> <li>7. 삭제</li> <li>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li> </ol> <p>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li> <li>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li> <li>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li> <li>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li> <li>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li> </ol> <p>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li> <li>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li> <li>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li> <li>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p> <p>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장애인 등에 대한<br>특수교육법 제15조<br>(특수교육대상자의<br>선정) | <p>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각장애</li> <li>2. 청각장애</li> <li>3. 지적장애</li> <li>4. 지체장애</li> <li>5. 정서·행동장애</li> <li>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li> <li>7. 의사소통장애</li> <li>8. 학습장애</li> <li>9. 건강장애</li> <li>10. 발달지체</li> <li>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li> </ol> <p>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p>                                                                                                                                                                                                                                                                                                                                                                                                                                                                                                                                                                                                                                                                                                                                                                         |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등에 대한<br>특수교육법 제16조<br>(특수교육대상자의<br>선정절차 및 교육<br>지원 내용의 결정) |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br>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 구분      | 내용                                                                                                                                                                                                                                                                                            |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지체장애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br>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br>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br>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br>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br>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구분     | 내용                                                                                                                                                                                      |
|--------|-----------------------------------------------------------------------------------------------------------------------------------------------------------------------------------------|
|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br>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br>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br>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br>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 2) 보육통계(매년), 장애인 등록 현황(매년)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3년)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료로 취약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취약보육에는 장애영유아 보육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보육통계로 구성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사용된다.

보육통계에 나와 있는 장애영유아 관련 통계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현황이며,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과 보육교직원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5-3〉 「영유아보육법」의 보육통계

| 구분                                      | 내용                                                                                                                                                                                                                                                                                                                                                                                                                                                                                                                                                                   |
|-----------------------------------------|----------------------------------------------------------------------------------------------------------------------------------------------------------------------------------------------------------------------------------------------------------------------------------------------------------------------------------------------------------------------------------------------------------------------------------------------------------------------------------------------------------------------------------------------------------------------|
| 영유아보육법<br>제9조의3(보육통합<br>정보시스템<br>구축·운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li> <li>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li> <li>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li> <li>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li> </ol> </li> </ol> |

| 구분                                    | 내용                                                                                                                                                                                                                                                                                                                                                                                                                                                                                                                                                                                                                                                                                                                                         |
|---------------------------------------|--------------------------------------------------------------------------------------------------------------------------------------------------------------------------------------------------------------------------------------------------------------------------------------------------------------------------------------------------------------------------------------------------------------------------------------------------------------------------------------------------------------------------------------------------------------------------------------------------------------------------------------------------------------------------------------------------------------------------------------------|
|                                       | <p>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p> <p>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p> <p>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p> <p>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p> <p>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p> <p>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p> <p>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p> <p>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p> <p>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p> <p>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li> <li>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li> <li>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li> <li>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의 기준에 맞는 장애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등록증이 발급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 등록 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개하

고 있다. 보육통계 및 후술할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는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1조는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2항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다.

「장애인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장애실태조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표 II-5-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구분                             |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br>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br>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br>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br>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 구분                                                 | 내용                                                                                                                                                                                                                                                                                                                                                                                                                                                                                                                                                                                                                                    |
|----------------------------------------------------|---------------------------------------------------------------------------------------------------------------------------------------------------------------------------------------------------------------------------------------------------------------------------------------------------------------------------------------------------------------------------------------------------------------------------------------------------------------------------------------------------------------------------------------------------------------------------------------------------------------------------------------|
|                                                    | <p>② 삭제</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⑦ 삭제</p> <p>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 장애아동<br>복지지원법<br>제11조(장애아동<br>복지지원<br>실태조사)        |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장애아동<br>복지지원법<br>시행령 제2조<br>(장애아동<br>복지지원<br>실태조사) | <p>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li> <li>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li> <li>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li> <li>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
| 장애인복지법<br>제31조(실태조사)                               |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장애인복지법<br>시행령 제18조<br>(실태조사의<br>방법 등)              | <p>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

| 구분                           | 내용                                                                                                                                                                                                                                                                                                                                                                                                                                                                              |
|------------------------------|---------------------------------------------------------------------------------------------------------------------------------------------------------------------------------------------------------------------------------------------------------------------------------------------------------------------------------------------------------------------------------------------------------------------------------------------------------------------------------|
|                              |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br>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br>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br>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유<br>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br>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br>지원상황에 관한 사항<br>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br>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br>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br>9. 가구유형·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br>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장애인복지법<br>시행령 제19조<br>(조사연도) |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br>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br>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 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구분된다.

〈표 II-5-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구분                 | 내용                                                                                                                                                                                                                                                                                                                                                                                                                          |
|--------------------|-----------------------------------------------------------------------------------------------------------------------------------------------------------------------------------------------------------------------------------------------------------------------------------------------------------------------------------------------------------------------------------------------------------------------------|
| 지체장애인<br>(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br>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br>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br>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br>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br>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br>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br>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뇌병변장애인<br>(腦病變障礙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br>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시각장애인<br>(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br>이 0.02 이하인 사람<br>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br>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구분                     | 내용                                                                                                                                                                                                                                                                   |
|------------------------|----------------------------------------------------------------------------------------------------------------------------------------------------------------------------------------------------------------------------------------------------------------------|
|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br>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검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 청각장애인<br>(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br>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br>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br>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언어장애인<br>(言語障礙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지적장애인<br>(知的障礙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 자폐성장애인<br>(自閉性障礙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정신장애인<br>(精神障礙人)       |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br>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br>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 신장장애인<br>(腎臟障礙人)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심장장애인<br>(心臟障礙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호흡기장애인<br>(呼吸器障礙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간장애인<br>(肝障礙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안면장애인<br>(顔面障礙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인<br>(腸瘻·尿瘻障礙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뇌전증장애인<br>(腦電症障礙人)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유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5-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차이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등에 대한<br>특수교육법<br>제15조제1항 | 1. 시각장애<br>2. 청각장애<br>3. 지적장애<br>4. 지체장애<br>5. 정서·행동장애<br>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br>7. 의사소통장애<br>8. 학습장애<br>9. 건강장애<br>10. 발달지체<br>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br>[별표1]         | 1. 지체장애인<br>2. 뇌병변장애인<br>3. 시각장애인<br>4. 청각장애인<br>5. 언어장애인<br>6. 지적장애인<br>7. 자폐성장애인<br>8. 정신장애인<br>9. 신장장애인<br>10. 심장장애인<br>11. 호흡기장애인<br>12. 간장애인<br>13. 안면장애인<br>14. 장루·요루장애인<br>15. 뇌전증장애인 |

### 3) 장애아동 통계 통합

장애아동 통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시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통계(매년)와 특수교육 실태조사(3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통계(매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3년)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지만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거나 기관을 미이용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보호자의 의

무 등)제2항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와 달리 교육부 관할이 아닌 복지부 관할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과 비교하여 동등한 교육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아동 통계의 통합을 통해 기관 유형의 차이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통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유형에 대한 항목의 차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유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만 3-5세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통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영유아 뿐 아니라 다른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유형을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특수교육통계 작성 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칭하는 방법을 장애유형 통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 유형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동일한 장애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매칭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지체장애는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지체장애에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중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건강장애로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정서·행동장애에 매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의사소통장애에 매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유형 중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학습장애와 발달지체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학습장애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는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021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학습장애는 초등학교 이상에서만 선정되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는다(교육부, 2021b: 42).

발달지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발달지체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는 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발달지체는 특정 장애로 진단하기에 불확실하거나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다른 장애 유형이 아니라고 해도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1a: 23).

이런 점에서 학습장애와 발달지체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분류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는 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안면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는 학습이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의 장애유형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을 매칭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5-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매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복지법  |
|-----------------|---------|
| 시각장애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 청각장애    |
| 지적장애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자폐성장애   |
| 지체장애            | 지체장애    |
|                 | 뇌병변 장애  |
| 건강장애            | 신장장애    |
|                 | 심장장애    |
|                 | 호흡기장애   |
|                 | 간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뇌전증장애   |
| 정서·행동장애         | 정신장애    |
| 의사소통장애          | 언어장애    |
| 학습장애            | 없음      |
| 발달지체            | 없음      |
| 없음              | 안면장애    |

그러나 이러한 매칭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유치원에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유아는 1명이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유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

강장애를 가진 유아는 없지만, 뇌전증 장애를 가진 유아는 2명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21b: 42, 55).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통계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 나. 관련 정책

### 1) 기관 이용 별 장애영유아 지원 내용

장애 영유아의 기관 이용은 각 시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유치부에 배치되는 경우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서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서를 제출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5-8〉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와 어린이집의 지원 비교

|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 어린이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급</li> <li>• 방과 후 교육비 지원(영아는 바우처 카드만 해당)</li> <li>•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li> <li>• 치료지원(기관 이용형 및 순회치료교육)</li> <li>• 보조공학기기 대여</li> <li>• 기타 지원 사항</li> <li>•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 대금, 학교급식비 지원(의무)</li> <li>•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공·사립 우유대금 및 사립 교육비(차액분))</li> <li>•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실 및 급식실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명단 통보(*특수교육지원청 별도 지원 항목 다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li> <li>• 종일: (정부지원보육료)502,000원<br/>(기관보육료)587,000원</li> <li>• 방과후: (정부지원보육료)251,000원<br/>(기관보육료)500,000원</li> </ul> <p>※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에게 전자바우처형태 (국민행복카드)로지급</p> |

주: 1) \* 유아는 현장체험학습비 공식지원대상은 아니나, (유아) 특수학교의 교육운영비로 융통성있게 지원하기도 하여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존재함.

자료: 1)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 지원. 공유자료.

2) 어린이집: 경기도 고양특례시청 보육지원팀 (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공유자료.

## 2)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지원

### 가) 지원내용

다음의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청 별로 '해당없음' 항목이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배치될 경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 (1)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급

- 목적: 원활한 통학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 대상: 공·사립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통학거리가 원거리인 학생 및 학부모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금액 관련 공문 확인)
- ※ 선정배치 된 일자부터 출석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2) 방과후교육비 지원(영아는 바우처 카드만 해당)

- 목적: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여 학생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
- 대상: 영아, 공·사립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 단, 신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출석일수가 월 2/3이상 출석한 경우에 지원 가능

#### (3)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목적: 저소득층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학습 기회 확대
- 대상: 공·사립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교장 추천자
- ☞ 유아는 현장체험학습비 공식지원대상은 아니나, (유아) 특수학교의 교육 운영비로 융통성있게 지원하기도 하여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존재함.

#### (4) 치료지원(기관 이용형 및 순회치료교육)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 예방, 교육지원
- 대상: 영아, 공·사립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
- ※ 매학년도 3월에 신청하며 당해 4월 ~ 이듬해 3월까지 이용(1년 단위 재신청)

(5) 보조공학기기 대여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대상: 영아, 공·사립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재고 확인 후 대여 가능

(6) 기타 지원 사항

-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 대금, 학교급식비 지원(의무)
-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공·사립 우유대금 및 사립 교육비(차액분))
  -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실 및 급식실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명단 통보
  - ※ 특수교육지원청 별로 '해당없음' 항목이 있음.

나) 지원 내용별 세부사항<sup>4)</sup>

(1) 보조공학기기 지원

- 목적
  - 개인별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따른 교수·학습 자료 지원
  - 장애영역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한 교수·학습접근으로의 물리적 환경 제약 완화
  - 교수·학습 교구 및 기자재 지원 통한 교수·학습 환경 질제고
- 신청 및 대여방법
  - 대상: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대학생 및 학부모, 교사센터와 협력관계 기관(교육적 용도로만 대여 가능)
  - 신청: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 제한: 1회 3기기까지 학급, 개인 모두 대여 가능
  - 자료 수령 및 반납: 신청인이 지원센터로 직접 수령 및 반납
  - 스마트러닝 지원은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4) 해당 자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한 내용임.

[그림 II-5-1]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대여방법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m=0301&s=iss>)에서 2021. 12. 1. 인출.

## (2) 치료비지원카드 발급

###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한 치료지원 기회 제공 통한 개별 학생 요구에 따른 치료지원 실시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경감 및 보상으로 심신 조화와 기초기능 습득 기회 제공

### - 대상자: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청 치료지원카드 ‘참좋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

### - 제외 대상자

-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에서 치료지원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 중인 학생

### - 유의사항

- 참좋은카드와 타기관 바우처와는 동일 치료영역 중복 지원 불가
- 참좋은카드 치료영역 변경 시 소속 학교 담당교사에게 영역 변경 신청
- 타시도 전학을 갈 경우 취소, 정지 신청하도록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시 카드는 소속 학교로 반납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관

-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참좋은카드 사용 불가
- 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소속 학교 담당교사에게 문의
- 치료영역: 참좋은카드 매뉴얼에 있는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물리, 작업, 언어, 청능, 음악, 미술, 인지, 놀이, 특수체육, 감각통합,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1인 1영역에 제한 없이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매월 1인당 월 120,000원 범위 내에서 소요액을 지원(익월로 이월되지 않음)
  - 매월 1일 생성되며 말일(24:00)에 해당 월 잔여 한도가 자동 소멸
  - 서비스 단가 결제는 매회 결제가 원칙임

[그림 II-5-2] 참좋은카드 발급 절차

| 업무절차      | 처리내용                                                                                       | 업무주체                          |
|-----------|--------------------------------------------------------------------------------------------|-------------------------------|
| 신청서 작성·제출 | ◦ 치료지원카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br>(신청인 → 교육기관 담당교사)<br>◦ 특수학교 → 진급 시 치료지원비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인                           |
| 신청서 접수    | ◦ 치료지원카드 발급 신청 정보 작성 및 공문접수<br>(유·초·중학교 →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 강화<br>→ 미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담당교사                          |
| 카드 발급     | ◦ '참좋은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 교육지원청<br>특수교육지원센터,<br>소속 특수학교 |
| 카드 수령     |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후 직접 수령                                                                | 학생, 보호자                       |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m=0302&s=iss>)에서 2021. 12. 1. 인출.

### (3) 순회지원치료지원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한 치료지원 기회 제공을 통한 개별학생 요구에

따른 치료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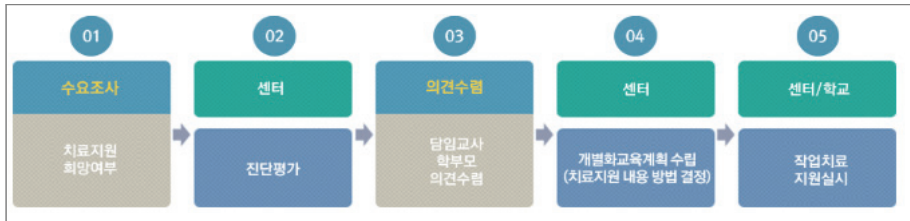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경감 및 보상으로 심신 조화와 기초기능 습득 기회 제공
- 방침
  - 순회 작업치료지원과 내방 작업치료지원 중 학생의 특성 및 희망여부, 센터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형태로 운영
  - 참좋은카드와 중복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와 중복가능
  - 관내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집단평가 검목표 및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 통한 치료지원 여부 결정
  - 대상 학생 개개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치료 계획 수립 및 탄력적 운영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교육 시 교사 또는 보호자 책임 하 이동
  - 주 1~2회, 회당 50분 수업(수업시간은 학교, 학생, 치료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개별 또는 소그룹(2~3명) 형태로 치료지원 실시

〈표 II-5-9〉 작업치료 영역

| 영역          | 목적                                                     | 기능                                              |
|-------------|--------------------------------------------------------|-------------------------------------------------|
| 상지의 동작      | 놀이, 운동, 일을 통하여 상지의 다양한 치료를 경험함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손의 기초를 둠    | - 파지기능<br>- 조작기능<br>- 도달기능<br>- 응용기능            |
|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 | 기초, 기본 동작 훈련을 통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          | - 자기 관리 기능<br>- 가정 관리 기능                        |
| 신체의 응용 동작   | 자신의 신체적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장애 상태를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 적응력을 습득함        | - 체간의 운동기능<br>- 상지의 운동기능<br>- 손동작 기능<br>- 협응 기능 |
| 작업 동작       |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작업동작을 익힘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탐색함 | - 정보처리 기능<br>- 기초 작업 기능                         |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m=0302&s=iss>)에서 2021. 12. 1. 인출.

[그림 II-5-3] 순회치료지원 절차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m=0302&s=iss>)에서 2021. 12. 1. 인출.

- 선정기준: 고등학교(급) 완전통합학생, 중복장애학생, 장애급수가 높은 학생, 전영도 치료지원 미수혜자, 고학년(같은 학년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선정

#### (4)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방과후교육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방침
  -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방과후교육활동비는 총 12개월 지원 (2021.8.부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개인별 프로그램과 학교별 프로그램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보호자(운영기관)에게 1인당 월 100,000원 이내 지원(교육비 납입영수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 첨부 증빙)
  - 수강료가 100,000원 미만일 경우 실제 교육비만 지원
  - 지원기간: 12개월 (2021.8.부터)
  - 참좋은카드 또는 보건복지부바우처를 이용한 영수증 제출 시 지원 불가
  - 자유수강권과 중복지원 불가

#### (5) 상담 및 가족지원

#####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방과후교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취미·여가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가족프로그램 참여 통한 가족 간 정서적 유대 및 성취감 기회 제공
-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웃 가족과의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교류기회 마련

##### - 방침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보호자)을 대상으로 실시
- 전년도 방학프로그램 참여 설문결과 반영 통한 가족지원 방학프로그램 편성 운영
- 취미·여가 등 실생활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
- 운영 장소는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내 특수학교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분산 운영
- 세부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시행

#### (6) 통학비 지원

#####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지원조건

#####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는 학생
-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거리가 2km 이내이지만 장애로 인하여 도보통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나)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 통학하는 학생
- 자가 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학생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로 타 학군 학교를 다니는 학생
- 도보통학(도보기준 2km 이내)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
-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받는 원아(무상교육비에 통학비 포함 되어 지원)
- 기타 타 기관에서 교통비(지하철, 버스비 등)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 통학비 지원에 있어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
  - ※ 위의 (가), (나)의 조건을 충족하나 지역적인 여건상 대중교통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버스비와 장애인 콜택시비 요금에 준하여 통학비 지원
- 지급방법 및 지급액
  - (가) 지급기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를 계산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나) 지급시기: 매월 통학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
  - (다) 지급횟수 및 금액
    - 시내버스 이용료: 인천광역시 버스 기본 운임표에 따라 1일 2회 지원
    -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 1일 2회 지원 (1회당 2,500원 이내 실비)
    - 도선료 및 톨게이트비: 도선료 및 톨게이트 실비에 한하여 지원

#### 다)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재신청, 취소 및 유예를 할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지역 특수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부록 1~3 참조).

〈표 II-5-10〉 취학의무 유예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안내

| 구분                |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
| 공동 제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초등학교 입학할 유예하고자 하며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br/>(특수교육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있는 학생을 의미함)</li> <li>1. &lt;서식7&gt;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승인 신청서</li> <li>2. &lt;서식1-1&gt;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li> <li>3. 유예 및 면제 신청자 명단(엑셀)</li> <li>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협의록(유·초·중학교)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고등학교) 협의록</li> <li>※ 학교 자체 양식,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 내용 반드시 포함</li> <li>※ 유예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신청</li> <li>※ 학생이 취학할 &lt;관할 주민센터&gt;에 보호자가 취학유예신청을 따로 해야 함.<br/>(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 문의 바람)</li> </ul> | <p>유예기간: 1년 이내<br/>(시작일자가 언제든 다음연도 2월 28일에 종료)</p> |
| 취학의무 유예 신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유별 증빙 서류</li> <li>- 질병: 진단서</li> <li>- 미인정유학: 출입국 사실 증명서</li> <li>- 대안학교 재학으로 인한 유예: 대안학교 재학증명서, 등본, 보호자 재직증명서</li> </ul>                                                                                                                                                                                                                                                                                                                     | 취학년도 1월 1일 ~ 입학 전일                                 |
| 취학 중인 학생으로 유예 신청자 | <p>유예 승인 확인서(학교 자체 양식) 2. 사유별 증빙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진단서</li> <li>- 미인정유학: 출입국 사실 증명서</li> <li>- 대안학교 재학으로 인한 유예: 대안학교 재학증명서, 등본, 보호자 재직증명서</li> </ul>                                                                                                                                                                                                                                                                                                   | 상시                                                 |
| 취학 중인 학생으로 면제 신청자 | <p>사유별 증빙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진단서</li> <li>-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 해외파견관련 공문, 출입국사실 증명서</li> <li>- 사망: 사망확인서류</li> <li>※ 면제일 필수 기재(예: 사망일 또는 학적처리일)</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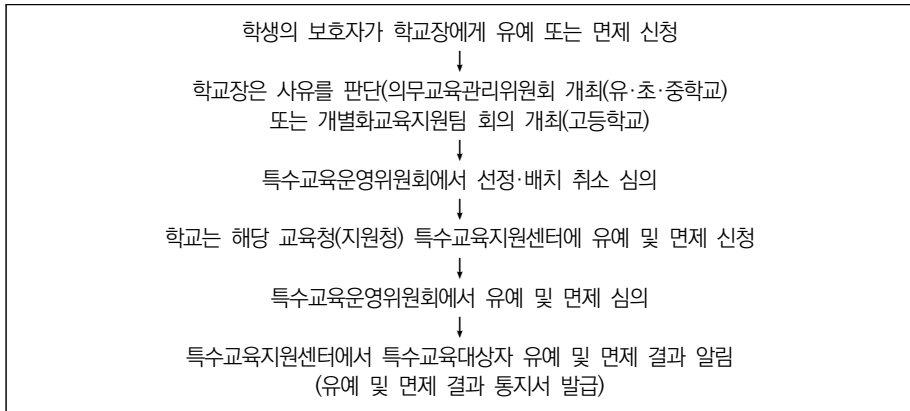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page=0201&m=0201&s=iss>)에서 2021. 12. 1. 인출.

〈표 II-5-11〉 취학의무 유예 제출 절차 및 방법 안내

| 대상                              | 제출 절차                                                                       | 제출 방법                       |
|---------------------------------|-----------------------------------------------------------------------------|-----------------------------|
| 유·초·중학교<br>(특수학교 유·초·중학교 과정 포함) | <p>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유·초·중) 학부모<br/>→ 재학 중인 학교<br/>→ 해당 교육지원청(강화→미래교육지원센터)</p> | 제출 서류 스캔(PDF) 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 고등학교<br>(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포함)       | <p>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 학부모<br/>→ 재학 중인 학교<br/>→ 시교육청 초등교육과</p>                   |                             |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page=0201&m=0201&s=iss>)에서 2021. 12. 1. 인출.

[그림 II-5-4]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절차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sub/info.do?page=0201&m=0201&s=iss>)에서 2021. 12. 1. 인출.

### 3) 장애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지원

#### 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sup>5)</sup>

#####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하다(※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9년 3월부터 지원).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5)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21b). 장애아 보육료지원. <https://www.nise.go.kr/onmam/front/board/boardContentsView.do>에서 2021. 12. 1. 인출.

수 있도록 조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13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 :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7년 11월 1일 이후 신규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18년도에 한하여 제출 면제 가능.

'13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12년 출생 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19.2월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06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2)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한다.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한다.

### (3)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62천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62천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6)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7)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8) 중복혜택금지: 아래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아이돌봄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나) 지자체 별 지원 사례 - 경기도 고양특례시

-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영아 및 장애영유아 공통)

- ☐ 사업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및 장애영유아에 보육료 지원
  -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및 장애영유아

□ 지원금액

| 비장애아동                                      | 장애아                                        |
|--------------------------------------------|--------------------------------------------|
| 0세 : (정부지원보육료)484,000원,<br>(기관보육료)528,000원 | 종일 : (정부지원보육료)502,000원<br>(기관보육료)587,000원  |
| 1세 : (정부지원보육료)426,000원<br>(기관보육료)287,000원  | 방과후 : (정부지원보육료)251,000원<br>(기관보육료)500,000원 |
| 2세 : (정부지원보육료)353,000원,<br>(기관보육료)194,000원 |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에게 전자바우처형태<br>(국민행복카드)로지급     |

□ 비고

유아학비(유치원) 지원아동 야간연장보육료 해당 예산액 외 구청으로 예산 재배정  
19:30 이후 등원하는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아동의 자부담은 없음.



# III

##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01 조사개요

02 분석결과



### Ⅲ.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1. 조사개요

연구진은 장애아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분석을 정리하였다. 우선 장애 영유아 종합통계의 필요성, 통계 구축 방법, 통계 사각지대 관리 방법, 관할 부처, 종합통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기타의견 순으로 정리하였다.

##### 1) 응답자 특성<sup>6)</sup>

연구수행을 위해 유아특수 및 장애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회의(온라인 줌 회의 포함)와 서면조사 방식으로 수렴하였다. 선정된 전문가 패널 40명은 유아특수·장애영유아 관련 연구 경험자, 관련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집을 통한 표집이 진행되었다.

#####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연구를 위한 서면검토의견서는 2021년 12월 2일에서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약 9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비대면으로 이미 자문회의를 한 참여자도 일부 있었으며, 연구참여자와의 자문회의 이후 서면조사를 요청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자문회의 후 서면조사를 다시 받은 이유는 서면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면조사 질문지는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이유, 종합통계 구축 방법, 담당 관련 부처 및 사각지대 통계 구축 방안, 종합통계를 위한

---

6) 추후 보완 예정임

제도 개선 방안, 추가의견,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문항은 모두 반구조화된 질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1〉 전문가 의견 조사지 내용 구성

| 구분 | 문항                       | 질문내용                       |
|----|--------------------------|----------------------------|
| 1  |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       |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이유 등         |
| 2  |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 방법         | 장애유형, 항목 등의 통합방법           |
| 3  | 담당 관련 부처 및 사각지대 통계 구축 방안 | 최종 통합 부처, 기관 미이용자 통계 구축 방안 |
| 4  | 종합통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종합통계 구축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 및 정책 |
| 5  | 추가 의견                    | 기타 추가 의견 기술                |
| 6  | 개인특성배경                   |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

## 2. 분석결과

### 가.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

첫째, 의무교육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많은 장애영유아들에게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상태에 기반한 장애명 뿐 아니라 교육적 필요를 강조하는 진단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보육대상자로 적격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교육 지원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김00)

둘째, 장애영유아가 어떤 교육, 보육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르고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영유아들이 교육/보육을 받는 기관의 선택을 부모가 하지만 이들이 균등하게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배치의 체계적인 규정, 장애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적격성 체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은 영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무상교육대상자이며,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은 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입니다. 아울러 장애영유아는 우선보육대상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책무성을 지닙니다. (박001)

셋째,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유형 용어가 상이하여 지원체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예, 유치원의 통합교사와 어린이집의 통합교사)가 있기 때문에 협력적인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 보육현장에서 용어를 일관성있게 통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가정, 기타 시설 등에 속한 장애영유아 파악에서 동일한 용어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종합통계가 어려우므로 장애영유아 현황파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정00)

현재 유아특수교사로서 교육하는 유아들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들이 모두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그 두 기관조차 이용하지 않아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아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00)

넷째, 동일연령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장애유형이 다르게 구분되고 있어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은 서로 다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종합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장애인통계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보다 이들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00)

보육통계 및 통계청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통계자료는 장애진단을 목적으로 한 통계치이며 그 통계자료는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장애 유형을 근간으로 합니다. 장특법에 따른 통계자료는 교육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이처럼 통계자료 수집의 목적이 상이한 바,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의 목적이 교육적 지원을 위한 것이고 교육법을 근간으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목적에 적합한 종합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001)

법의 지원체계가 다르기때문에 법령에서 장애유형을 통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특수교육법」에서 발달지체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수교육법」에서의 학습장애와 정서행동장애의 의미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장애영유아는 위의 유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를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특수교육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정서행동장애학생들이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특수교육법」이 「장애인복지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용어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체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청각장애), 지적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자폐성장애), 언어장애(의사소통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법」의 건강장애와 「장애인복지법」의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장애인의 분류가 상이하여 분류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와 정서행동장애,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는 장애영유아 시기에 분류하는 것은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영유아기 또는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연령 시기의 통계자료는 각 법의 장애유형의 포함기준을 명시하고,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등의 통계자료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을 삽입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장애영유아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고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영유아 중에는 진단서에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유형과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기준에 한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육관련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장애유형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 진단서로 입소한 장애영유아의 분류기준이 모호하다.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환아는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지원....’이라는 내용이 쓰여있는 경우, 임의로 「장애인복지법」의 언어장애, 「특수교육법」에서의 의사소통장애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발달지연 항목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형과 장애유형의 명칭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이 「장애인복지법」과 달라서 서류 작성(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기초조사카드 작성)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III-2-1〉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의견 정리표

| 필요이유                       | 설명                                                                                                                                   |
|----------------------------|--------------------------------------------------------------------------------------------------------------------------------------|
| 의무교육 보장                    | 의무교육대상자의 정확한 파악 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의 통계는 추후 장애영유아 즉,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 정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
| 교육불평등 및 유-보 격차 해소          | 장애영유아의 기관선택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고 격차가 발생, 장애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과 보육의 질 유지<br>동일연령 유아에 대한 서로다른 접근으로 격차를 야기                                        |
| 용어와 개념의 통일                 |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유형 용어가 상이하여 지원체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특수교육대상유아와 장애영유아로 이원화되어 있음) |
|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통일 필요         | 장특법과 장복법으로 이원화되어 동일연령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장애유형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 교사수급, 기관 설치 등 공적지원의 적격성 판정 | 교육보육 서비스 및 인력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 공적 서비스의 적격성 판정을 위해 필요                                                                            |
|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립 및 행정의 효율화    | 예산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 국가재정의 낭비 방지,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br>국가책무성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간임                                                      |
| 교육권 및 아동권리 보장              | 동일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 혜택을 지원 받는 것이 영유아의 권리임.                                                                                                |
|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가능              | 국가차원에서 조기중재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음.                                                                                         |
| 사각지대 예방                    |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파악도 필요함                                                                                                             |
| 발달에 적합한 연령 간 연계            | 발달과정을 연속선상에서 보고 연계적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 보호자의 편익 증진                 | 적절한 데이터 구축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부모에게 제공가능                                                                                                     |
| 취학 수요 예측                   |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향후 대상자 수요 예측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됨.                                                                                         |

## 나.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 방법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확대하여 특수교육통계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로서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

정은 교육기관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의 측면에서 발달상의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찾아내 지원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현행 특수교육통계는 유치원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를 기준으로 하므로 타 기관(예: 어린이집 등)에 속해 있는 장애영유아들을 포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통계의 경우 장애유아의 수, 선정영역, 중복장애 여부, 장애인 등록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등 장애유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특수교육통계는 “발달 지체”라는 선정영역을 통해 현재 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발달상의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윤00)

영아시기도 조기발견과 개입이 필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후 유아기로의 성공적인 전이도 필요하므로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할 듯합니다. (박00)

둘째, 위의 첫째 방법과도 연계되는 안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이후 연계대책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생후 5년까지의 의료기관 영유아발달 검사를 의무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혹은 의심)된 영유아를 통합네트워크(예를 들어 시군구의 전담 부서나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보고해서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3~6개월 이상 발달이 지체된 경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기관 배치가 되지 않고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선별과 대상자 발견과 연계한 방안으로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이후,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후 장애 진단 또는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실시해나가는 것이다.

셋째,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도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법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출발선으로 하여 0-3세 미만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대상자와, 3-5세 유아특수교육대상(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로 나누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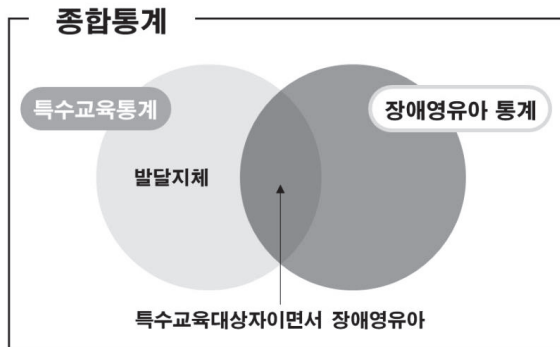
수치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0-3세미만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과 3-5세 유아특수교육대상(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으로 분류하는 것은 미국의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도 PartB(Assistance for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와 PartC(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의 적용대상으로 나누어진 연령이고 DEC(Division for Early Childhood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의 권고도 연령구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지원의 대상이 가족까지 포함하여 개별화가족지원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을 제공하고 3-5세의 장애유아에게는 현행수준 파악 후에 그에 따른 개별화교육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Plan: IEP)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007)과 미국의 IDEA를 참고할 때도 3-5세의 장애 유아와 0-3세미만의 장애영아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특수교육통계로 관리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007) 제3조에 의하면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8조에 의하면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장애영유아와 발달지체를 구분하고 통합하여 구축하는 방법이다. 특수교육통계에서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보육통계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복지법)된 영유아를 (특수)보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와 장애영유아 통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필요 유무와 장애 등록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영유아로 포함시킬 경우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가 등록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종류에 ‘발달지체’라는 장애명이 포함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 영유아에게 장애명의 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달지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주양육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등 의료적 처치나 지원이 중요한 장애영유아까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 실제 유치원에서 필요충분한 의료적 처치나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전체를 장애영유아로 포함하

거나 장애영유아 전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안으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영유아 모두를 ‘장애영유아’ 카테고리 포함시켜 묶고, ‘발달지체’를 따로 두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대부분의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명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영유아’로 포함(학습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는 없지만 학습장애로 선정받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령기에 이루어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발달지체’로 선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또한 분명히 존재하므로 ‘장애영유아’와 ‘발달지체 영유아’의 두 가지로 범주화시켜 종합통계를 구축하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안들은 현실적이지는 않다. 다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2-1] 종합통계 1안



[그림 Ⅲ-2-2] 종합통계 2안



다섯째, 특수교육통계의 장애유형 중 발달지체 항목에 보건복지부의 상이한 장애영역을 추가 기입할 수 있게 하여 특수교육통계에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표 III-2-2〉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 방법에 대한 의견 정리표

| 필요이유                           | 주요의견                                                                                                                                                                                                                                                                                                                                                                                                                                                                                                      |
|--------------------------------|-----------------------------------------------------------------------------------------------------------------------------------------------------------------------------------------------------------------------------------------------------------------------------------------------------------------------------------------------------------------------------------------------------------------------------------------------------------------------------------------------------------|
| 특수교육대상자로의 통합<br>(특수교육통계로의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로서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교육기관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에 적합</li> <li>-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교육과 고등교육까지의 지속적인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특수교육통계에 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li> <li>- 보육통계로 집계된 장애영유아 데이터를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여 통합하여 관리</li> <li>-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유아의 경우 최소한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검사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경감과 보호자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함),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게 되면 통계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li> </ul> |
| 생애주기별 대책<br>(영유아건강검진 이후 연계 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5년까지의 의료기관 영유아발달 검사를 의무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혹은 의심)된 영유아를 통합네트워크(예를 들어 시군구의 전담 부서나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보고해서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리</li> <li>-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3~6개월 이상 발달이 지체된 경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기관 배치가 되지 않고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li> <li>-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선별과 대상자 발견과 연계함.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이후,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장애 진단 실시함. 이후 장애 진단 또는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실시</li> </ul>        |
| 연령별로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007) 제3조에 의하면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8조에 의하면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보장함</li> <li>- 따라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도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법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출발선으로 하여 0~3세미만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대상자와, 3~5세 유아특수교육대상(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로 나누어 통계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함</li> </ul>                                                                                                                                                    |
| 장애유형의 통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항목 정하기(발달지연, 발달지체 등)</li> <li>- 특수교육통계의 장애유형 중 발달지체 항목에 보건복지부 상의 상이한 장애영역을 추가 기입할 수 있게 하여 특수교육통계에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li> <li>- 장애위험군 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용</li> </ul>                                                                                                                                                                                                                                                                                              |

| 필요이유                        | 주요의견                                                                                                                                                                                                                                                         |
|-----------------------------|--------------------------------------------------------------------------------------------------------------------------------------------------------------------------------------------------------------------------------------------------------------|
| 장애영유아 통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수와 장애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보여 보건복지부 발달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수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유무, 이용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에 담아내어 파악 가능</li> <li>- 이후 교육부와 각 17 시·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예측가능</li> </ul>                                     |
| 기관이용/비이용자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통계에서 기관 이용과 비이용자 구분하여 구축</li> </ul>                                                                                                                                                                               |
| 장애영유아통계와 발달지체를 구분하는 통합하는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영유아 통계로 통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 장애영유아를 모두 포괄하고, 발달지체를 따로 두는 방법</li> <li>- 장애영유아 통계와 발달지체를 완전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li> </ul>                                                                                                     |
| 통계청 최종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등)를 통계청에서 취합하여 전체 장애영유아에 대한 종합통계 마련, 관리</li> <li>- 장애등록을 한 장애영유아는 복지카드에 명시된 장애명으로 집계, 미등록 영유아는 의사소견서나 배치신청서에 명시된 추정장애명을 활용하여 정확한 대상자의 수 파악은 물론 장애유형도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li> </ul> |

## 다. 담당 관련 부처 및 사각지대 통계 구축 방안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담당 관련 부처 및 사각지대(기관미이용, 장애위험군 영유아) 통계 구축을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담당관리부처로는 크게 교육부, 복지부, 제3의 부처 또는 교육부+복지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 등의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 1) 교육부 중심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계에서, 유치원은 특수교육통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육통계는 장애 영유아뿐 아니라 다양한 특수보육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고 특수교육통계는 유, 초, 중, 고를 모두 다루고 있어 기관 미이용자, 장애 위험 유아, 장애 경계선의 유아 등 다양한 장애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 산하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계를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가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적 책무성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진학시 교육과정 연계상 필요하고, 취학유예로 인한 미이용자로 분류되는 경우, 특수교육통계에 포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초등연계를 위해 특수교육통계에 준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관리 필요함을 강조한다.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상에 장애영유아교육지원에 대한 홍보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특수교육통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한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담당부서로 하여, 기관 미이용자 혹은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영유아건강검진시 3~6개월 이상 발달이 지체될 경우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며, 그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배치를 희망하지 않고 장애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부모나 보육교사가 영아의 장애가 의심될 때, 해당 지역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에 의뢰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지역 협력기관과의 협업으로 진단 및 평가, 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보육수당 수령 시 K-DST 검사지를 제출하게 하여 심화권고나 추적검사아동은 관할구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로 관리가 되도록 하면 더 연계가 잘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인데, 장애영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어린이집에 배치받았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통계 처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민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인 관리와 1년에 한 번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하위에 '장애영유아' 담당 전문 부서를 따로 두어 관리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 2) 복지부 중심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관미이용자의 경우 복지부에서 영유아에게 발급한 복지카드를 파악하고, 기관과 기관미이용자 구분을 하라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달지체 또는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장애영유아

종합통계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대상자의 배치환경(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낮 병동, 복지관 등)을 체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영유아들의 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공이 되거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발달지연 결과가 나온 아이들에게는 6개월 이상 치료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지원을 우선 시행하여 장애영유아통계로 잡을 수도 있고, 영유아건강검진 이후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사전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 영아전담 부서를 신설, 보육정책관 내에 독립된 기구로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복지부 산하 보건소 또는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를 수집하는 주장인데, 이는 병원, 보건소에서 영유아검진과 함께 장애영유아로 등록하여 보건소에서 꾸준히 부모와 소통하고 기관 입소 권유 및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시군구) 및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시군구 지자체별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 설치, 0-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아동병원 재활 의학과 및 소아과에서 진단 및 치료 받는 경우, 해당 지역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에 장애영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이 정보는 지역 보건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등에 공유되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생후 5년간 영유아발달검사를 의무화, 시군구 또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유아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관리하자는 의견이다.

### 3) 행정안전부의 역할

사각지대 장애영유아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등록 후 기관미이용 장애영유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행정복지센터는 장애를 등록한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를 알리고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것을 권고하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4) 기타

기타 의견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 제 3의 부처 통합, 통계청 통합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교육부와 복지부 협력방안으로는 연령별 이원화를 하고(3-5세:교육부, 0-2세:복지부), 만6세부터 교육부 담당 하자는 의견이었고, 전체적인 조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11조 2항 3호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표 III-2-3〉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관리부처 및 사각지대 영유아 통계관리에 대한 의견 정리표

| 부처            | 관리방법                                                                                                                                                                                                                                                                                                                                                                                                                                                                                                                                                               |
|---------------|--------------------------------------------------------------------------------------------------------------------------------------------------------------------------------------------------------------------------------------------------------------------------------------------------------------------------------------------------------------------------------------------------------------------------------------------------------------------------------------------------------------------------------------------------------------------|
| 교육부(+관계부처 합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를 위해 특수교육통계에 준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관리 필요</li> <li>-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과정의 연속성상 필요</li> <li>- 특수교육통계는 유, 초, 중, 고를 모두 다루고 있어 기관 미이용자, 장애 위험 유아, 장애 경계선의 유아 등을 다루지 못하므로, 교육부 산하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계 관리 부서 필요</li> <li>- 취학유예로 인한 미이용자로 분류되는 경우, 특수교육통계에 포함</li> <li>-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에 장애영유아교육지원에 대한 홍보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음.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통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li> </ul>                                                                                                                       |
| 특수교육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부서를 만들어 인구조사식으로 장애영유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li> <li>- 기관 미이용자 혹은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영유아건강검진시 3~6개월 이상 발달이 지체될 경우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갖추어야 함. 그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배치를 희망하지 않고 장애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li> <li>- 부모나 보육교사가 영아의 장애가 의심될 때, 해당 지역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에 의뢰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지역 협력기관과의 협업으로 진단 및 평가, 중재를 실시</li> <li>- 시군구 지자체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을 통한 의뢰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모두 접수되도록 하여 특수교육통계에 반영</li> <li>- 가정보육수당 수령시 k-dst 검사지를 제출하게 하여 심화권고나 추적검사 아동은 관할구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로 관리가 되도록 함</li> </ul> |
| 국립특수교육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어린이집에 배치를 받았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임.</li> <li>-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통계처럼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장애영유아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인 관리와 1년에 한번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와 통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li> <li>- 하위에 '장애영유아' 담당 전문 부서를 따로 두어 관리</li> </ul>                                                                                                                                                                                                                                       |

| 부처                       | 관리방법                                                                                                                                                                                                                                                                                                                                                                                                                                                                                                                                                                                                                                                                                                                                                                                                                                                                                                                                                                                                                                                 |
|--------------------------|------------------------------------------------------------------------------------------------------------------------------------------------------------------------------------------------------------------------------------------------------------------------------------------------------------------------------------------------------------------------------------------------------------------------------------------------------------------------------------------------------------------------------------------------------------------------------------------------------------------------------------------------------------------------------------------------------------------------------------------------------------------------------------------------------------------------------------------------------------------------------------------------------------------------------------------------------------------------------------------------------------------------------------------------------|
|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미이용자의 경우 복지부에서 영유아에게 발급한 복지카드를 파악하고, 기관과 기관미이용자 구분 필요, 그러나 부모들이 복지카드 발급을 꺼리므로 누락 발생</li> <li>- 장애위험군 영유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전수조사 필요, 심화평가권고 대상자에서 정밀평가 권고를 받은 수 선별</li> <li>- 병원에서 발달지체 또는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장애영유아 종합통계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대상자의 배치환경(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낮병동, 복지관 등)을 체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영유아들의 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공이 되거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진행하도록 안내</li> <li>-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발달지연된 아이들에게는 6개월 이상 치료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것이 먼저 지원하여 통계를 잡아야 함</li> <li>- 영유아건강검진 이후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사전 교육 필요</li> <li>- 기관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장애영유아의 부모에게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 절차, 국가의 지원에 대해 상세히 홍보,안내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li> <li>- 이미 건강검진실시기준 제 12조에 의거하는 법적 기준이 있으므로</li> <li>- 건강검진 수검자의 건강, 질병통계를 확보하여 장애영유아 통계 보완 필요</li> <li>- 보건복지부 내에 영아전담 부서가 신설, 보육정책관 내에 독립된 기구로 장애영유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li> <li>-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장애아 미등록이나 검사 결과 추적검사요망이나 심화평가권고로 평가)에 따른 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발달지체로 분류</li> </ul> |
| 보건소 또는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건강검진제도 활용을 위해 위해 가정이나 병원에 있는 장애아동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li> <li>- 가정이나 병원에 있는 장애아동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li> <li>- 보건소에서 영유아검진과 함께 장애영유아로 등록하여 보건소에서 꾸준히 부모와 소통하여 기관 입소 권유 및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li> </ul>                                                                                                                                                                                                                                                                                                                                                                                                                                                                                                                                                                                                                                                                                                                                                                                                           |
| 지자체(시군구) 장애아동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지자체별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 설치, 0-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아동병원 재활의학과 및 소아과에서 진단 및 치료 받는 경우, 해당 지역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에 장애영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이 정보는 지역 보건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등에 공유되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li>- 생후 5년간 영유아발달검사 의무화, 시군구 또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유아전담부서 신설</li> </ul>                                                                                                                                                                                                                                                                                                                                                                                                                                                                                                                                                                                                                                                                                                                                                     |
| 교육부+복지부<br>(장애인정책조정위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이원화(3-5세:교육부, 0-2세:복지부), 만6세부터 교육부 담당</li> <li>- 전체적인 조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11조 2항 3호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 장애 아동 수당이나 세금 공제를 받는 장애 영유아 장애유아는 특수교육통계, 장애 영아 또는 장애위험영아는 보육통계에 넣음</li> <li>-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의 기관 이용을 독려하는 과정은 교육부에서 함께 추진</li> </ul>                                                                                                                                                                                                                                                                                                                                                                                                                                                                                                                                                                                                                                                                                                                       |

| 부처              | 관리방법                                                                                                                                                                                        |
|-----------------|---------------------------------------------------------------------------------------------------------------------------------------------------------------------------------------------|
|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파악</li> <li>- 장애등록 후 기관미이용 장애영유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 행정복지센터는 장애를 등록한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를 알리고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것을 권고</li> </ul> |
| 제3의 부처산실 또는 통계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보육, 복지, 의료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 새로운 부처가 필요</li> </ul>                                                                                             |

## 라. 종합통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주로 정책적 제언과 맞닿아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와 개념 통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통계자료(예,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어린이집 보육통계 등)에서 용어를 정리(예, 용어의 정의 등)하고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영유아건강검진시 장애영유아 선별의 정확도 제고이다. 영유아건강검진시 장애여부에 대한 선별효과를 높여 장애영유아 지원 효과를 도모하는 하자는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통계로 모두 통합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넷째, 부처 통합을 통한 유보통합, 부처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실질적 의무교육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가 지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통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예방하자는 의견이다.

일곱째, 특수유아가 있는 곳에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제3의 통계센터를 만들자는 의견과 지역아동지원센터 활성화, 국가수준의 홍보와 안내 강화, 지자체 장애영유아 핫라인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II-2-4〉 종합통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정리표

| 필요이유                       | 주요의견                                                                                                                                                                                                                                                                             |
|----------------------------|----------------------------------------------------------------------------------------------------------------------------------------------------------------------------------------------------------------------------------------------------------------------------------|
| 언어, 용어, 개념 통일 필요           | -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통계자료(예,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어린이집 보육통계 등)에서 용어를 정리(예, 용어의 정의 등)하고 통합                                                                                                                                                                            |
| 영유아건강검진의 정확도 제고            | - 영유아건강검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장애영유아를 선별효과를 높임                                                                                                                                                                                                                                             |
| 부처통합을 통한 완전 통합             | - 일관성 있고 평등한 공교육화<br>- 부처통합을 통한 완전 유보일원화 필요                                                                                                                                                                                                                                      |
| 부처 협력                      | - 현행 시스템에서는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부처간 협력이 필요                                                                                                                                                                                                                                                |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충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을 통해 진단평가와 장애영유아 통계 관리 지원                                                                                                                                                                                                                                       |
| 특수교육통계에 장애영유아 정보를 최대한 담기   | - 복지카드, 바우처 지원, 장애아보육대상자 통계 내용을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하기                                                                                                                                                                                                                                |
| 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실질적 의무교육의 근거 필요 |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
| 사각지대 파악하기                  | - 국가 지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통계를 활용하기<br>: 출생신고, 영유아건강검진 중 발달 검사 자료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지체영유아 지원하기<br>-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격성 판정을 전담하기보다 복지카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전문기관(예, 지역장애인종합복지관 중 진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연계필요<b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인력의 확대로 사각지대의 장애영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
| 특수유아가 있는 곳에 특수교사 배치        |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복지관 등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 되어있는 기관 특수교사 배치,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배치 필요 등                                                                                                                                                                              |
| 제3의 종합통계센터 마련              | - 종합통계센터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병원, 시설 등에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와 장애유형, 소속형태 등을 조사 종합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 지역장애아동센터 활성화               | - 장기적으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설치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였으면 함<br>- 복지부에서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을 제안                                                                                                                                                                                            |
| 홍보 안내 연계                   | - 장애영유아 출생 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안내 책자가 배치가 되고, 영유아 등록이 누락되지 않는 방안 마련                                                                                                                                                                                                         |
| 지자체 장애영유아 핫라인 구축           | - 지자체 수준에서 장애영유아 핫라인을 구축하여 통계 수집, 정보제공 등의 연계방안 필요                                                                                                                                                                                                                                |

# IV

##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에 관한 정책 제언

01 모든 영유아를 위한 통합형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02 정책 과제



## IV.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에 관한 정책 제언

### 1. 모든 영유아를 위한 통합형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 종합 통계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정책지원방안을 찾아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영유아들이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유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교육부 간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치원은 특수교육통계에서만 어린이집은 보육통계, 통계청은 장애인 통계에서만 장애영유아를 다루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중심과 의료 중심의 장애진단 유형도 다르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아이들의 통계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 3-5세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의무교육대상자로 분류되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부처가 달라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는 경향도 높다.

이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합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은 정부가 대상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영유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기관 이용, 미이용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어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된 통계 자료로 예산편성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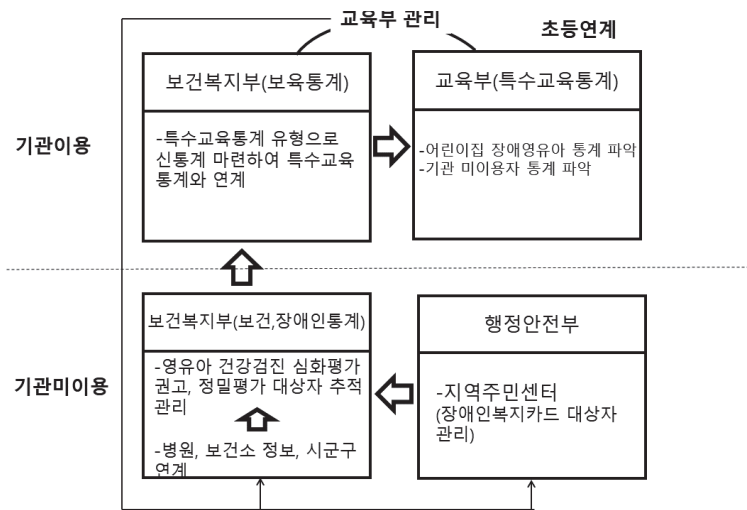
수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전공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정책 수립을 위해 어린이집 통계도 특수교육 통계에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집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창현 외(2021)에서도 ‘장애아동의 종합적 현황 파악을 위해 종합통계 작성 방안 모색 연구 실시,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통계 마련 검토’, ‘현행과 같이 보육통계, 특수교육통계, 통계청 장애인 통계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청에 보고해서 통계청에서 전체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를 파악, 관리가 필요’, ‘통계가 필요한 목적 및 통계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목적과 대상에 따라 통계 구축’, ‘이용 영유아 통계 및 기관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통계가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각 통계의 산출 목적이 애초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 및 장애인통계를 임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특수교육통계는 교육부에서, 그리고 장애영유아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각의 영역이며, 각 통계의 유형과 분류 기준을 총괄하는 법 제도 다르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통계 통합을 위하여 법 전체를 전면 개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실적인 방법은 한쪽으로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부처 간 협력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등에 기반하여 현재 통계의 약점을 보완하여 현행 체제를 개편하는 방법, 특수교육통계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모든 영유아를 위한 통합형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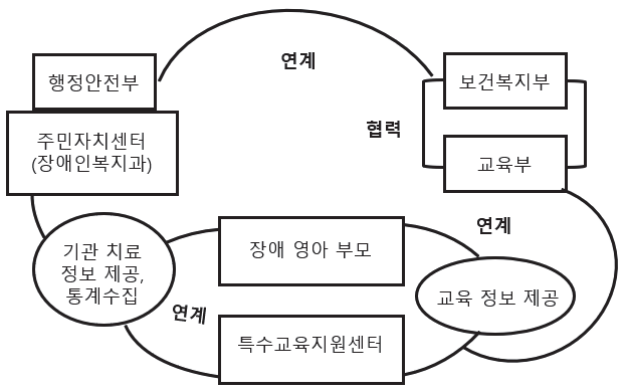
## 가.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따로 같은 방향 바라보기

현행제도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교육부 관리체제에 두되, 보육통계와 특수교육 통계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제도에서 서로 협력 연계하는 방안이다. 따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애초 통계 산출의 기본 목표와 법 제도, 지원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계를 완전히 통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법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장애유형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기도 불가능하다. 이에 보육통계에서 특수교육통계에 제시된 장애유형으로 통계를 정리하여 새로운 통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통계와 연계하는 방법이다.

[그림 IV-1-1]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따로 같은 방향 바라보기



[그림 IV-1-2] 기관미이용 장애영유아 통계 구축 방안



기관이용자의 경우, 보육통계에서 신통계를 마련하여 특수교육통계에 제시된 10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한 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공하여 특수교육통계상으로도 의무교육 대상자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계 파악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통계 포함되는 방법은 아니다.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전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다면 특수교육통계에 포함이 가능하여 장애영유아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여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수교육통계에서는 장애 유무보다는 교육 및 학습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보육통계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의사의 장애에 대한 소견서만 있어도 (특수)보육의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와 장애영유아 통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필요 유무와 장애 등록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 중요하다. 보육통계에 발달지체를 포함한 특수교육통계와 유사체계를 유지하여 관리해 볼 수 있다. 보육통계의 장애 유형과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형을 매치한 신 통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신통계를 교육부와 공유하고 특수교육통계에서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계를 파악하도록 하여 적어도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유아특수교사 수, 필요한 교육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기관 미이용자의 경우,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정밀평가 대상자 포함)에 대한 정보를 병원, 보건소에서 시군구와 연결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가능하다면 기관이용자 통계와 연계하여 출생에서 취학 전까지의 기관 미이용자들의 정보를 교육부와 통합 관리한다면, 초등으로의 연계, 초등 특수교육대상자 파악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보건통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행정안전부)를 통해 대상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정보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 부모(또는 장애 위험군)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기관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기관 미이용자 중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시군구) 장애영유아 핫라인(가칭) 통합 통계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로 통합하는 방안

다음으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특수교육통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것이 목적이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종합통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종합적인 통계와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유-초-중-고에 걸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예산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진단하고 선정하여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특수교육통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상자 수는 교육기관에 배치된 대상자이다. 이것은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지 실제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기 대상자의 수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의 전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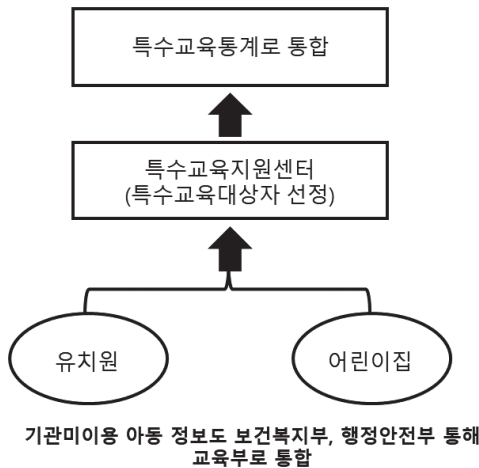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제를 따라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전체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있으며 교육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분류 기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파악할 수 없다.

영유아건강검진 사후조치로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들에게 정부지침과 계획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단 및 평가를 무료로 받도록 하고, 선정,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수교육통계로 관리해나가는 방법이다. 어린이집을 선택한 부모들에게도 결국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아야 초등학교 취학과 연결될 수 있음을 교육, 홍보하여 잠정적으로 교육부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 부모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대상인 장애 영아의 경우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받도록 하여 조기중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 가능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영유아로 불리 건, 특수교육대상자로 불리 건 장애가 있는 3-5세 모든 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의무교육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특수교육통계로 편입하여 초등과 연계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을 받은 모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진단 기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 안내,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진단 후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와 기관 안내, 판정 후 얻을 수 있는 혜택(교육 지원, 치료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병원-특수교육지원센터-유치원-어린이집 간의 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체 또는 주관 부서가 필요하며 조기중재, 가족지원, 질적 보육, 유보 연계, 치료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집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IV-1-3] 특수교육통계로 통합하는 방안



#### 다. 특수교육통계의 미래 개선 방안: 특수교육대상자 분류법 개선을 통한 통합방안

추후 미래 유아특수환경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접근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미래 유아특수의 방향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영유아의 용어를 넘어서는 다른 접근과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합된 관점에서 기능과 강점, 생활중심의 ICF 체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지원에서의 보편적 언어로의 개편이 논의되면서 세계보건기구(2007)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생활기능 중심의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ICF-CY)를 통해 신체기능의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과 배경요인으로 구분하고 기능 수행의 측면에서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분류법의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의 분류기준에서는 손상과 비정상성이 강조되었으나, 추후 특수교육대상자 접근은 손상 중심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아닌, 학생의 기능과 환경을 조사하고,

특수교육요구를 지닌 학생의 필요를 식별하는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모델을 통해 일본, 스위스, 포르투갈 등의 여러 선진국에서 장애아동의 적격성을 확립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사용 중이며,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영유아의 발견, 교육-의료-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정책 과제

### 가. 관련 법 재정비

통계의 일원화는 유보일원화와 맥을 같이 하므로, 유-보 체제개편이나 제도개선이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자체가 어렵다. 통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일 뿐이며 체제개편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과 법 제도 개선이 우선이고, 통계 구축은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재정비를 통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장애영유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다만, 장애아동을 위한 종합통계 관련 법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다.

첫째, 보육통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도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영유아 현황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수록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보육통계 내에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유형을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육통계는 매년 4월 기준, 보육통계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육통계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신설이 필요하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5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포함한다.

넷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3 신설이 필요하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제15조의 어린이집을 이용 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를 포함한다.

다섯째,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별도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별개의 지원에 이루어 지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여섯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장애 및 발달지체 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 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추진가능하다.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및 인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모든 아이들의 진단과 평가, 선정(또는 배치)을 하기 어려 우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거나, 인근 센터들에 위탁 또는 연 계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들의 사후조치 겸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관부서가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의 특수교 육대상자의 관리와 지원 등을 주관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유아지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장애영유아 통계 수집, 지역 내 장애영유아 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1 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199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유 아 지원담당관을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파악하고, 특수교육대상 선정과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의 인력으로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까지 다 포괄하기에 지역마다 인력 배치가 지원 인력의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 다. 조기발견-조기개입 연계 제도 구축

영유아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를 ‘위험’ 영유아로 등록하고, 부모가 심화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또는 발달센터와 연계할 수 있 는 제도를 구축한다. 병원에서 발달지연 또는 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 시스 템을 통해 장애영유아로 등록하거나 병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부모 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기 발견-조기개입 연계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영유아발달 선별검사 후속 지원체계구축과 통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추후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제외되는 장애 영유아들이 없도록 모든 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선별검사가 실시되어 조기에 장애 및 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통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 라. 유아특수교사 공급 확대 및 특수학급 확대

유아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사가 교육을 제공해주는 유아특수학교가 필요하기에 유치원과정의 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가 필요하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아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 신설 시 영아 학급의 의무설치가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2항에 의거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특수학교(급)가 없어 멀리 있는 기관에 가거나,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유형 및 능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 매우 부족하여, 가족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학급수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안에서도 유치원과정이 소수이기 때문에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유아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치원과정의 공립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는 전국에 한 곳만 있는 실정이므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1인 통합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별 1개원 설치가 목표이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실제로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통합교육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통합유치원 증설이 필요하고 기존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한다.

이에 특수학교(급)를 근거리에 신설하고, 특수학교 신설 시 영아 및 유치원 과정 설치 의무화 및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시도의 통합유치원 확대 및 완전통합교육 실행에 따른 배치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유형 및 능력에 따라 학부모가 원하는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인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치원과정의 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 등 여러 유형의 특수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경기도 고양특례시청 보육지원팀 (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공유자료.
-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 지원. 공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 교육부(2021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8962>
- 교육부(2021b). 특수교육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5005>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021a).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 (2011-2021년). NEIS 추출 내부 자료.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021b).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임용시험 현황 (2011-2021년). NEIS 추출 내부 자료.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21a). 2021 특수교육통계 조사 지침. <https://www.nise.go.kr/boardCnts/view.do?boardID=356&boardSeq=71746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nise&m=010502&opType=N>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21b). 장애아 보육료지원. <https://www.nise.go.kr/onmam/front/board/boardContentsView.do>에서 2021. 12. 1. 인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21).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특수교사 수(특수교육통계 2011-2021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권영화(2014).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재고(再考) 및 개선점 탐색. 한국특

- 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014.6, 431-451.
- 김경민(2020). 발달지체 영아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가족지원에 대한 질적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155-189.
- 김관주·정훈영(2016).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2(3), 29-52.
- 김삼섭·이명희·노진아·김기룡(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 김수현·이병인(2020).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부모와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논총, 37(1), 227-264.
- 김정희·김경란·강정배(2015).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251-281.
- 김태영(2021). 2016-2020 년까지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 대상 연구동향 분석: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2(1). 1-22.
- 문성옥·권현수(2011). 진단평가와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과정에서의 가족 참여에 대한 일반유치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장애유아 부모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11(3), 1-25.
- 박수경·김보경·서경주(2019).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Living Lab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 탐색.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 63-91.
- 박영제·홍정숙(2019). 장애명칭붙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 특수교육, 18(1). 83-110.
- 박은미·지성화·박인숙(2018).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장애 통합보육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19.
- 박창현·김근진·김경희·김민주(202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김근진·김경희·정유나(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김근진·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김근진·이은혜·배율미(2019). 장애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육아

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21a). 2020 장애인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2021b). 어린이집 장애아동 취학유예 현황조사 결과. 교육부 공유자료.

보건복지부(2021c).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보건복지부(2021d). 2021년 특수보육 어린이집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 (2021. 8. 기준). 교육부 공유자료.

보건복지부(2021e). 시도별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배치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보건복지부(2021f).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보건복지부(2020a).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보건복지부(2020b).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교육부 공유자료.

손준종(2021).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 경험과 그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511-1538.

신영(2014). 유보통합 환경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방향과 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특수교육학회.

신재주(2009). 장애아동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269-290.

안수경·김성애·김종무(2005). 부모를 통해 본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실태 및 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7(1), 91-111.

이소현(2004).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의 특수교육 적격성 인정 및 지원 체계 개발을 위한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38(4), 95-122.

이소현(2006). 장애영유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 요소 -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이송희·홍승주(2021). COVID-19에 따른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과제와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보건과 복지, 23(3), 39-63.

이승기·김기룡·백은령·이계윤·조윤경·전혜연·최복천·최윤영(2011). 장애아동에

-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 이정림(2013). 장애영유아 통합보육·교육의 실태 진단 및 정책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 이정림·김은영·엄지원·강경숙(2012). 장애영유아 통합보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운·이병인(20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관리자의 장애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논총, 36(2), 105-138.
- 이지효·김영팔·황영범·고재욱(2018). 장애위험영유아 조기중재의 효과와 행정지원 방안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73-209.
- 이현수(2014). 장애아 교육권에 대한 연구. 장애아동 인권 연구, 5(2), 1-15.
- 전지혜·원영미(2019). 중증장애아동 어머니의 낮병원 및 보육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9(1), 159-174.
- 정남철·정선아(2015).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9, 303-326.
- 조광순(2004).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서비스 체제의 개선 방안. 유아특수교육연구, 4(2), 71-111.
- 조운경(2006). 장애아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7, 45-64.
- 조운경(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 요구: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6(1), 39-66.
- 조운경(2013).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 보건사회연구, 33(1), 300-326.
- 조주현(2007). 장애 영·유아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1), 51-66.
- 천세영·박세희(2020).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정책·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 교육연구논총, 41(2), 217-237.
- 최복천·김유리·김진우·김지훈·심석순·양희택·오다은(2015).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활동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통계청(2019).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 <https://kostat.go.kr/>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삶패널조사

한연주·이영안·김용희(2018).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허선미·황순영(202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직업 정체성 인식. 교육혁신연구, 31(2), 323-344.

홍은숙(2008). 장애영아교육 및 조기개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2), 259-284.

Dunst, C. J., & Espe-Sherwindt, M. (2017). Contemporary early intervention models, research,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and delays. In J. M. Kauffman, D. P. Hallahan, & C. P. Pullen (Eds.),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2nd ed., pp. 831-849). New York: Routledge.

### 【온라인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ice.go.kr/>)

### 【참고 법령】

「모자보건법」[법률 141호]

「발달장애아지원법」[법률 제167호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아동복지법」[법률164호]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유아교육법」[법률 제1795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4332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42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 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7954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대통령령 제32364호]



## 부록

### 부록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                                                                                                                                                                                                                                                                                  |                                          |          |            |            |                             |
|------------------------------------------------------------------------------------------------------------------------------------------------------------------------------------------------------|----------------------------------------------------------------------------------------------------------------------------------------------------------------------------------------------------------------------------------------------------------------------------------|------------------------------------------|----------|------------|------------|-----------------------------|
| 대상자                                                                                                                                                                                                  | 성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                                                                                                                                                                                                      | 소속                                                                                                                                                                                                                                                                               | 학교 학년 반                                  |          |            |            |                             |
|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입                               |          |            |            |                             |
|                                                                                                                                                                                                      | 장애유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br>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 (      )급 |          |            |            |                             |
| 보호자                                                                                                                                                                                                  | 성명                                                                                                                                                                                                                                                                               |                                          | 대상자와의 관계 |            |            |                             |
|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입(학생 주소가 같을 경우 '상동'으로 기재)       |          |            |            |                             |
|                                                                                                                                                                                                      | 연락처                                                                                                                                                                                                                                                                              |                                          |          |            |            |                             |
| 기배치<br>상황                                                                                                                                                                                            | (      )학교<br>(      )학급                                                                                                                                                                                                                                                         | 재배치<br>희망                                | 1지망      | (      )학교 | (      )학급 |                             |
|                                                                                                                                                                                                      |                                                                                                                                                                                                                                                                                  |                                          | 2지망      | (      )학교 | (      )학급 |                             |
|                                                                                                                                                                                                      |                                                                                                                                                                                                                                                                                  |                                          | 3지망      | (      )학교 | (      )학급 |                             |
| 재배치<br>신청사유                                                                                                                                                                                          |                                                                                                                                                                                                                                                                                  |                                          |          |            | 재배치<br>희망일 | ※ 재배치<br>희망교와<br>협약하여<br>작성 |
| 치료지원<br>서비스 정지<br>안내<br>(해당 □에<br>V 표시)                                                                                                                                                              | <input type="checkbox"/> 타시도 재배치일부터 치료지원서비스 「참좋은카드」를 사용할 수<br>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드앞면일련번호<br>(참좋은카드 No.      -      -      )<br><input type="checkbox"/> 「참좋은카드」는 소속교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br><input type="checkbox"/> 「참좋은카드」미발급 학생입니다.<br><input type="checkbox"/> 동일교 및 관내 재배치로 해당 없음 |                                          |          |            |            |                             |
|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br/>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br/>보호자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시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p> |                                                                                                                                                                                                                                                                                  |                                          |          |            |            |                             |



### 부록 3.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승인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신청서                                                                                                                                                                                                  |                                                                                                                                                                                                                            |                                                                                           |              |                                                  |      |
|--------------------------------------------------------------------------------------------------------------------------------------------------------------------------------------------------------------------|----------------------------------------------------------------------------------------------------------------------------------------------------------------------------------------------------------------------------|-------------------------------------------------------------------------------------------|--------------|--------------------------------------------------|------|
| 대상자                                                                                                                                                                                                                | 성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 소속                                                                                                                                                                                                                         | 유치원/학교      학년      반<br>(기배치형태:      학급)                                                 |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일반학교의 경우 학급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중 택 1 하며, 특수학교의 경우 과정을 명시하고 일반학급, 순회학급 중 택 1하여 작성한다. |              |                                                  |      |
|                                                                                                                                                                                                                    | 주소                                                                                                                                                                                                                         | ※ 도로명 주소 기입                                                                               |              |                                                  |      |
|                                                                                                                                                                                                                    | 장애유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br>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 (      급)                                             |              |                                                  |      |
| 보호자                                                                                                                                                                                                                | 성명                                                                                                                                                                                                                         |                                                                                           | 대상자와의<br>관계  |                                                  |      |
|                                                                                                                                                                                                                    | 주소                                                                                                                                                                                                                         | ※ 도로명 주소 기입(학생 주소가 같을 경우 '상동'으로 기재)                                                       |              |                                                  |      |
|                                                                                                                                                                                                                    | 연락처                                                                                                                                                                                                                        |                                                                                           |              |                                                  |      |
| 선정 취소<br>사유                                                                                                                                                                                                        |                                                                                                                                                                                                                            |                                                                                           | 선정 취소<br>희망일 | * 선정취소일: 매월 말일<br>예) 유치원 퇴원 시 퇴원 다음<br>날부터 선정취소일 |      |
| 치료지원<br>서비스 정지<br>안내<br>(해당 <input type="checkbox"/> 에<br>V 표시)                                                                                                                                                    | <input type="checkbox"/> 선정취소일부터 치료지원서비스「참좋은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br>카드앞면일련번호(참좋은카드 No.      -      -      -      )<br><input type="checkbox"/> 「참좋은카드」는 소속교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br><input type="checkbox"/> 「참좋은카드」미발급 학생입니다. |                                                                                           |              |                                                  |      |
|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시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p> |                                                                                                                                                                                                                            |                                                                                           |              |                                                  |      |

## 부록 4.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서 양식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장애아동 종합통계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장애아동 종합통계 구축방안을 도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는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12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 정 유 나가족지원연구팀 연구원) uonoa@kicce.re.kr/ 02-398-7749

□ 연구책임 : 박 창 현(미래교육연구팀 팀장) pch0407@kicce.re.kr/ 02-398-7789

1. **[통합통계 구축의 필요성, 이유]**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참고) 현재 유치원의 장애유아는 특수교육통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는 보육통계, 통계청 장애인 통계에서 다루고 있음. 통계상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대상자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함. 장애유아가 선택한 기관유형에 따라 장애유형도 다르게 파악되고 있음.

☞ 의견란

2. **[통합방법]** 특수교육통계와 장애영유아 통계(보육통계)를 통합할 때,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영유아를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방법 등)

☞ 의견란

3. **[관리부처]**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할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란

4. **[제도개선]**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의견란

※ 그밖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근무기관: ( ) (예시: 육아정책연구소)  
직책: ( )  
최종학력: ① 학사( ), ②석사( ), ③박사( ), ④기타( )  
최종학위취득전공명: ( ) (예시: 유아특수교육 등)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근무 기간 포함)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성별: ①여자( ), ②남자( )  
연령: 만      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 명단 및 세부 내용 정리

〈부표 5-1〉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 명단

| 구분 | 이름   | 소속            | 구분 | 이름  | 소속              |
|----|------|---------------|----|-----|-----------------|
| 1  | 강○○  | 성결대학교         | 21 | 손○○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 2  | 권○○  | 경남 삼량초병설유치원   | 22 | 송○○ | 용인특수교육지원센터      |
| 3  | 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협의회  | 23 | 심○○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
| 4  | 권○○  |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 24 | 오○○ | 충북주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5  | 김○○  |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과   | 25 | 원○○ | 한국복지대학교         |
| 6  | 김○○  | 경동유치원         | 26 | 윤○○ | 서울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
| 7  | 김○○  | 용인세움어린이집      | 27 | 이○○ | 단설 양평유치원        |
| 8  | 김○○  | 연성대학교 특수재활학과  | 28 | 이○○ | 전남대학교           |
| 9  | 김○○  | 베다니어린이집       | 29 | 이○○ | 전교조 특수교육        |
| 10 | 김○○  | 송의여자대학교       | 30 | 이○○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
| 11 | 김○○  | 한국구화학교        | 31 | 이○○ | 장애영유아연대         |
| 12 | 김○○  | 성서대학교         | 32 | 전○○ | 경기도특수교육지원센터     |
| 13 | 김○○  | 전교조 전북지부      | 33 | 정○○ |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공주대 |
| 14 | 류○○  | 부암어린이집        | 34 | 정○○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
| 15 | 박○○1 |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 35 | 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
| 16 | 박○○  | 밝은학교          | 36 | 조○○ | 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
| 17 | 박○○2 |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 37 | 조○○ | 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센터  |
| 18 | 박○○  | 꿈고래어린이집       | 38 | 함○○ | 보육노조            |
| 19 | 배○○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 39 | 홍○○ | 발달연구소           |
| 20 | 백○○  | 충신대학교         | 40 | 황○○ | 국립특수교육원         |

〈부표 5-2〉 전문가 의견 조사 세부 내용 정리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1                                                   | 배○○ | <p>장애영유아가 어떤 교육, 보육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르고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함.</p> <p>장애영유아들이 교육/보육을 받는 기관의 선택을 부모가 하지만 이들이 균등하게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배치의 체계적인 규정, 장애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적격성 체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함. →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유형 용어가 상이하여 지원체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예, 유치원의 통합교사와 어린이집의 통합교사)가 있기 때문에 협력적인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교육과 보육현장에서 용어를 일관성있게 통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함.</p> <p>현재 통계자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통계자료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확인해야 함. →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종합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재정비를 통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장애영유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함.</p> |
| 2                                                   | 김○○ | <p>통계마다 장애영유아의 수가 다른 이유는 현재 기관(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유아의 수는 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를 보고하는 주체는 각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는 정확할 수 있으나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영유아는 발달지체로 진단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장애유형을 교사가 자신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임의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지니지 않은 보육교사의 경우는 더욱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장애 외에는 의사들도 간혹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전공지식을 지니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자신의 판단보다는 의사의 진단을 따르는 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유형 판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p> <p>잘못된 통계는 유아특수교사의 수급 문제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의 대상이므로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p>                               |
| 3                                                   | 김○○ | <p>- 공적 서비스의 적격성 판정(예, 의무교육대상자, 장애아보육대상자, 바우처지원대상자 등)과 대상자 요구에 근거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필요함.</p> <p>-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보육대상자로 적격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교육 지원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p>                                                                                                                                                                                                                                                                                                                                                                                                                                                                                                                                                                                                          |
| 4                                                   | 정○○ | <p>장애 영유아 현황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병원, 기타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 현황이 필요함. 따라서, 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장애인통계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보다 이들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가정, 기타 시설 등에 속한 장애영유아 파악에서 동일한 용어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종합통계가 어려우므로 장애영유아 현황파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함.</p>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5                                                   | 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수교육 통계에는 집계가 되더라도 장애인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누락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li> <li>-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법적으로 보장된 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위해 예산,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함. 이에 종합통계가 반드시 필요함.</li> </ul>                                                                                                                              |
| 6                                                   | 권○○ | 장애영유아관련 통계관할 부처가 일원화되어야 보다 정확한 장애영유아에 관한 통합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그로 인해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임.                                                                                                                                                                                                                                                                                                                                                                                   |
| 7                                                   | 김○○ | <p>장애아분류-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선정에 따라 동일한 장애진단명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장애아어린이집의 경우 등록장애인 외 진단서(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심리검사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등)를 여러 병원에서 발급하다보니 의사에 따라 상이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p> <p>이분화된 통계방식-어떤 교육이나 지원도 받아야 할 대상의 수나 조건 등 기본자료가 명확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국가재정낭비도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나눠져있는 실정이라 통계마저도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 모든 것은 정확한 통계의 부재는 결국 제대로된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려 각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자기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행정 편의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아이들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함 반드시 종합통계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함</p> |
| 8                                                   | 김○○ |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은 조기 진단과 교육이 중요하므로 연령이나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하나의 통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 혜택을 지원 받는 것이 영유아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이나 기관유형에 따라 관리하는 부처가 다름에 따라 연령 간 연계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영유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통계시스템이 필요해보입니다.                                                                                                                                                                                                          |
| 9                                                   | 박○○ | <p>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종합통계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 수립이나 요구안 등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 이들을 위한 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사교육시장에서는 느리고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기행적인 행태의 치료교육 방법,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치료접근으로 아이들의 조기중재 시기를 늦추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p> <p>종합적인 통계의 근본 필요성은 국가차원에서 조기중재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p>                                                                                                                             |
| 10                                                  | 홍○○ | <p>1) 아동권리의 측면<br/>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특수교육 아동에 대해 아동권리의 4가지 원칙(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비차별 원칙, 생존 발달 보호의 원칙,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을 고려해 보았을 때 종합통계를 통해 영유아가 관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p> <p>2) 발달에 적절한 교육서비스의 필요성<br/>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은 차이가 있으나 발달과정을 연속 선상에서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관된 통계를 통해 이용현황이 파악되어야 함.</p> <p>3) 교육/보육의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br/>일관된 기준을 통해 장애아동을 선정하고 개별아동의 발달 선상에서 아동의 기능, 교육내용, 교육형식을 계획하는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칙을 가져야 함. 이를 위해서 통계자료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임.</p>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p>4) 교육/보육인력개발을 위한 기초자료</p> <p>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치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일상적으로 치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각기관에 배치하는데 통계자료가 필요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면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li> <li>- 기존의 비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li> <li>-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담당교사간의 협력적인 교사근무환경 조성</li> <li>- 장애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실행</li> </ul> <p>5) 장애구분의 적절성을 고려하기</p> <p>특수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기준이 현재 시각, 청각, 지적장애, 지체, 정서행동, 자폐,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로 구성되어 있음. 이 내용이 영유아에게 적용했을 때 적절한 구분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특히 발달과정에 있으며 발달적인 특성이 분명한 영유아의 경우에 좀 더 추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대상 영유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현장사례를 반영하여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p> <p>예)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례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지원사업에서 경험한 사례</p> |
| 11                                                  | 김○○  | <p>실제 용어의 수정부터 필요한 것 같다. 장애영유아로 기술할 것인지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유아특수교사로서 교육하는 유아들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들이 모두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그 두 기관조차 이용하지 않아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아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는 단순히 장애영유아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아와 관련해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장애영유아 종합통계 이후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는지가 궁금하다.</p>                                                                                                                                                                                                                                   |
| 12                                                  | 조○○  | <p>데이터 구축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의아한 부분입니다.</p> <p>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통계를 통해 조기중재 측면에서 관련서비스 구축, 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도중복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지체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등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p>                                                                                                                                                                                                                                                                                                                                                                                                                                                                                                                                    |
| 13                                                  | 박○○1 | <p>1) 현재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은 영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무상교육대상자이며,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은 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p> <p>더불어 장애영유아는 우선보육대상자임. 이에 따라 국가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책무성을 지님</p> <p>통계 자료는 국가적 책무성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각종 예산과 운영에 따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자 근거가 될 수 있음.</p> <p>2) 보육통계 및 통계청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통계 자료는 장애 진단을 목적으로 한 통계치이며 그 통계자료는 장애인 복지법에 제시된 장애유형을 근거로 함. 장특법에 따른 통계자료는 교육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p> <p>이처럼 통계자료 수집의 목적이 상이한 바,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의 목적이 교육적 지원을 위한 것이고 교육법을 근거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목적에 적합한 종합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p>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14                                                  | 박○○2 |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br>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많은 장애영유아들에게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상태에 기반한 장애명 뿐 아니라 교육적 필요를 강조하는 진단이 필요하기때문에 하루빨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유형 파악이 필요함                                                                                                                                                                                                                                                                                                                                                                                                                                                        |
| 15                                                  | 오○○  | 현재 우리나라는 만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만3~5세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으나, 의무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과밀학급으로 인한 배치 부결, 근거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돌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을 선택 등)로 국·공립·사립 교육기관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유치원과 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교육 받고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의 통계는 추후 장애영유아 즉,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 정책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 16                                                  | 이○○  | 한기관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각자 조사했을 때 중복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서비스 지원에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한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해당 부서에 안내해주면 혼란이 없을 것 같음.                                                                                                                                                                                                                                                                                                                                                                                                                                                                                                        |
| 17                                                  | 전○○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지원 방식 이원화는 행정적 불편함, 재정적 낭비, 관리의 비효율화 등을 수반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이러한 방식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실질적인 보호자의 편의 증진과 지원의 효율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간의 영역 나눔, 교육과 보건의 다름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지원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통계를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그 시작이라 생각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더 늦지 않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가정, 시설, 어린이집 등에 있는 경우는 형식적인 파악에 그칠 뿐 장기적인 측면의 학부모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장애영유아 학생들이 취학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해 진학과정에 필요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통계는 당연히 필요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 18                                                  | 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만3세~만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장애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애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각각 분리되어 집계되고 있음. 일원화된 통계체제가 갖추어져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물론 관련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움.                                                                                                                                                                                                                                                                                                                                                                                                                                                                 |
| 19                                                  | 권○○  | 어떤 일이든 정책을 생산해내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대책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는 무엇보다 정확해야만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적용하여 장애(장애인복지법에 상의 등록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p>이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통계청의 장애인 통계의 경우 장애인등록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를 (특수)보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대한 이해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장애인 통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합칠 수는 없으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는 필요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장애유아와 관계없이)이든 (특수)보육의 대상(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 장애인)이든 두 대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대책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통계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최소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종합통계를 작성하고 종합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p>                                                                                                                                                                                                                                                                                                                                                                                           |
| 20                                                  | 강○○ | <p>우리 나라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법안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 정책과 제도 실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현장의 요구와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자료는 많은 연구 및 정책 자료의 기본적인 활용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중재들이 제안되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현장의 통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부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교육 정책이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유아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유아를 지원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통합된 자원체계 및 교육정책을 마련하는데 종합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육(특수학교 유치원,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등) 분야 뿐 아니라 보육(전문 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등)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장애인 복지관 내 조기교육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등)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p>                                                                                                                                    |
| 21                                                  | 이○○ | <p>첫째,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b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만 3세부터 만 17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다. 그러나 현재 만 9세 이하 장애아동의 80.5%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장애아동의 약 30% 정도는 어린이집(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이순자, 나성식, 이효숙, 2017). 단 이것도 장애아동의 전국 추정수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것은 장애발견 즉시 조기교육을 제공하여 재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경감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장애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기관인 유치원 내에서의 통계치에도 포함이 안되고 있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학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는 전문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의 배치와도 연계된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유아 종합통계 체계를 갖추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 그리고 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고 교육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br/>         둘째,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br/>         발달이 지체되거나 장애를 지닌 영유아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조기발견을 통한 중</p>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개가 중요하며 생애초기 경험의 양과 질이 이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영아를 조기 발견하여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하는데 있어 대상자의 파악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아동의 종합통계는 교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관련 치료실(예;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이나 관련 상담기관 등과도 연계된 형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
| 22                                                  | 원○○ | 장애 아동에 관한 정책 입안이나 예산 책정, 지원 정책, 기관 설치, 교사 수급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 아동의 통계가 필요함<br>복지부 관련 장애인 통계는 15개 장애 유형으로 분류, 특수교육통계 10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br>보육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음                                                                                                                                                                                                                                                                                                                                      |
| 23                                                  | 류○○ | 교육부 장애아동통계 6975명, 복지부 장애아동 통계 12,229명임<br>말그대로 교육부 장애유아의 근거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자이고, 복지부 장애보육 대상자는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자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유형해당자이고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 해당자이고 하니 내용상 모두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통계가 공유되지 못함으로 인해 각 부처마다 타 부서의 장애영유아는 0로 파악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반쪽짜리 편협된 정책이 나오고 결국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결과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음.                                                                                                                                                          |
| 24                                                  | 김○○ |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발달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특히 발달 시기를 놓칠 경우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발달지연(지체) 영유아의 조기발견, 조기중재가 매우 중요함.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로 다른 통계를 사용하고 있어 대상자 관리 뿐 아니라 적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중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와 통계가 필요함.                                                                                                                                                                                                                                                                        |
| 25                                                  | 이○○ | 장애아동은 어린이집 선택시 특수교육 통계집계에서 제외되며 이미 대상자가 되었어도 취소를 해야됨(교육바우처 대상취소를 위함)<br>행정적편의에 의해 누락된 장애유아는 학교 입학시 특고자선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취학안내부터 적극적인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은 안내문 정도이며 이미 가정통신문을 자주 접한 부모들은 주의깊게 보지않는 경향이 있음. 비장애부모는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발달지연아동은 장애등록이 안되면 특수학급 지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 현실임.<br>학교의 경우 9월 선정 결과에 따라 학급배치는 할수 있지만 학급설치는 빠듯하여 과밀학급편성이나 먼곳으로 배정되는 아동이 많은 상황.                                                                                                                                                   |
| 26                                                  | 심○○ | 특수교육통계의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치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3,303명이고 장애영아는 288명이다. 2021년 현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는 7,197명이고 장애영아는 369명이다.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장애영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br>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만0세~2세의 장애영아의 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그 수가 300명대인 반면에 만3~5세가 되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는 장애영아의 숫자보다 10배 이상 급증한다는 것이다.<br>이러한 모습은 특수교육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아 시기에도 분명히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어디선가 기회를 기다리는 영아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특수교육을 받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혹은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영아시기에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에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p>정보를 알고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p> <p>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영유아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의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실현과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의 수를 파악하고, 장애영아를 위한 영아학급과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특수 학교(급)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
| 27                                                  | 이○○ |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3-5세의 유아 중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발달이 지연된 유아가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특수교육기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기도 하다.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의 보호자가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알게 된 계기 '주변 사람의 안내'가 49.7%로 가장 높았다. 현재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은 소속기관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분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통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특수교육의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에 대한 조사는 기관별 이용자수 정도이며,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는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소속된 기관은 다르지만 모든 장애 유아는 특수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아래 특수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아들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들의 명확한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p>                                                                                                                                                                                                                                                                                                     |
| 28                                                  | 김○○ | <p>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서 예비교사들에게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하는데 있어서 전체 장애영유아 명수와 이들이 특수교육 및 지원받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주는 일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매우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교육부 산하 특수학교의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통계에서 인용하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에 소속된 장애영유아는 보육통계에서 발췌하여 인용하나 두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시기도 다르고 매년 다시 자료를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모아 종합하는 번거로움뿐 아니라 부정확한 통계 수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확률이 있음</li> <li>- 장애종합사회복지관의 조기개입프로그램, 아동재활병원, 기타 치료지원을 받거나 가정에 있는 장애영유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음</li> <li>-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수는 더 적음. 영유아 시기는 낙인 효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 뚜렷하여 부모에 의한 장애아동 등록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수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음</li> </ul> <p>전체 장애영유아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에 영유아시기의 장애유형별 분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힘들어 특수교육통계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전체의 장애유형별 분포에서 유추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 시기의 진단 및 평가, 중재,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매우 부정확한 자료만 있는 실정임</p> <p>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나라 전체의 장애영유아의 수와 장애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록이 없다고 여겨지며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이며 연계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료됨</p> |
| 29                                                  | 정○○ | <p>1)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가 구분되어 있음<br/>(예: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분야에서 관리 지원)</p>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p>2) 장애인의 범주 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음</p> <p>3) 교육과 보육의 주관부서가 다름, 주관부서가 다름으로 예산 출처가 다름, 이런 상황에서 하위 조직에서 협업을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p> <p>4) 그럼으로 인해 중복 지원, 유사 지원, 업무처리의 일관성 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p> <p>5) 특히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의무교육대상임에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뿐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p> <p>6) 의무교육 체제안에서 가정보육을 홈스쿨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도 명확하지 않음</p> <p>7) 각각의 통계를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관심영역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통계수치의 불명확성이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이어지며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p> |
| 30                                                  | 김○○ | <p>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가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려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관 유형에 따라 장애유형도 다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고 사실상 보기 어려움.</p> <p>또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특법에 나와 있는 장애유형으로 장애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가 절실히 요구됨.</p>                                                                                                                                                                                                                |
| 31                                                  | 손○○ | <p>영유아 나이에는 처음 장애로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많고 생애주기별 지원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짐에도 현장에서는 총 장애영유아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장애영유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까지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이 그에 맞는 진단 및 교육과 치료를 고민해보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짐.</p> <p>또한 현재 법적으로 장애로 진단받기 시작하면서 영아는 무료, 3세부터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 관리부터 지원, 교육까지 혼선을 초래함.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지금보다 경증의 아이들도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렇기 때문에 미리 통일된 체계와 통계로 혼선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p>                       |
| 32                                                  | 권○○ | <p>영유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계를 각각 다르게 관장하는 있는 통계관리 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동일 연령대의 한 집단임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에 기관 이동이 발생할 경우 대상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될 가능성을 높음.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파악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에 대한 통계관리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p>                                                                                                                                                                                                                    |
| 33                                                  | 백○○ | <p>정책의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학령전기로서 영유아시기의 연속성 있는 통계 확보가 욕구 파악을 위해 효과적인 것임. 그러나 이 시기의 특성상 장애영유아라고 규정 짓기가 힘든 시기이므로 누구를 모집단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p>                                                                                                                                                                                                                                                                                                                                     |
| 34                                                  | 함○○ | <p>모든 기관들이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복지와 교육을 지향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선 주춤한다.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의 복지나 교육권이 차별받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과 치료방법이 다 다르므로 사각지대의 장애영유아가 없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영유아들의 정보가 사각지대 없이 어느 기관에 가던 동일한 복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통계가 꼭 필요하다.</p>                                                                                                                                                                                                                               |
| 35                                                  | 윤○○ | <p>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는 장애영유아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p>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p>나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현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p> <p>그러나 현재 영유아가의 발달지체 혹은 장애 영유아들은 정확한 수마저 추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발달지체/장애 영유아들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조기발견의 통로가 매우 다양하며, 이후의 배치 역시 가정, 공적 서비스기관(유치원/어린이집), 사적 서비스기관(낯병동, 복지관, 발달센터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영유아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를 등록한 영유아만이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각각 통계가 진행되다 보니, 영유아 중복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도 속한 기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 따른 통계에서 벗어나, 장애영유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통계를 실시하는 것은 이후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지원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영유아가 몇 명인지, 각각의 장애 영역은 어떠한지, 어떤 환경에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 통계가 꼭 나오기를 특수교육 종사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p> |
| 36                                                  | 황○○ | <p>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특수교육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며,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는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장애인 통계는 장애인 정책 수립, 사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로서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장애인 통계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영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p> <p>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가 통합될 때에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통합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떤 기관에 배치되어 있어도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교육 기관 설치, 특수교사 수급 등의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p>                                                                                                                                                                                                                       |
| 37                                                  |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관리,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입학 및 진학, 유예 학생에 관한 관리를 위해서 통계의 일원화는 꼭 필요함</li> <li>- 아동 수당, 유아학비와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의 흐름 또한 파악이 쉬울 것으로 판단됨</li> <li>- 교육 및 보육 정책이 모든 유아나 학부모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봄</li> </ul>                                                                                                                                                                                                                                                                                                                                                                                                                                                       |
| 38                                                  | 송○○ | 현재 통계조사가 일원화 되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향후 대상자 수요 예측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됨.                                                                                                                                                                                                                                                                                                                                                                                                                                                                                                                                                                                                                                                             |
| 39                                                  | 조○○ | <p>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드는 일임. 그런데 현재 장애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음.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다른 기준의 통계로 조사되고 있음. 더 시급한 것은 기관에 다니지 않는 장애영유아, 그리고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 중 경계선이나 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수치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p>                                                                                                                                                                                                                                                                                                                                                                                                                                                                   |
| 40                                                  | 김○○ | 1. 각 부처의 정책을 수행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통계자료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한 확대 방안이라는 명분으로서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평행 이동하는                                                                                                                                                                                                                                                                                                                                                                                                                                                                                                                                                                                         |

|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가 필요한 이유(장애유형이 다르게 설정, 접근이 다름 등) |  |                                                                                                                                                                                                                                                                                                                                                                                                                                                                                                                                                |
|-----------------------------------------------------|--|------------------------------------------------------------------------------------------------------------------------------------------------------------------------------------------------------------------------------------------------------------------------------------------------------------------------------------------------------------------------------------------------------------------------------------------------------------------------------------------------------------------------------------------------|
|                                                     |  | <p>해프닝뿐만 아니라 불평등한된 의무교육 상황을 확인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책의 수혜자인 장애유아의 관점에서의 조기 개입 시기와 방법의 질 높은 지원을 위한 종합 통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p> <p>2. 교육기관(보육시설 포함)의 출산을 저하로 인한 원아모집의 힘겨움과 부모의 장애에 대한 비수용적 심리적 불안 상황이 맞물려 드러나지 않는 많은 장애위험군 아동들이 적절한 조기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반 보육시설,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더해지면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장애영역 및 기관 중심의 통계 조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이지 못한 통계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p> <p>3. 장애아동 종합 통계 조사는 수량적 접근 보다는 조기개입 지원확대 방안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조기개입 지원은 어느 부처의 기관이든 일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부모가 장애 수용 정도 수준의 다양한 상황에 수용될 만하여야 할 것이다.</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1                          | 배○○ | <p>장애영유아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고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음.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영유아 중에는 진단서에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유형과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기준에 한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육관련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장애유형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의사 진단서로 입소한 장애영유아의 분류기준이 애매할 수 있음.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환아는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지원...'이라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경우, 임의로 「장애인복지법」의 언어장애, 「특수교육법」에서의 의사소통장애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 발달지연 항목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음.</p> <p>특수교육대상자 유형과 장애유형의 명칭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음.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이 「장애인복지법」과 달라서 서류 작성(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기초조사카드 작성)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p> <p>법의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서 장애유형을 통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특수교육법」에서 발달지체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수교육법」에서의 학습장애와 정서행동장애의 의미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위의 유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됨(글자에 대한 습득능력이 부족하다고 학습장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를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특수교육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특수교육법」이 「장애인복지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용어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음.</p> <p>「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체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청각장애), 지적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자폐성장애), 언어장애(의사소통장애)로 구분할 수 있음. 단, 「특수교육법」의 건강장애와 「장애인복지법」의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장애인의 분류가 상이하여 분류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와 정</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     | <p>서행동장애,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는 장애영유아 시기에 분류하는 것은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영유아기 또는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연령시기의 통계자료는 각 법의 장애유형의 포함기준을 명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등의 통계자료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을 삽입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음.</p>                                                                                                                                                                                                                                                                                                                                                                                                                                                                                                                                                                                                                                                                                                                                                                                                                                                                                                                                                                                                                                                                                                                                                                                                                                                                                                                   |
| 2                          | 김○○ | <p>특수교육통계와 장애영유아 보육통계를 통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p> <p>우선, 특수교육통계는 특수교사가 교육청의 공문에 의거하여 보고를 합니다. 보육통계도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첫째,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장애영유아의 포함 여부입니다. 완전통합을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장애영유아는 분명히 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애 진단을 받아서 부모의 의지에 따라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마땅한 교육 기관이 없어서 가정에서 전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서 가정양육을 받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어떻게 발견하고, 통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만 통계에 포함시킨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유아특수교사의 수급 문제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의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p> <p>둘째, 기관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장애영유아의 포함여부입니다. 아래의 3번 문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특수교육 통계의 경우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학급과 순회학습,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배치(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결정)를 받아 유아특수교사로부터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받지 않으면 복지카드가 있다고 해도 특수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은 부모 혹은 보호자가 해야 하며 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배치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장애영유아 통계에서 누락이 될 것입니다.</p> <p>보육통계의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이 통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유아들은 복지카드가 있거나 장애진단 코드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첨부되어 있는 의사의 진단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지닌 유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구할 때 해당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유아가 장애진단을 받고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들 역시 통계에서 누락될 것입니다.</p> <p>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부모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특수교육을 받고자 원한다면 통계에 포함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누락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통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p> |
| 3                          | 김○○ | <p>- 장애영유아 중 복지카드를 받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기.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해당되는 범주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로 동일함.</p> <p>-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의사진단인 경우에는 '발달지체'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계에 제시하기.</p>                                                                                                                                                                                                                                                                                                                                                                                                                                                                                                                                                                                                                                                                                                                                                                                                                                                                                                                                                                                                                                                                                                                                                                                                                                                                                                                                                    |
| 4                          | 정○○ | <p>특수교육대상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합된 전수 조사 결과</p>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p>필요함. 따라서, 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에서 통합하는 것은 장애영유아의 수, 장애 현황, 배치현황등을 구분하여 통합 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하나의 기관에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각 기관에서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전 장애유형 등 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장애인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함. 통합방법에 대해서 육아정책연구소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박○○    | <p>- 기존 특수교육 통계에서 장애영유아 통계를 포함하여 집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 이유는 장애영유아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과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특수교육 통계를 근거로 수립하기 때문임. 만약 보육통계에 별도로 집계될 경우 초등학교 과정 관련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인 통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II-3.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 30<br/>II-4. 장애영역별 학생 수 / 42 와 같이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제시된 내용이 '과정별 학급 및 대상자 수'로 수정되어야 함.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던 통계결과가</p>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학교별(수)</th><th rowspan="2">장애영역</th><th colspan="7">학급 수</th><th rowspan="2">전체 학급 수 중<br/>가다 학급 수</th></tr><tr><th>계</th><th>장애영아</th><th>유치원</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h>특수학교</th></tr><tr><td>전체</td><td>187</td><td></td><td>5,114</td><td>39</td><td>288</td><td>1,783</td><td>1,135</td><td>1,165</td><td>694</td><td>8</td></tr></table> <p>장애 영아,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집계되어야 함.</p> <p>- '장애영역별 학생 수'도 '장애영역별 대상자 수'로 수정되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를 포함하는 법적용어인 '대상자'로 용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p> <p>- II-9.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현황 / 68 에서만 제시되는 유치원 과정 특수 교육 현황도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음.</p> | 구분    | 학교별(수) | 장애영역 | 학급 수  |       |       |      |   |  |  | 전체 학급 수 중<br>가다 학급 수 | 계                    | 장애영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전체 | 187 |  | 5,114 | 39 | 288 | 1,783 | 1,135 | 1,165 | 694 | 8 |
| 구분 | 학교별(수) | 장애영역                                                                                                                                                                                                                                                                                                                                                                                                                                                                                                                                                                                                                                                                                                                                                                                                                                                                                                                                                                                                                                |       |        |      | 학급 수  |       |       |      |   |  |  |                      | 전체 학급 수 중<br>가다 학급 수 |      |     |      |     |      |      |    |     |  |       |    |     |       |       |       |     |   |
|    |        |                                                                                                                                                                                                                                                                                                                                                                                                                                                                                                                                                                                                                                                                                                                                                                                                                                                                                                                                                                                                                                     | 계     | 장애영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87    |                                                                                                                                                                                                                                                                                                                                                                                                                                                                                                                                                                                                                                                                                                                                                                                                                                                                                                                                                                                                                                     | 5,114 | 39     | 288  | 1,783 | 1,135 | 1,165 | 694  | 8 |  |  |                      |                      |      |     |      |     |      |      |    |     |  |       |    |     |       |       |       |     |   |
| 6  | 권○○    | <p>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한 아동이 특수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관할 부처도 다른,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전체 장애영유아의 수, 유형, 보육아동/교육아동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보건복지부든 교육부든 하나의 부처에서 통계를 내는 통계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영유아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김○○    | <p>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활용하여 통계를 한다면 추가로 연구방법을 위한 비용이나 기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영유아의 경우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모든 아이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p> <p>다만 선정에 따라 배치하는 절차에서 모든 문을 열어두고 부모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 및 객관적인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p> <p>단,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보강 및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김○○    | <p>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특수교육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보육통계 자료를 보니 장애아전담이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수나 교원 확보 현황을 중심으로 통계가 보고되고 있는 거 같은데 특수교육통계처럼 장애영역별 학생 수나 순회지도 현황과 같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박○○    | <p>장애영유아들이 통계에 필요한 이유가 '지원' 때문이라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통</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     | <p>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명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원에 위한 명칭과 교육지원을 위한 명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영유아의 지원이 복지와 교육 중 어느것에 더 필요한지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에 대한 통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후 성장하면서 부모의 심리적 장애 수용 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0-2세는 교육부에서 무상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0-2세의 경우 교육 진단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영유아의 교육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시도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의 자원을 활용해 지원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영유아 통계는 교육부에서 분류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 10                         | 홍○○ | <p>1) 장애아동에 대한 분류기준이 적절해 보임.</p> <p>2) 추가될 장애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심의 사례를 반영하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지원사업에서 경험한 사례를 통계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p>3) 2)번에 제한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기타영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음. 『경계선(borderline)』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즉, 현재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반학급에 적응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영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p> <p>* 경계선에 대한 영역: 언어, 인지, 발달등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 이들 영유아에 대한 진단이나 기준이나 전문가의 소견, 소견서 작성자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야 함.</p>                                                                                                                                                                                                                                                                                                                                                                                                                                                                                                                                                                              |
| 11                         | 김○○ | <p>먼저 보육통계(장애영유아 현황)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들을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해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은 어디서 할 것이며 (아마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가 되겠지요) 선정은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을 특수교육통계에 넣는 방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주체가 어린이집 교사이므로 특수교육통계 작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p> <p>전반적으로 우리의 유아교육이(유아특수교육 포함) 일원화된 시스템 안에서 유아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원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육통계(장애영유아 현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장애영유아와 관련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현재 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1차적인 통계 자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자료에서 담고 있는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우선은 그 내용적인 차이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적인 차이를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참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관유형에 따라 장애유형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점을 먼저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동일한 내용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p> <p>따라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인지에 대한 선정 여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원 보충 및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이후 배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p> <p>즉 저는 종합통계와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     | 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종합통계를 실시하는 것보다 우선은 각각에서 실행되고 있는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 종합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 12                         | 조○○ |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영유아를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방법                                                                                                                                                                                                                                                                                                                                                                                                                                  |
| 13                         | 박○○ | <p>☞ 교육(보육)이 목적인 경우 교육지원을 근간으로 해야 하므로 장특법에 제시된 특수교육대상자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함.</p> <p>이때 특수교육대상자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취합되는 것이 적절함</p> <p>1)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선별과 대상자 발견)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 (장애 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장애 진단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장애 진단 또는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실시</p>                                                                                                                                                   |
| 14                         | 박○○ | <p>1.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유아의 경우 최소한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검사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경감과 보호자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함)</p> <p>2.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게 되면 통계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p>                                                                                                                                                                                                                                            |
| 15                         | 오○○ |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실시해야만 결과가 통일될 것 같음. 하나의 기관은 교육부가 될 수도,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아니면 제3의 기관의 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기관(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장특법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장애명으로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음.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영유아의 경우 어떠한 선정기준으로 어떤 기관에서 장애영유아로 선정하는지에 대해 모르겠음. 장애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단기관(병원, 발달센터 등)에서 발달의 지체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나 진단서로 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영유아의 숫자 파악에도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항목으로 통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16                         | 이○○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통합이 되면 그 뒤에 따르는 각기관 사업의 지원에 혼란이 예상되어 충분히 논의 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서 조사를 하되 어린이집 현황이나 자료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 17                         | 전○○ |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통계의 장애유형 중 발달지체 항목에 보건복지부 상의 상이한 장애영역을 추가 기입 할 수 있게 하여 특수교육통계에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정, 어린이집, 시설 등으로 배치가 아닌 현황 정도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18                         | 정○○ | <p>1안: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통합 방안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육통계로 집계된 장애영유아에 관한 데이터를 특수교육통계에 포함시켜 특수교육대상자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p> <p>2안: 각각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등)를 통계청에서 취합하여 전체 장애영유아에 대한 종합통계 마련, 관리</p> <p>이때, 장애등록을 한 장애영유아는 복지카드에 명시된 장애명으로 집계, 미등록 영유아는 의사소견서나 배치신청서에 명시된 추정장애명을 활용하여 정확한 대상자의 수 파악은 물론 장애유형도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19                         | 권○○ | <p>특수교육통계에서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보육통계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복지법)된 영유아를 (특수)보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통계와 장애영유아 통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필요 유무와 장애 등록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영유아로 포함시킬 경우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가 등록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종류에 '발달지체'라는 장애명이 포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 영유아에게 장애명의 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달지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주양육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시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등 의료적 처치나 지원이 중요한 장애영유아까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 실제 유치원에서 필요충분한 의료적 처치나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전체를 장애영유아로 포함하거나 장애영유아 전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통계를 작성하되, 두 통계자료를 집합의 포함관계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하나의 종합통계 양식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안으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영유아 모두를 '장애영유아' 카테고리 포함시켜 묶고, '발달지체'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대부분의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영유아'로 포함(학습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는 없지만 학습장애로 선정받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령기에 이루어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달지체'로 선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또한 분명히 존재하므로 '장애영유아'와 '발달지체 영유아'의 두 가지로 범주화시켜 종합통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통계</p> <p>특수교육통계</p> <p>장애영유아 통계</p> <p>발달지체</p> <p>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 장애영유아</p> <p>〈1안〉</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통계</p> <p>장애영유아</p> <p>발달지체</p> <p>〈2안〉</p> </div> </div> |
| 20                         | 강○○ | <p>교육통계나 보육통계는 결국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도 장애 영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법적, 제도적 근거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통합어린이집, 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내 장애영유아, 장애인복지관 내 조기교육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학급 등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 21                         | 이○○ | <p>다음의 방법을 모두 포함되게 하는 방법<br/>         첫째, 유치원을 이용하던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방법<br/>         둘째, 병원을 통해 발달지체나 장애관련 치료를 받은 기록을 토대로 장애진단 및 (예비)특수교육대상자 발굴을 확대해 가는 방법<br/>         셋째, 민간 장애관련 치료실 기록(정보)도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여 통계작성 하는 방법</p>                                                                                                                                                                                                                                                                                                                                                                                                                                                                                                                                                                                                                                                                                                                                                                                                                                                                                                                                                                                                                                                                                                                                                                                            |
| 22                         | 원○○ | <p>-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로 통합<br/>         -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 대상자이므로 바우처 이용 인원을 파악하여 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로 같이 잡아도 될 것 같다. 이때 바우처 지원이 교육부와 복지부 중복 사업임</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23                         | 류○○ | 지금 현황에서는 각각의 통계를 합하여 다시 관장하는 부서를 두거나 (예-장애인 통계) 아니면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쓰는 장애유형을 영유아기에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조정하던지 해서 통계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법은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한 입소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 24                         | 김○○ | 통계의 목적이 특수교육, 조기중재가 필요한 영유아를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체계를 따라 특수교육통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영유아기에 발견되어 일생 동안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중고 시기와 연계에서도 용이함.                                                                                                                                                                                                                                                                                                                                                                                                                                                                                                                                                                                                                                                                                                                                                                                                       |
| 25                         | 이○○ | 1, 장애영유아로 선정해도 가능함.<br>장애등록시 장애유형이 기록되니 그것을 기반으로.<br>2, 학습장애로 명칭제한<br>통합어린이집의 대다수 아동은 발달지연소건으로 입소가 가능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이 많음                                                                                                                                                                                                                                                                                                                                                                                                                                                                                                                                                                                                                                                                                                                                                                                                                                                |
| 26                         | 심○○ | 장애영아(혹은 만0~2세): 영아학급,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br>특수교육대상유아(혹은 만3~5세): 특수학급, 특수학급, 순회교육,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br>* 중요한 것은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 현황파악, 그리고 앞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의 개발이 필요                                                                                                                                                                                                                                                                                                                                                                                                                                                                                                                                                                                                                                                                                                                                                   |
| 27                         | 이○○ | 현재 특수학급 신증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유아들 수만 파악해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충분한 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수와 장애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보여 보건복지부 발달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수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유무, 이용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에 담아내면 교육부와 각 시·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발달선별 검사 결과와 연계해서 파악 했으면 한다.                                                                                                                                                                                                                                                                                                                                                                                                                                                                                                                                                                                                                                                                                         |
| 28                         | 김○○ | 장애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되도록 빨리 장애를 발견하고 효과가 검증된 중재를 실시하여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고 특수교육 체계 안에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됨<br>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007) 제3조에 의하면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8조에 의하면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보장함<br>따라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도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법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출발선으로 하여 0-3세미만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대상자와, 3-5세 유아특수교육대상(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로 나누어 통계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함<br>0-3세미만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과 3-5세 유아특수교육대상(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로의 분류는 미국의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PartB(Assistance for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C(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로 나누어진 연령이자 DEC(Division for Early Childhood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의 권고도 이러한 연령 구분으로 이루어짐<br>0-3세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지원의 대상이 가족까지 포함하여 개별화가족지원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을 제공하고 3-5세의 장애유아에게는 현행수준 파악 후에 그에 따른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     | <p>Program/Plan: IEP)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2007)과 미국의 IDEA를 참고할 때도 3-5세의 장애유아와 더불어 0-3세미만의 장애영아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특수교육통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p> <p>현재의 특수교육통계와 보육통계를 참고해도 장애영아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움</p> <p>일반 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장애가 있는 영아가 함께 있으나 장애발견,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영아반(만2세)에서 장애통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육통계에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함</p>                                                                                                                                                               |
| 29                         | 정○○ | <p>1) 영유아 검진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연계된다면 통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p> <p>2)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내 육아정보센터와의 연계가 필수적임</p> <p>3) 연계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현재의 센터 교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p> <p>4)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도하에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p> <p>5)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시로 든 내용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함</p>                                                                                                                                                                                                                 |
| 30                         | 김○○ | <p>1. 장애로 등록되고 기관에 다니지 않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에 반영(주민센터에서 입력)</p> <p>2. 통합/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 반영(보육기관에서 입력)</p> <p>3. 통합/특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 반영(교육기관에서 입력)</p> <p>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3~6개월 이상 발달이 지체된 경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기관 배치가 되지 않고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p>                                                                                                                                                                   |
| 31                         | 손○○ | <p>현재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치원은 등록증이나 진단서가 있더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법에서 제공하는 11유형으로 다시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p> <p>통합할 경우 기관 이용자와 미용자를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는 그 통계가 혼재되어 그 퍼센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는 곳에 대한 수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함.</p> <p>교사의 경우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제공해주는 곳,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공하는 곳, 그 수와 배출하는 교사 수, 현재 교사로 취업한 경우 등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넣는 것이 필요함.</p> |
| 32                         | 권○○ | <p>생후 5년까지의 의료기관 영유아발달 검사를 의무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혹은 의심)된 영유아를 통합네트워크(예를 들어 시군구의 전담 부서나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보고해서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함. 통합네트워크의 신설 및 확충이 어렵다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교육과 고등교육까지의 지속적인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특수교육통계에 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p>                                                                                                                                                                                                                                                               |
| 33                         | 백○○ | <p>영아시기도 조기발견과 개입이 필요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이후 유아기로의 성공적인 전이도 필요하므로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할 듯함.</p>                                                                                                                                                                                                                                                                                                                                                                                                  |
| 34                         | 함○○ | 의견없음                                                                                                                                                                                                                                                                                                                                                                                                                                                                                                 |
| 35                         | 윤○○ | <p>현재 보육통계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과 그에 따른 종사자 수를 파악하는 등 장애영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구성</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     | <p>되어 있다. 반면 특수교육통계의 경우 장애유아의 수, 선정영역, 중복장애 여부, 장애인 등록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등 장애유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특수교육통계는 “발달지체”라는 선정영역을 통해 현재 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발달상의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집계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의 측면에서 발달상의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찾아내 지원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p> <p>그러나 현행 특수교육통계는 유치원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를 기준으로 하므로 타 기관(예: 어린이집 등)에 속해 있는 장애영유아들을 포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특수교육통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리되 다양한 환경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p>                                                                                                                                                                                                         |
| 36                         | 황○○ | <p>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통계에서 수치가 된 장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된 유아, 장애 진단을 받은 유아, 단순히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를 받은 유아 등 다양한 대상자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p> <p>특수교육의 법적인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의무교육 간주 조항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부모가 책임감있게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특수교육 기관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린이집의 간주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로서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교육기관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에 적합하며, 이러한 통계는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p> |
| 37                         | 이○○ | <p>-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가정 육아를 하고 있는 영유아 중 병원진료(영유아발달검사)를 통한 발달지체 혹은 정밀평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는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교육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진단평가기관에 의뢰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보육)기관으로 통보되어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보건복지부, 교육부)으로 연결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p> <p>-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유아의 장애특성에 필요한 맞춤형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p> <p>-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유아는 검사기관에서 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시스템 일원화</p>                                                                                                                                                                                                                           |
| 38                         | 송○○ | <p>유치원의 경우 현행처럼 유지(특수교육대상자 영역별로 선정)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학급에 있는 대상자의 수만을 기입. 이때 문제는 영역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발달지체로 선정받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크게 영역이 의미없다고 생각함.</p>                                                                                                                                                                                                                                                                                                                                                                                                                                                                 |
| 39                         | 조○○ | <p>단일한 항목을 정하는 것이 우선임. 장애명도 좋지만 발달지연이나 발달지체로 분류되는 영유아의 대부분이 ‘언어장애’로 진단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80프로 이상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영유아기에 명확히 진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임</p>                                                                                                                                                                                                                                                                                                                                                                                                                                                                        |
| 40                         | 김○○ | <p>1. 기관 중심의 통계자료조사 보다는 접근성이 가능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자료수집이 되어야 한다.</p> <p>2. 장애유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의 분류 및 장애 등록을 조장(학교 진학 시)하는 자료 수집은 지양되어야 한다.</p>                                                                                                                                                                                                                                                                                                                                                                                                                                                          |

| 2. 어떤 항목을 통합해야하나? 어떤 방법으로? |  |                                                                                                                                                                     |
|----------------------------|--|---------------------------------------------------------------------------------------------------------------------------------------------------------------------|
|                            |  | <p>3. 현 영유아검진을 1차적 자료수집원의 기준으로 삼고 추가 검진 개입 방법에 대한 고찰로 통계조사 수행 (특수교육대상자로의 분류보다는 지원대상자로의 개입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p> <p>4. 장애위험군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지원대상자)로 수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p>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1                                                                            | 배○○ | <p>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장애영유아, 시설에 있는 장애영유아의 통계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총괄 역할을 하는 행정부처(예, 교육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교육 업무가 대부분 초등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유아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각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에 통합교육/보육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관련 부처 간 현행 제도와 규정이 연계되고 상호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원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에서 통합 관할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
| 2                                                                            | 김○○ | <p>현재 기관 미이용자나 장애위험군에 포함되는 영유아는 통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통계관리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p> <p>첫째, 기관 미이용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에게 발급한 복지카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영유아에게 발급된 복지카드의 수를 파악한 후 기관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선별합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복지카드 발급을 부모님들이 꺼리는 경향이 농후하므로 상당수의 누락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p> <p>둘째, 위험군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차부터 8차까지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밀평가권고를 받은 수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정밀평가 권고대상 영유아가 정밀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정밀평가 권고를 받고도 부모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서 상당수의 누락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정밀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가 장애인단을 받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제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에 의거하여 위험군이나 장애군 유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관리할 부처나 기관이 결정된다면 건강검진 수검자의 건강 및 질병통계를 확보하여 장애영유아 통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건강 및 질병통계의 방식을 확인하고 장애 위험군이나 장애군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통계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br/>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125호, 2007. 12. 26., 제정]<br/>                     제12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검진 결과의 활용에 대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동의서를 보관한다.<br/>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자의 건강 및 질병통계를 매년 생산하여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br/>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에 동의한 수검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에 제공하여 「지역보건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p> </div>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3                                                                             | 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 영역 한 개 이상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기(건강관리보험공단 관련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
| 4                                                                             | 정○○ | 교육, 보육, 복지, 의료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 정보를 통합하는 부처를 현재의 기관 중 하나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5                                                                             | 박○○ | -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 지속적인 예산 지원,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 특수교육통계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br>- 기존의 특수교육 통계에 준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6                                                                             | 권○○ |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매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러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한다면 기관미이용자, 가정양육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까지 포함하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단, 영유아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 또는 장애의심 아동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2번에서 제시한 의견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영유아 통계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 7                                                                             | 김○○ |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제도는 아무래도 기관이용을 위해 직접 찾아오는 장애영유아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미이용자들 통계까지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인구조사하듯 별도의 찾아가는 방법을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던지 아니면 보건소나 가족지원센터(발달장애인) 등 별도의 기관에서 그 부분을 채우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봄.<br>독거노인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생활교사 등)가 일일이 담당노인을 찾아가 관리하듯 장애아동을 위한 관리도 기관이용아동에 그치지않고 가정이나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관리해야 된다고 봄                                                                                                                            |
| 8                                                                             | 김○○ | 기관 미이용 장애 영유아를 찾아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통계상의 누락되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아과나 보건소를 통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의사의 리퍼럴을 의무로 해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생기는 기관 미이용과 기타 다른 이유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는 통계청 장애인통계와 연계되어 특수교육 통계 안에도 대상이지만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로 포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유아의 수나 장애영역에 대한 통계가 조사되면 특수교사 양성이나 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 9                                                                             | 박○○ | 장애영유아일수록 기관 미이용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가의 특성상 기관을 이용하지않고 부모와의 애착등을 쌓아가는 시간이 비단발은 이유는 없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장애영유아들이 먼저 만나는 기관은 병원이거나 사설 센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관은 대기가 길고 이용기간이 제한적이라 처음부터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위한 통계라면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영유아건강검진 이후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사전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br>(사담입니지만, 일전에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먼저 공문이 왔다면 이제 장애아들도 진단서 아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의사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런걸 보면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필수공문이나 회신자료,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     | <p>안내 리플렛 등으로 병원을 먼저 찾는 부모들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숙지를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발달지연된 아이들에게는 6개월 이상 치료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것이 먼저 지원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통계를 잡는것도 그에따른 지원에 대해 고민하는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6개월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 때 장애와 사회문화적인 결핍으로 인한 지연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시간 정도 되는 듯 하며 이는 장애의 진단에서도 활용되는 기간입니다. 부모들 역시 내 아이의 다름과 느낌을 받아들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장애를 받아들이 부모는 많이 없습니다. 여태 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부모가 내 아이의 느낌을 받아들이 때 정서적인 상처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개인적인 부담이 아닌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후 자연스럽게 장애아동재활 바우처 또는 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와 연계 될수있게 안내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재활 바우처와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역시 시군구 별로 지원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건강검진 이후로 느낌을 발현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치료지원등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기간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필요합니다.</p>                                                                                                                                                                                                                                                                          |
| 10                                                                           | 홍○○ | <p>1) 기관 미이용자와 사각지대 장애 영유아 통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영아전담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것임. 현재 보건복지부에 보육정책관 내에 있는 보육부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에 대한 정책과 통계를 관리하고 장애인 정책국은 전 생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보육정책관 내에 독립된 기구로 장애영유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p> <p>2) 전체 특수교 대상 장애 영유아 통계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연립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기. 장애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이용 교육/보육/특수학교/기타 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만 6세 이후(초등입학시기 이후)부터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기</p> <p>3) 기관이용현황에 대한 통계와 관리</p> <p>(1) 0-2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복지부(국공립, 민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어린이집, 특수학교, 기관 미이용 영유아 등)</li> <li>: 구체적으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에 기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가능한 점에 제한이 있음. 전체적인 영유아에 대한 통계관리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보건복지부 내에 영유아 관리부서 신설 : 0-2세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를 담당</li> </ul> <p>(2) 3-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국공립또는 사립 장애통합 유치원, 유치원, 국공립, 민간 장애 통합 어린이집, 특수학교, 기관 미이용 유아 등)</li> <li>: 교육부 통계관리 이유: 공통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유보통합을 고려한다면 교육부 만3세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전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li> </ul> |
| 11                                                                           | 김○○ | <p>일반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는 유아들과 관련한 양육정보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p>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12                                                                            | 조○○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장애아 미등록이나 검서 결과 추적검사요망이나 심화평가권고로 평가)에 따른 분류-장특법 상 발달지체로 분류                                                                                                                                                                                                                                                                                                                                                                                                                                                                                                                        |
| 13                                                                            | 박○○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미이용자 통계는 영유아건강검진 통계자료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 진단 자료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가능 영유아 파악</li> <li>☞ 파악된 영유아 중 교육지원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 파악(통계적으로 가능할 듯함): 이 부분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그 이유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가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적 책무성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ul>                                                                                                                                                                                                                                                                                              |
| 14                                                                            | 박○○2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 미이용 중인 장애영유아일지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게되므로, 검진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진표에 기관 이용 여부를 답하게 하여 그 수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li> <li>2. 장애진단을 받고 기관을 미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보건복지부 장애 유형에 따른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임</li> <li>3. 발달지체등을 이유로 기관을 미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화평가 권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과 같이 대상으로 선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검사비 지원 외의 유인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함(소득에 상관없이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해야하는 검사 바우처 발행 등)</li> <li>4. 의료기관이 심화평가의 결과를 보고해야 검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면 통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li> <li>5.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된 업무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총괄할 사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의 기관 이용을 독려하는 과정은 교육부에서 함께 추진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함</li> </ol> |
| 15                                                                            | 오○○  | <p>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이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에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는 특수교육 분야 뿐만이 아닌 유아 교육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현재 영유아발달검사가 의무로 되어있음. 하지만, 영유아발달검사에서 장애 영유아나 장애위험의 영유아를 발견하더라도 교육적 조치가 연계되는데에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영유아발달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아닌 영유아발달검사를 하고 난 뒤의 후속조치가 제도적으로 현실 가능하도록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야한다고 생각함.</p> <p>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은 교육부임.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함. 그 관심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곳에 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일 먼저 실행 되어져야 하고, 그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실행해야 함.</p>                                                                                                                                           |
| 16                                                                            | 이○○  | 현재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상에 장애영유아교육지원에 대한 홍보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음.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통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 17                                                                            | 전○○  |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는 우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서 발생하는 장애영유아 출현 유형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다른 사람 모르게 육아를 하다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통계는 철저히 개인적인 이유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을 최대한 빨리 지원과 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방법으로는 먼저 교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     | <p>교육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부모는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지원은 국가의 책임으로써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당사자 및 다른 이웃의 부모로서 협력적 역할도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및 홍보입니다. 우리 나라 텔레비전이나 포털 사이트 광고에서 장애영유아의 조기 교육에 대한 광고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등에 대중 포스터 몇 장 붙이고 홍보물 몇 장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안내하는 방안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함께 공감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설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인 만큼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통계는 당연히 일원화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학부모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준비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지원을 위한 인력의 배치와 예산, 사이트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통계 내용은 안정적으로 집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p> |
| 18                                                                            | 정○○ | <p>기관 미이용자와 사각지대 장애영유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복지과의 정보공유가 선행되어야 함. 장애등록증 발급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 및 치료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자료수집 시기에 맞춰 기관 이용 여부를 조사하여 통계에 반영, 또한 관련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되어 보호자에게 지속적, 정기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영유아 장애등록 여부 및 기관 미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부와의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관 미이용 특수교육대상자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p>                                                                                                                                                                                                                                                                                                                                                                                                                                                                                              |
| 19                                                                            | 권○○ | <p>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선정과 동시에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미이용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학유예의 경우 연령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용자(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유예로 인한 미이용자로 분류되는 경우,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제외한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의 통계의 경우는 장애영유아 통계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2번 질문의 의견과 같이 두 통계의 집합형태에 포함시켜 종합통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div data-bbox="499 1416 947 1673"> <p style="text-align: center;"><b>종합통계</b></p> </div>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20                                                                            | 강○○ |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발달적인 문제를 발견한 이후에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안된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실은 통계자료 마련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가족이 사회복지시스템(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아동지원과)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사각지대에 어떠한 영유아들이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숫자, 사례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병원 및 치료실만 다니고 있는 수 많은 아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안적인 자료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1)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지 않았지만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을 조사하는 일, 2) 병원 및 사설 치료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숫자를 보여줄 수는 있리라 생각합니다. |
| 21                                                                            | 이○○ | 1)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들은 문항 2번의 둘째와 셋째 답변의 방법으로 관리.<br>2) 특수교육관련 통계는 모두 교육부 소속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담당하되, 하위에 '장애영유아' 담당 전문 부서를 따로 두어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음                                                                                                                                                                                                                                                                                                                                                                                                                   |
| 22                                                                            | 원○○ |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 장애 아동 수당이나 세금 공제를 받는 장애 영유아의 수로 확인<br>장애 진단은 받지 않고 전문가 진단을 받은 영유아은 출연율을 예측해서 산정<br>장애 유아는 특수교육통계<br>장애 영아 또는 장애위험영아는 보육통계                                                                                                                                                                                                                                                                                                                                                                                                                              |
| 23                                                                            | 류○○ | 기관미이용자일 경우 대부분영아이거나 장애아어린이집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나 집에 있거나 경우일텐데요. 교육적 인면을 고려 한다면 영아는 순회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수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 경우 통계로 잡히고, 돌봄 시스템을 요할 경우 복지부 관련 사항이 될텐데요. 총괄 관리 해야 한다면 장애유아가 통합되서 관리되는 곳에서 함께 관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영아기 발견은 보건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스으니 연계시스템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
| 24                                                                            | 김○○ |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은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집단임. 특수교육대상자로 통계를 내는 것과 장애인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함. 특수교육통계가 영아기부터 고등교육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지원체계에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는 영아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거나 기관을 미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 25                                                                            | 이○○ | 가정보육수당 수령시 k-dst 검사지를 제출하게 하여 심화견고나 추적검사야동은 관할구청에서 특교센타 연계로 관리가 되도록                                                                                                                                                                                                                                                                                                                                                                                                                                                                                                   |
| 26                                                                            | 심○○ | 만0~2세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을 만3~5세의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각지대의 장애영유아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 미이용자를 포함하여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대상자지만 학급이 없어 치료실과 병원, 어린이집에 있는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 수를 파악하여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특수학교(급) 설립과 교원수급 까지도 연결하여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다.                                                                                                                                                                                                                                                                                                   |
| 27                                                                            | 이○○ | 기간 미이용 장애영유아를 파악하기에는 보건복지부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통계 수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수합한 자료를 교육부에 제공하여 함께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28                                                                            | 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군·시 지자체별로 장애영아 지원에 관한 핫라인 설치</li> <li>- 0-3세미만의 장애영아가 아동병원 재활의학과 및 소아과에서 진단 및 치료 받는 경우, 해당 지역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에 장애영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이 정보는 지역 보건소, 특수교육지원청, 사회복지담당자 등에 공유되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li>- 부모나 보육교사가 영아의 장애가 의심될 때, 해당 지역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에 의뢰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지역 협력기관과의 협업으로 진단 및 평가, 중재를 실시</li> <li>- '장애영아 지원 핫라인'을 통한 의뢰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모두 접수되므로 특수교육통계에 반영</li> </ul>                                                                                                                                                                                                                                                                                                                                           |
| 29                                                                            | 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번에서 말씀드린 국가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됨</li> <li>2) 영유아검진은 모든 영유아가 실시하는 것이고 이후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을 다니는 것을 시스템 상에서 기록으로 남게 함</li> <li>3) 이럴 경우 장애영유아의 경우 지원시스템이 사람중심의 지원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이나 보육 기관에 상관없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li> <li>4) 현재의 상황에서 의무교육의 대상인 만3~5세 유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보면 또 저울질을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함, 교육위원회가 시작을 하니 이런 것 또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ol>                                                                                                                                                                                                                                                                                            |
| 30                                                                            | 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가 등록되고 기관에 다니지 않은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 주민센터는 장애를 등록한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를 알리고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녀야 함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함</li> <li>2. 발달지연으로 인해 사설 치료실을 다니면서 기관 미이용자 혹은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영유아건강검진시 3~6개월 이상 발달이 지체될 경우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갖추어야 함. 그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배치를 희망하지 않고 장애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야 함.</li> <li>3. 관리 부처는 교육부의 국립특수교육원이 되어야 함. 장애유아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이고 어린이집에 배치받았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임. 또한 부모가 기관에 다니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도 유예 혹은 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맞춤. 이 모든 것을 교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처는 교육부의 국립특수교육원이어야 함. 현재 국특원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통계처럼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민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장애영유아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인 관리와 1년에 한번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와 통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li> </ol> |
| 31                                                                            | 손○○ | <p>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계에서, 유치원은 특수교육통계에서 다루고 있음. 하지만 보육통계는 장애 영유아뿐 아니라 다양한 특수보육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고 특수교육통계는 유, 초, 중, 고를 모두 다루고 있어 기관 미이용자, 장애 위험 유아, 장애 경계선의 유아 등 다양한 장애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인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산하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계를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고 여겨짐.</p>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32                                                                            | 권○○ | 2번에서 말한 답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사안임. 출생 직후부터 5년간의 영유아발달 검사를 의무화하면 기관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짐. 검사와 선별은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의무는 한 기관에서 담당해서 교육의 지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해야 함.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시군구의 장애영유아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충해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관리와 통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장애영유아의 경우 조기진단과 조기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전담기구에서 가정 모니터링이나 원격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단일 전담기구가 신설되기 어렵다면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 33                                                                            | 백○○ | 장애임이 확정이 된 경우는 교육의 대상으로 하여 교육부가 그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듯함. 전체적인 조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듯함(11조 2항 3호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34                                                                            | 함○○ | 부처 일원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영유아라면 필수적으로 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모든 영유아들의 건강과 관련된 자료는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중증 장애아 같은 경우는 기관을 이용하지만 경계선상의 영유아나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제대로된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영유아검진과 함께 장애영유아로 등록하여 보건소에서 꾸준히 부모와 소통하여 기관 입소 권유 및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                                                                                                                                                                           |
| 35                                                                            | 윤○○ | 장애영유아의 경우 치료를 위하여 병원이나 발달센터를 다니기도 하고, 가정보육을 하기도 하므로 소속을 근거로 하여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를 진행하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영유아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규모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심화 평가'가 권고되는 영유아들이 병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발달지체 또는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장애영유아 종합통계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후의 follow-up을 통하여 대상자의 배치환경(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낮병원, 복지관 등)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영유아들의 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공이 되거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 36                                                                            | 황○○ |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계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장애영유아의 부모에게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 절차, 국가의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37                                                                            | 이○○ | - 가정보육을 하는 기관 미이용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선정 및 통계관리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자와 동일하게 통계관리가 필요함[문항 2 의견 참고]<b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인력의 확대로 사각지대의 장애영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 38                                                                            | 송○○ | 장애등록자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기관 미이용자를 장애영유아 통계로 다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함. 통계청 장애인 통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다만 영유아 급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도 존재하므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 3. 기관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영유아 통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     |                                                                                                                                                                                                                                                                                  |
|-------------------------------------------------------------------------------|-----|----------------------------------------------------------------------------------------------------------------------------------------------------------------------------------------------------------------------------------------------------------------------------------|
| 39                                                                            | 조○○ | 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음.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연동하고 치료실, 발달바우처 지원 아동을 취합하는 등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임.<br>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위험군 유아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가 담당.                                                                                                                                                           |
| 40                                                                            | 김○○ | 1. 생애주기에 따르는 포괄적, 연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로 함으로 보건복지부의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함을 제안한다. 영유아가 정확한 진단과 평가로 적절한 초기 개입의 첫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의 진단과 진단에 따른 조치는 어떤 부처의 기관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공공교육 기관을 전혀 이용하지도 않는 사태를 가져오기도 한다.<br>2.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초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현황 조사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 |     |                                                                                                                                                                                                                                                                                                                                                                                                                                                                                                                                                                                                                                                                                                                                                                                                                                                                                                                                                                                                                                                                                                                                                                                                                                                                                                                                                           |
|---------------------------------------|-----|-----------------------------------------------------------------------------------------------------------------------------------------------------------------------------------------------------------------------------------------------------------------------------------------------------------------------------------------------------------------------------------------------------------------------------------------------------------------------------------------------------------------------------------------------------------------------------------------------------------------------------------------------------------------------------------------------------------------------------------------------------------------------------------------------------------------------------------------------------------------------------------------------------------------------------------------------------------------------------------------------------------------------------------------------------------------------------------------------------------------------------------------------------------------------------------------------------------------------------------------------------------------------------------------------------------------------------------------------------------|
| 1                                     | 배○○ | <p>사회현상을 반영하는 통계는 장애영유아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회의적인 부분은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용어의 모호함 등에서 오는 통계치 산출과정의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 → 장애영유아 유보통합형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통계자료(예,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어린이집 보육통계 등)에서 용어를 정리(예, 용어의 정의 등)하고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p> <p>「특수교육법」에서의 ‘발달지체’는 장애영유아를 범주화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발달상 변화가 큰 영유아기의 발달적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0에서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용하는 법적인 정의임. 취학 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정기준이나 검사도구들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유아를 판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 장애영유아가 보이는 인지 기능이나 행동문제는 기존 자체가 장애영유아를 판별하기 적합하지 않고, 전형적인 발달의 범위(range)를 이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발달의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통계자료에 의한 편향된 표본이 오히려 장애공감 문화를 방해할 수 있음(예, 교사들의 낙인).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분류가 필요하지만,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음. 부모가 수용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이에, 발달지체(0세에서 9세: 법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까지는 포괄적인 분류인 새로운 체제의 표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0-2세 장애영아와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필요. 장애영유아의 부모가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 시·도교육지원청, 어린이집, 교육보육 유관기관 등에 축적되어 있는 교육보육 관련 자료들을 수집, 연계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함 → 출생에서 만 5세까지 모든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부처가 신설되어야 하고, 교육/보육적 지원-의료적 지원-치료적 지원 체제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함.</p> <p>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영유아선별검사를 교사와 부모가 함께 실시하거나, 교사교육을 통해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유아교육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달도구를 구입,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한다면, 조기선별은 물론 교사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p> |
| 2                                     | 김○○ | 첫째, 종합통계 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장애유형에 대한 통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10개의 장애유형(11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p>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는 제외)을 사용하여 통계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법에서는 의사소통장애를 복지법에서는 언어장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이지만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 유형의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애유형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p> <p>둘째, 통계수집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교사들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작성해야 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분석하고 통계자료 작성방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아는 장애 진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지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법에서는 발달지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특수교육법의 건강장애에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를 포함해야 하는지(이 유아들의 경우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에 복지법의 정신장애를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통계에서 기관에 따라 장애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입니다.</p> <p>이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을 가지고 통계를 수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교육현장에서조차 10가지의 장애유형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장애유아가 받은 복지카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를 보고할 때 교사들은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상세한 통계 보고서 작성기준이 없다면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장애유형을 결정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p> |
| 3                                    | 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카드, 바우처 지원, 장애아보육대상자 통계 내용을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하기</li> <li>-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판정과정과 지원이 전무함. 어린이집 재원 장애 유아의 실질적 의무교육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교사지원을 포함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장애 유아 교육권에 대한 차별에 해당됨).</li> <li>* 국가 지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통계를 활용하기.</li> <li>: 출생신고, 영유아건강검진 중 발달 검사 자료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지체영유아 지원하기.</li> <li>: (초등)취학통지발급자와 어린이집 재원 만 6세 이상 장애아 파악하기(입학유예하고 어린이집에 만 12세까지 재원하고 있는 경우).</li> <li>-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격성 판정을 전담하기보다 복지카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전문기관(예, 지역장애인종합복지관 중 진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연계하기</li> </ul>                                                                                                                                                                                                                                                                                                                                                                                       |
| 4                                    | 정○○ | <p>보육과 교육이 분리되어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과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통계센터가 있어야 함. 종합통계센터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병원, 시설등에 있는 장애영유아의 수와 장애유형, 소속형태등을 조사 종합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p> <p>* 초등이상의 학령기에는 교육부에서 종합관리하는데 반하여 영유아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사각지대 없이 장애영유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흡수 통합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각각의 입장 차, 교사 수급 방법 등)이 있으므로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과 보육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출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함.                                                                                                                                                                                                                                                                                                                                                                                                                                                                                                                                                                                                                                        |
| 5                                    | 박○○ | <p>- 주관부서가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리와 지원 등을 주관할 필요가 있음.</p> <p>-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순회지원을 다니고 있지만,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지원과 위상에 걸맞는 지원이 실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교육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음.</p> <p>-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종합적인 통계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초-중-고에 걸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예산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함.</p> <p>- 병원-특수교육지원센터-유치원-어린이집 간의 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체 또는 주관 부서가 필요하며 조기중재, 가족지원, 질적 보육, 유보연계, 치료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p> <p>* 종합통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통계 자료가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초-중-고-전공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 특수교육 통계에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집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집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p> |
| 6                                    | 권○○ | 2번과 3번 의견란에서 밝혔음.                                                                                                                                                                                                                                                                                                                                                                                                                                                                                                                                                                                                                                                                                   |
| 7                                    | 김○○ | <p>부처통합이 이루어져야 함</p> <p>현재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의 영유아분야는 부처일원화가 되지않아 생기는 문제이며 무엇보다 부처일원화가 된다면 통합통계는 물론 그 밖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임</p> <p>* 모든 서비스는 수요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통계 모든 서비스의 첫걸음입니다. 단, 정확하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 8                                    | 김○○ | <p>영유아의 연령과 기관에 따라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니 종합통계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전문가 뿐 아니라 기관, 교사, 가족, 의료진 등의 의견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렴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통계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 같아 크게 생각하면 유보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p> <p>통계에 제외되는 장애 영유아들이 없도록 모든 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선별검사가 실시되어 초기에 장애 및 위험 영유아를 발견되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통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p>                                                                                                                                                                                                                                                                                                                              |
| 9                                    | 박○○ | <p>1. 홍보 체계 개편을 통한 국민 의식 개선</p> <p>장애영유아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등 유아가 먼저 찾게 되는 병원등에서 홍보물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해 장애영유아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서별 합의를 통해 아이들이 이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방주사 포스터처럼 영아기의 느린아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방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일부 의사들이 출판한 책중에는 자기 아이를 키워본 경험만으로 쓰여져 보편적인 발달단계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된 책들도 있습니다.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수 있는 목록도 빠르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p>병원으로의 공문 전달, 직원 교육의 의무화, 게시기간의 의무화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내용은 교육전문가들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p> <p>2. 국가 홍보자료 등에 장애인 의무포함.<br/>         눈으로 표현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에 대한 혐오를 줄여가는 것이 이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별일 아닌 다름'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유치중등 모든 교과서 및 학습자료등을 보았을 때 '장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러스트와 사진 자료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별것 아닌거 같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휠체어를 탄 아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EBS나 KBS 예도 장애유아가 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가 출연의지가 없어서는 아닐것입니다. 출연의지조차 묻지 않는 사회적인 '장애'에 대한 편견이 먼저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고나 청소년 드라마,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에 '장애영유아'를 의무적으로 넣고, 일정 비중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선에서 의무화가 되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시선도 넉넉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시장은 교과서등 구조화된 교육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설 시장에 던져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화나 교재 등을 육아정책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좋은 동화를 선정해 일정 비중 장애아동이 포함되고 성역할, 다문화등 우리네 사회에서 '차별'적 요소를 가진 내용을 배제한 양질의 교육자료 배급도 시급합니다. 아이들은, 아니 모든 인간들은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p> <p>3. 종합통계를 위한 제도의 개선점이라고 했으나, 제도와 정책은 공문한장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이미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이들의 권리와 법과제도의 의무에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와 인식이 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제의 장점인 공문한장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계자료는 쉽게 수집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업무 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래에서부터 인식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p> <p>예산이 충분하다면 티비 광고 같은 것이나 투니버스나 대교어린이tv등 영유아와 그 부모가 주 시청자인 총의 광고 방송 혹은 잠시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에 '장애'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모금운동이나 사랑의가족 이런 눈물 팔이 다큐말고요.)</p> |
| 10                                   | 홍○○ | <p>1) 장애 아동에 대한 분류기준의 문제 : 분류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부분)</p> <p>2) 장애 아동의 현황과 필요한 교육 서비스 내용과 전문인력에 대한 조사</p> <p>3)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과 양성에 대한 계획에 대한 방향제시</p> <p>4) 장애아동에 대한 통계와 관리를 위한 관리부처 지정과 업무체계 마련하기</p> <p>* 교육청 컨설팅 장학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반 선생님을 대상으로 장학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한된 경험이지만, 특수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나 교육 활동, 특수교육과정과 이해, 부모상담과 부모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였습니다. 특수반교사는 기본적인 학력과 자격을 갖추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장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통해 장애 영유아가 관리된다면 전문교사에 현장지원과 인력개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각 현장 마다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환경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다. 또한 현장은 종일 보육으로 인해 장애교사와 비장애 교사 간의 갈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통계자료가 있다면 현장에 전문인력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 과정으로 보입니다.                                                                                                                                                                                                                                                                                                                                                                                                                                                                                                                                                                                                                                                                                                                                                                                                                                                     |
| 11                                   | 김○○      | <p>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 통계를 기반으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이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의 이원화 지원 시스템과 연동된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이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각각의 기관의 교육적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유치원이 우세도 어린이집도 우세도 아닙니다. 학부모의 요구가 다른 지점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치원은 특수학급의 증설,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 의무교육이 실행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정책입안과 연동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합통계를 단순히 대상자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저는 일반유아들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그들의 요구지점이 있듯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부모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선택이 선택할 때 두 기관 모두 양질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장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단순히 대상자 관리의 측면으로 종합통계를 실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종합통계이후 정책수립을 할 명확한 주제 등 향후 대책이 마련된 속에서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p> |
| 12                                   | 조○○      | 의견없음                                                                                                                                                                                                                                                                                                                                                                                                                                                                                                                                                                                                                                                                                                                                                                                                                                                                                                                                                                            |
| 13                                   | 박○○<br>1 | <p>☞ 종합통계 구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달라질 수 있을 듯 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것이 목적이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종합통계 마련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p> <p>종합통계 구축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한 가지 제안은</p> <p>1) 질문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 진단을 받은 모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p> <p>예를 들어, (1) 장애진단 기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 안내, (2)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진단 후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와 기관 안내, 판정 후 얻을 수 있는 혜택(교육 지원, 치료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p>                                                                                                                                                                                                                                                                                                                                                                                                                                                                                                                |
| 14                                   | 박○○<br>2 | <p>장애영아들의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과 중복하여 교육부 차원의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p> <p>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정 과정을 꼭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필요함</p> <p>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 할 경우 가능하면 의무교육 간주 어린</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p>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함</p> <p>*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그 배치에 있어서 지원센터 내의 유아특수교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한다고 함. 특수교육법의 유치원학급 1학급 당 인원 4명 기준을 지원센터 영아학급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영아학급의 경우 반일이나 종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4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더 많은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됨</p> <p>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확장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병설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영아학급을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p>                                                                                                                                                                                                                                                                                |
| 15                                   | 오○○ | <p>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선정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일단 대상자의 선정 과정과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통계의 결과를 두고 비교하였을 때 각 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유치원-특수교육통계, 어린이집-보육통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동일한 기준과 항목과 질문 요목을 가지고 연구가 실행 되어져야 할 것임.</p> <p>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책임 주체는 교육부임. 교육부에서는 만3~5세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유아들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만큼 의무교육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특수학급 확충, 질적인 교육환경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함.</p> <p>*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선정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일단 대상자의 선정 과정과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통계의 결과를 두고 비교하였을 때 각 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유치원-특수교육통계, 어린이집-보육통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동일한 기준과 항목과 질문 요목을 가지고 연구가 실행 되어져야 할 것임.</p> <p>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책임 주체는 교육부임. 교육부에서는 만3~5세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유아들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만큼 의무교육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특수학급 확충, 질적인 교육환경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함.</p> |
| 16                                   | 이○○ | <p>장애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한 것 같음. 특수교육법상 대상자 선정 명칭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p> <p>* 영유아 건강검진시 병의원과 협조를 하여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영유아교육지원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병의원에서 의심이 되지만 그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상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아 의료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모든 아이들이 다 검진을 받는 곳에서 1차 선별을 하고 의심되는 영유아를 지원하면 조금더 촘촘히 발견하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p>                                                                                                                                                                                                                                                                                                                    |
| 17                                   | 전○○ | <p>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과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상의 서로 다른 장애유형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장애명은 함께 사용하면 되지만 다른 장애유형은 통계상황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우선 법률적인 개정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훈령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특법상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학생에 대한 배치와 지원을 못하는 것은 인정하되 조기발견의 의무를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어린이집 입학 후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이나 훈령 등을 통해 통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p> <p>* 장애영유아 통계는 당연히 일원화되었어야 합니다. 부처간 서로 불편한 건 미루고 이익이 되는 것만 방식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 부모님과</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아이에게 보육과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교육부처가 맡는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계를 내려 놓는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두 부처간 협력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
| 18                                   | 정○○ | <p>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종합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하여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장애위험군으로 분류된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명단이 시도에 통보되고 시도에서는 교육청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함.</p> <p>* 자녀가 건강검진결과 장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장애진단을 받았을 때 보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전국대표번호로 연락을 하면 정보가 지자체로 연결되고 관련전문가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p>                                                                                                                                                                                                                                                                                                                                                                      |
| 19                                   | 권○○ | <p>현재 특수교육통계는 교육부에서, 그리고 장애영유아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통계에서 중첩되는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보통합이 진행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 동일한 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각의 영역이므로 두 부서 모두 관리의 책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게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부서를 새롭게 만들 수 없으므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통계와 장애영유아 통계를 협업작업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공동으로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서 간의 벽이 있어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부분만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명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명이 같지 않습니다. 두 법에 명시된 장애명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발달장애의 경우는 제외) 종합통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div data-bbox="515 1180 901 1523"> </div> |
| 20                                   | 강○○ | <p>결국 어디에서 누가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통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계를 조사·관리하는 통합관리 기관, 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처를 만들 수 있다면, 단순히 통계 뿐 만 아니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과 특수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지원하고 이용 가능한 기관과 정보를 안내하는 근본적인 역할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21                                   | 이○○ | 당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하나의 일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인 장애유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우선 특수보육시설(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도 장애유아 특수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교사자격증도 일원화(유아특수교사와 특수보육교사)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 22                                   | 원○○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할 시기에 일반 교육에서 시행되지 않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은 의무교육, 영아교육은 무상교육이 제안되었다.<br>법 시행 후에 장애 유아 의무교육 기관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평가인증을 받고 작거를 갖춘 교사가 배치된 기관에 재원 중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생김<br>종합통계 구축 이전에 유보통합이 선제되면 해결됨<br>종합통계를 근거로 한 정책 결정 시 예측 통계를 사용함<br>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예측 통계 사용                                                                                                                      |
| 23                                   | 류○○ | 유보통합만이 답이라고 봄니다. 단순히 통계를 공유하고자 하면 두 부서를 총괄할 국무총리산하나 별도의 장애인국가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봄.<br>다만 현행 시스템에서 두 부서가 통계처리를 정기적이고 유기적으로 공유한다면 법률까지 갈 필요가 업겠으나 협력하는 통합부서가 필요함                                                                                                                                                                                                                                                        |
| 24                                   | 김○○ |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총체적으로 진단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보충이 매우 필요함.<br>*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의무교육 대상자 수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현재 제시된 숫자는 유치원(특수학교)에 배치된 유아의 숫자이지, 대상자 수가 아님. 얼마나 많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통계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의무교육 실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요구하면 좋겠음.                                                                                                                   |
| 25                                   | 이○○ | 복지부-영유아발달선별검사 후속 지원체계구축과 통계화 작업이 필요<br>교육부-부처간 소통을 통해 k-dst검사후 특교대상선정 프로그램 지원                                                                                                                                                                                                                                                                                                                                  |
| 26                                   | 심○○ | 유아특수교육현장에서 영아학급이 없어서, 특수학급이 없어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아와 유아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기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취학 희망 여부를 받아 교육수요 추정 및 교육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장애영아 및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교육대상영유아) 수용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맞게 교육부는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수용 될 수 있는 학급을 확충해야 한다.<br>* 영유아 검진이후 장애위험영유아로 선별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진단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함                 |
| 27                                   | 이○○ | 먼저 위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부처 통합조직이 꾸려져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업무가 누구의 것인지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합적인 통합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통계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수교육통계는 학기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배치되는 유치원과는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를 따로 만들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br>* 통계뿐만 아니라 홍보도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영유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재학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깊은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고인이 없어 보입니다. 영유아기부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장애영유아 지원 통합 기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 28                                   | 김○○ | <p>- 장애영아에 대한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3세 이전에 장애 발견, 진단 및 평가하여 적극적인 중재 시작하는 것이 그 이후의 발달 및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p> <p>- 유보통합 (대한민국의 장애영유아임은 분명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공되는 특수교육서비스와 교사자격이 다르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지원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은 교육에서의 격차 해소나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비장애 영유아와 장애영유아 모두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원화된 유보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필요함)</p> <p>'장애영아 지원 핫라인' 및 이후의 진단 및 평가, 중재를 실행 과정을 주도하는 체계 구축</p> <p>* 2021년 5월 12일 발표한 장애아동 종합지원대책에서 발표한 계획과 같이 장애아 발견부터 가족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또는 0-3세 미만 조기개입 대상자와 3-5세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상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를 하나의 정부 부처(본인은 교육부의 특수교육 통계에 포함되는 것을 추천)에서 담당하는 일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p> |
| 29                                   | 정○○ | <p>1) 부처 중심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 걸친 지원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p> <p>2) 전 생애에 걸친 지원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예산 투입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 지루하고 오래된 숙제! 보육과 교육 체제의 개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현재로서는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른 급에 비해 유아의 경우 다양한 보육기관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교 등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 가운데에서 매듭을 풀어가기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대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의 통합이 어렵다면 보다 넓은 범주의 기관에서 주축이 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드리지 못하는 짧은 식견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p>                                                                                                                          |
| 30                                   | 김○○ | <p>1. 영유아건강검진 → 3~6개월 발달 지체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p> <p>2.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에 다닐 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p> <p>3. 장애로 등록하였으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임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유예 혹은 면제 신청을 해야함에 대한 제도 개선</p>                                                                                                                                                                                                                                                                                                                                                                                                                                                                           |
| 31                                   | 손○○ | 그동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일된 정책과 제도가 필요했지만 통계조차 통일되지 못했기에 초등, 고등, 평생교육과는 영유아를 위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여겨짐. 현재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축이 되어 장애 영유아를 주관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 영유아 외에 다른 활동이 많고 특수교육센터도 장애 영유아 뿐 아니라 초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 |     |                                                                                                                                                                                                                                                                                                                                                                                                                                                                                                                        |
|---------------------------------------|-----|------------------------------------------------------------------------------------------------------------------------------------------------------------------------------------------------------------------------------------------------------------------------------------------------------------------------------------------------------------------------------------------------------------------------------------------------------------------------------------------------------------------------|
|                                       |     | <p>등, 중등, 고등까지 모두 다루고 있음. 따라서 장애 영유아를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 좀더 영유아에게 맞춘 프로그램과 치료, 교육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임.</p> <p>또한 현재 특수교육법에는 발달지체라는 유형을 만들어 9세 미만의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묶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 발달지체 유형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발달장애와는 다른 용어인데 특수교육법에만 쓰이는 용어임. 9세까지 포함하여 교육적 요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0-5세까지 다루는 장애영유아를 0-9세까지 그 대상을 확장할 필요도 요구됨.</p>                                                                                                                                                                                       |
| 32                                    | 권○○ | <p>-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의 조사를 단일화된 기관에서 통합시행하기 위해 단일화된 기관의 설치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임.</p> <p>- 이 설치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종합통계를 실시하기 위해 그 목적과 실시 시기, 범위 등을 규정한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범위에는 기관 미등록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하며 그 담당기관을 명시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영유아 뿐 아니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를 포함시키는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p> <p>- 현행 통계조사의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p>                                                                                                                                                    |
| 33                                    | 백○○ | <p>종합통계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듯함. 아동의 특성상 조사가 이원화 되더라도 부처간 협업은 필요함.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관리 할 필요 있음.</p> <p>* 이미 아시겠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에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조항이 있습니다.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동(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34                                    | 함○○ | <p>모든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임신해서 꾸준히 다니는 산부인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출생신고를 하는 구청,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 소아과 등 다양한 곳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복지 및 치료, 교육 등 장애영유아 출생 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안내 책자가 배치가 되어 부모가 직접 뛰어다니며 제도를 찾아보지 않고 장애영유아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방법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p> <p>학교를 전학 갈 경우 아이의 모든 기록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어느 기관을 가던 영유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 35                                    | 윤○○ | <p>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영유아들이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유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간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p> <p>2) 장애영유아 종합통계가 교육부 관할이 되어 특수교육통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p>                                                                                                                                                                                                                                                                         |

| 4. 종합통계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지점 |     |                                                                                                                                                                                                                                                                                                                                                                                                                                                                                                                                                               |
|--------------------------------------|-----|---------------------------------------------------------------------------------------------------------------------------------------------------------------------------------------------------------------------------------------------------------------------------------------------------------------------------------------------------------------------------------------------------------------------------------------------------------------------------------------------------------------------------------------------------------------|
|                                      |     | <p>고, 어린이집/가정보육 영유아들 역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대상이 된다면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는 그 많은 장애영유아들을 진단평가할 만한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장애영유아 종합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 및 환경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p> <p>3) 조기발견-조기개입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갖춘다.</p> <p>(1)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를 '위험'영유아로 등록하고, 부모가 심화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또는 발달센터와 연계한다.</p> <p>(2) 병원에서 발달 지연 또는 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 시스템을 통해 장애영유아로 등록한다.</p> <p>(3) 또는 병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p> <p>(4) (3)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 인력 및 센터 환경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가정보육/복지관/어린이집 등 교육부 관할이 아닌 환경에 있는 영유아들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p> |
| 36                                   | 황○○ | <p>특수교육의 목적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그릇 싸움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관은 특수교육 기관이며, 특수교육 기관의 확충으로 더 이상 의무교육 간주 기관이라는 대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특수교육 통계에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를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도 현재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p>                                                                                                                                                                                                 |
| 37                                   | 이○○ | <p>- 가정보육을 하는 기관 미이용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선정 및 통계관리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자와 동일하게 통계관리가 필요함(문항 2 의견 참고)</p> <p>-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인력의 확대로 사각지대의 장애영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p> <p>*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복지관 등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 되어있는 기관 특수교사 배치</p> <p>-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배치 필요 등...</p>                                                                                                                                                                                                                                                                              |
| 38                                   | 송○○ | <p>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하나의 시스템 구축 필요.</p> <p>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단순한 장애등록대상자의 경우에는 통계청 조사.</p>                                                                                                                                                                                                                                                                                                                                                                                                                                                                                |
| 39                                   | 조○○ | <p>장기적으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설치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 하였던 함. 당장 내년에 종합통계를 구축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복지부에서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함.</p> <p>* 장애영유아들과 그 가정이 겪는 혼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정책입안 의지가 필요합니다.</p> <p>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갑니다. 당사자들 스스로 정보와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찾아가는 지원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p>                                                                                                                                                                                                                                                       |
| 40                                   | 김○○ | <p>일관성 있고 평등한 공교육화</p> <p>유보통합</p>                                                                                                                                                                                                                                                                                                                                                                                                                                                                                                                            |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